

정부기능분류(COFOG)의 체계적 고찰

2015. 12.

정성호 · 김완희

서 언

글로벌 재정위기를 경험한 이후, 세계는 한 국가의 재정운영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지속가능한 재정상황 파악을 더욱 중요한 이슈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재정운영을 점검하고 국가 간 지속가능한 재정상황을 비교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바로 정부재정통계(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이다. 정부재정통계(GFS)는 현금주의를 적용한 GFS 86기준에서 발생주의를 적용한 GFS 01기준으로 개정되었으며, 최근에는 GFS 2014로 재개정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급변하는 세계정세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는 정부재정통계 중 GFS 기준 정부기능분류(Classification of Function of Government: COFOG)의 지표산출과 공식발표를 제안하며, 더불어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한 한국정부기능분류(COFOG-K)를 제안한다. GFS 기준 정부기능분류(COFOG)는 개별 국가의 기능별 지출규모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의 유동성 관리는 물론 재정건전성을 점검하여 국가 간 국제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매우 유용한 지표체계이다. 또한 최근 들어 다양한 거시재정통계체계(SNA, PSDS, ESA, BPM6)가 정부재정통계(GFS) 체계로 조화를 모색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COFOG 지표의 공식적 작성을 전제로 정부기능분류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 활용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부기능별분류를 비교 분석한 후 COFOG 지표 산출대안과 그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정합성이 보장된 정부기능분류(COFOG)의 산출과 활용은 기능별 재정지출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게 하고 국제적으로 비교도 가능하게 하므로 그 의미를 부여하기에 충분하다. 더불어 정부기능별분류(COFOG)는 사전적으로 재정전략수립 및 전략점토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후적으로 기능별 지출의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

여 재정건전성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정부재정통계(GFS)의 정부기능별분류(COFOG)에 근거하여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지표를 산출하고 공식적인 보고 및 발표가 필요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정성호 박사와 김완희 박사가 공동집필하였다. 저자들은 본 보고서 작성과정에 도움을 준 익명의 논평자 세 분과 자료수집 및 분석에 도움을 준 이계형 전문연구원 그리고 원고 마무리를 위해 수고한 이정미 전문연구원, 최미영 행정원 등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작성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자료를 재분류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대구시청 등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담당 공무원과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많은 비평과 격려를 보내준 원내 박사들과 여러 논평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둔다.

2015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박 형 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개별 국가의 재정지출규모 및 국가 간 재정상황에 대해 국제비교가 가능한 정부기능분류(COFOG: 이하 COFOG)의 산출과 그 활용에 관해 논의하였다. 정부기능분류(COFOG)는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정부재정통계(GFS)의 한 요소이다. 최근 다양한 거시통계체계(SNA, PSDS, ESA, BPM6)가 GFS 체계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정부기능분류인 GFS 기준 COFOG의 공식작성을 위한 지표 산출대안과 그 활용대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한국의 정부기능분류(COFOG-K)(안)을 제안하였다.

정부기능분류는 대표적으로 정부재정통계(GFS)와 국민계정(SNA)기준의 두 가지 버전으로 작성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의 기능분류를 정부 측(기획재정부)에서는 정부재정통계(GFS)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IMF에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에서는 국민계정체계(SNA)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OECD에 보고하고 있다. 정부기능분류는 일반정부 단위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정부 이외의 공공부문까지 총량적으로 합산한 기능별 재정지출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기능분류는 발생주의 기준의 결산자료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부문을 포괄하여 지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COFOG 지표를 작성·보고하지 않고 있다.

공식적 지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집계한 결산자료와 현금주의 기준으로 집계한 결산자료 간의 규모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과 관련이 크다. 그 외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표 집계과정에서의 불일치 등 다양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기능별 재정지출 지표를 통일시키고 지속적으로 재정운영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수단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여러 가지 한계를 치유하는 대안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론에 해당하는 제Ⅱ장에서는 COFOG의

개념과 특징, 유사분류 체계, 선행연구 및 주요국의 COFOG 활용사례에 관해 논의한다. 제Ⅲ장에서는 현행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COFOG 산출 과정을 논의한다. 제Ⅳ장에서는 COFOG 지표산출 대안을 논의하는데, 집계단위, 인력운영비 등의 배분방안,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COFOG 지표산출 방식의 변경을 제시한다. 제Ⅴ장에서는 COFOG-K(안), 재정지출추이의 분석과 기능별 지출의 국제비교 등 COFOG의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결론과 정책적 함의로 마무리한다.

제Ⅱ장은 COFOG의 개념과 특징에 관해 논의한 후 COFOG과 유사한 분류체계를 설명하면서 주요한 차이를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10개 분야 69개 부문으로 구성된 COFOG와 16개 분야 69개 부문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예산체계, 12개 분야로 구성된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나라살림, COFOG에서 보건(707)과 사회보호(710)를 합해서 산출한 사회복지지출통계(SOCX) 등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더불어 선행연구와 주요국의 COFOG 활용사례를 검토하였는데, 특히, 유럽공동체(EU), 호주, 미국, 캐나다의 활용사례를 비교 분석하면서 활용대안을 탐색하였다.

제Ⅲ장에서는 현행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COFOG 산출과정을 논의하였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COFOG 산출과정이 어떻게 불일치하는지 등 다양한 한계를 설명하였다. 예컨대, 중앙정부의 경우 비영리 공공기관을 주된 기능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비영리 공공기관의 총 지출을 기능(일반공공행정(701)~사회보호(710)별 지출규모에 비례하여 기계적으로 안분하고 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운영비 등은 일반공공행정(701)으로 분류되고 있어 과다 집계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제Ⅳ장에서는 COFOG 지표 산출대안을 논의하는데, 집계단위, 인력운영비 등의 배분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COFOG 지표는 이호조(e-hojo)시스템에서 자동산출되지만 인력운영비가 일반공공행정(701)으로만 집계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운영비를 COFOG 10개 기능으로 재분류하였다. 그 산출 결과 인력운영비가 대구시청의 경우는 9.3%, 부천시의 경우 27% 과다 집계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인력운영비가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기능별 분류의 체계와 배

분에 있어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불일치와 집계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COFOG 산출 방식의 변경을 제시하였다.

제Ⅴ장에서는 주요국의 활용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주요국에서는 해당 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COFOG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근거하여 한국의 정부기능분류인 COFOG-K(안)를 제안하였다. 제안의 주요한 내용은 GFS의 COFOG에서 사회보호(710)의 노령항목 중 공적연금 체계의 관리를 위해 공적연금 항목을 분리하여 별도의 분류기준인 공적연금(711)으로 신설을 제안한 것이다. 더불어 EU의 재정지출추이 분석 활용 방안을 국내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고, 기능별 지출의 국제비교 등 COFOG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보고서의 주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보고서는 정합성 있고 국제비교가 가능한 COFOG의 지표산출 및 공식발표를 제안하고 이의 활용을 위한 대안인 COFOG-K(안)을 제안하였으며, 이 지표 산출과정의 문제점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첫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정합성을 가진 COFOG 지표를 산출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재정상황뿐만 아니라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결산정보인 COFOG 지표의 국제 비교는 기능별 재정배분과 관련된 정부 재정정책 결정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과 유동성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둘째, COFOG의 내부 관리적 활용을 위해 COFOG-K(안)를 제안한다. 최근 사회현상을 반영해서 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을 위해 사회보호(710)분야 중 노령(7102)부문에서 공적연금을 분리하여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내부관리 목적의 COFOG-K(안) 지표를 활용하여 기능별 재정지출 추이를 분석함과 동시에 재정정책 수립 및 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발생주의 기준으로 작성되는 원가정보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의 정책결정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공적연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사회보호(710)분야의 정부지출 통계는 복지 관련 정책결정 시 필요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위에 제시한 시사점 외에도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공식적인 COFOG의 통계작성을 전제로 현행 예산 프로그램체계를 개편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COFOG 통계 산출 과정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COFOG 지표를 작성할 경우 중앙정부는 ‘부문’이나 ‘프로그램’ 단위로 COFOG 지표를 집계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부문’ 단위의 COFOG 지표를 산출하고 있는데, 통계의 작성단위를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실무적인 문제로 개편이 어려울 경우 단기적으로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COFOG을 작성하기 위해 다음 내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부문’ 단위에 기초한 COFOG 지표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예산편성과 결산단계를 연계할 대안으로 부문코드(등급코드 5자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으로 COFOG 지표를 산출할 수 있지만, 중앙정부의 경우는 자동으로 산출되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몇 가지 오류는 존재하지만 이호조(e-Hojo)시스템에서 COFOG 지표가 자동 집계되고 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의 경우에도 디브레인(d-Brain) 시스템에서 자동 집계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목 차

I. 서 론	15
1.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15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9
3. 연구의 구성	20
II. 이론적 논의	21
1. COFOG의 개요	21
가. 개념 및 특징	21
나. 분류 체계	24
2. 유사 분류 체계	34
가. 프로그램 예산체계	34
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나라살림	37
다. 사회복지지출(SOCX) 통계	38
3. 선행연구 및 주요국 사례	40
가. 선행연구	40
나. EU	42
다. 호주	50
라. 미국	51
마. 캐나다	53
III.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COFOG 산출	55
1. 중앙정부의 COFOG 산출	57
2. 중앙정부 관리운영비 및 비배분비용의 COFOG 산출	66

3.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의 COFOG 산출	75
4. 지방자치단체의 COFOG 산출	76
5. 지방자치단체 관리운영비 및 비배분비용의 COFOG 산출	80
6.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공공기관의 COFOG 산출	81
 IV. COFOG 지표산출 대안 탐색	83
1. 집계단위	83
가. 프로그램 예산체계상 부문과 COFOG 부문 매핑	83
나. 프로그램 예산체계상 프로그램과 COFOG 부문 매핑	88
2. 인력운영비 등 배분 방안	98
3. 비영리공공기관 등 배분 방안	109
4.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COFOG 지표 산출(안)	110
 V. COFOG 활용 방안	113
1. COFOG-K 운영(안)	113
2. COFOG 지표를 활용한 기능별 재정지출의 국제비교	117
3. COFOG-K 지표를 활용한 기능별 재정지출추이 분석	119
4. 재정전략 수립 및 전략 검토	120
 VI.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22
1. 연구결과 종합 및 정책제언	122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124
 참고문헌	126

[부록 1] 중앙정부 부처별 기능 분류	130
[부록 2]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의 COFOG 기능별 분류	156
[부록 3] COFOG-K 분류 체계(안)	189
[부록 4] COFOG의 상세 분류(요약)	197
[부록 5]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별 분류 비교	241

표목차

〈표 II-1〉 정부 기능에 따른 COFOG 분야 및 부문 분류 체계	27
〈표 II-2〉 기능 및 경제적 분류에 의한 지출의 교차분류	30
〈표 II-3〉 한국은행 교차분류 작성 사례: 2013년도 일반정부의 부문별·기능별 총지출	33
〈표 II-4〉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COFOG체계 연계 비교	35
〈표 II-5〉 SOCX 공공 및 민간(법정/자발) 지출 분류 체계	39
〈표 II-6〉 COFOG의 환경보호분야와 CEPA 2000 분류항목 비교	44
〈표 II-7〉 COFOG의 보건분야와 SHA 분류항목 비교	44
〈표 II-8〉 호주 GPC 및 COFOG-A 체계 변화	51
〈표 II-9〉 미국 NIPA 및 OMB 분류 체계	52
〈표 II-10〉 국가별 COFOG 활용 비교	54
〈표 III-1〉 2013회계연도 국가통합 재정운영표 총괄표	58
〈표 III-2〉 프로그램 총원가의 해당 분야별 배분 예시	59
〈표 III-3〉 관리운영비 부처별 식별 예시	59
〈표 III-4〉 중앙정부의 COFOG 산출(2013회계연도 기준)	62
〈표 III-5〉 복수의 기능에 걸친 부문(공적연금 제외)	62
〈표 III-6〉 복수의 기능에 걸친 부문(공적연금 프로그램)	66
〈표 III-7〉 중앙정부 부처별 COFOG 기능 및 FY 2013 프로그램 총원가	67
〈표 III-8〉 정부부처 주 기능에 따른 COFOG 분류	71
〈표 III-9〉 COFOG 산출(프로그램 단위)	72
〈표 III-10〉 지방자치단체 COFOG 산출(부문 단위)	76
〈표 III-11〉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COFOG 부문 분류 예시(일반공공행정) ..	78
〈표 III-12〉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공공기관의 COFOG 기능별 분류	82

〈표 IV-1〉 부문 분류가 모호한 사례(083 공적연금 부문)	84
〈표 IV-2〉 적절하지 않은 프로그램 예산체계(2013회계연도 기준)	90
〈표 IV-3〉 COFOG 정의와 상이한 프로그램(2013회계연도 기준)	91
〈표 IV-4〉 한국예술종합학교운영 프로그램의 단위 및 세부사업 (2013회계연도 기준)	92
〈표 IV-5〉 관광 관련 프로그램의 단위 및 세부사업(2013회계연도 기준)	95
〈표 IV-6〉 다수의 COFOG 분야에 걸친 프로그램(2013회계연도 기준)	96
〈표 IV-7〉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용자)의 단위 및 세부사업	97
〈표 IV-8〉 예산 편성 및 결산 시 COFOG에 따른 부문2 추가 예시	98
〈표 IV-9〉 대구광역시 2013회계연도 COFOG 통계(인건비 배분 전)	101
〈표 IV-10〉 대구광역시 2013회계연도 COFOG 통계(인건비 배분 후)	102
〈표 IV-11〉 부천시 2013회계연도 COFOG 통계(인건비 배분 전)	102
〈표 IV-12〉 부천시 2013회계연도 COFOG 통계(인건비 배분 후)	103
〈표 IV-13〉 대구광역시 중구청 2013회계연도 COFOG 통계(인건비 배분 전) ...	103
〈표 IV-14〉 대구광역시 중구청 2013회계연도 COFOG 통계(인건비 배분 후) ...	104
〈표 IV-15〉 남원시 아영면 담당업무별 기능 분류	105
〈표 IV-16〉 남원시 산내면 담당업무별 기능 분류	106
〈표 IV-17〉 의성군 안계면 담당업무별 기능 분류	107
〈표 IV-18〉 2013회계연도 COFOG 통계 규모	110
〈표 V-1〉 국가별 COFOG 분류 체계 비교	114
〈표 V-2〉 적용가능한 COFOG-K(안)	116
〈표 V-3〉 FY2013 공적연금분야 지출 현황	117

그림목차

[그림 II-1]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나라살림(예산개요) 분야 분류 체계	37
[그림 II-2] 2012년도 경제분야에 대한 EU-27 일반정부 지출의 GDP 대비 비율 ·	47
[그림 II-3] 2012년도 교육분야에 대한 EU-27 일반정부 지출의 GDP 대비 비율 ·	48
[그림 III-1] 중앙정부의 COFOG 산출 과정(현재)	56
[그림 III-2] 지방자치단체의 COFOG 산출 과정(현재)	57
[그림 III-3] 이호조(e-Hojo)의 GFS 통합재정통계 산출 화면 예시	79
[그림 III-4] 이호조(e-Hojo)의 GFS COFOG 산출 화면 예시	80
[그림 IV-1] 중앙정부 COFOG 지표 산출(안)	111
[그림 IV-2] 지방자치단체 COFOG 지표 산출(안)	111
[그림 V-1] 우리나라와 OECD의 정부지출 구조 비교(2011년도)	119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은 중요한 국정 어젠다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글로벌 재정위기를 경험한 이후 국가의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은 해당 국가의 재정당국뿐만 아니라 국제비교를 통해 국가 간 재정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국제기구에서도 더욱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듯 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바로 정부재정통계(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GFS, 이하 GFS)이다.

GFS는 각국의 재정 제도 및 상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이다. 그 중에서 정부기능분류(Classification of Function of Government: 이하 COFOG)는 개별 국가의 기능별 지출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지표체계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거시통계체계(SNA, PSDS, ESA, BPM6)가 GFS 체계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이며, 정부재정통계의 주된 매뉴얼 기능을 하고 있다.

GFS 기준에 따르면, COFOG 지표는 일반정부 단위, 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합하여 기능별 지출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OFOG 지표는 발생주의 기준에 기초하기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결산자료에 기초하여 작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지금까지는 COFOG 지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COFOG를 공식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주요한 이유는 COFOG 지표 산출과정에서 현금주의 방식의 지출규모와 발생주의 방식의 결산상 지출규모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신뢰성의 문제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세출예산을 통해 예산의 편성과 공시를 제공하고 있는데, 세출예산체제와 COFOG는 유사한 체계이기는 하지만 다른 개념이 적용되는 체계이다. 즉, 세출예산은 현금주의 기준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그 규모를 공시하는 예산자료이며, COFOG는 발생주의 기준에 근거한 결산자료로 지표가 집계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세출예산체제는 16개 분야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GFS 86의 14개 기능에 근거하여 조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COFOG는 GFS 01에 기반하여 환경보호 및 사회보호 기능이 강조된 10개 기능으로 변경되었다.

그 외에도 정부부문에서는 GFS 기준의 COFOG 지표를 작성하여 IMF에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한국은행에서는 SNA 기준의 정부기능분류 지표를 작성하여 OECD에 보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의 정부기능분류 지표를 그대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GFS 기준은 국가결산보고서(지방자치단체는 재무보고서) 등 발생주의 결산자료를 기초자료로 COFOG 지표를 작성하는 반면, SNA 기준은 결산자료와 현금주의 세입·세출자료를 포괄하여 지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정합성 측면에서 볼 때 GFS COFOG가 SNA 정부기능분류보다 더 우수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현재는 IMF와 OECD에 보고하는 정부기능분류 지표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다양한 거시재정통계체계(SNA, PSDS, ESA, BPM6)가 GFS체제로 조화를 모색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정합성 차원 뿐만 아니라 국제비교 가능성 차원에서도 GFS 기준에 근거하여 COFOG 지표를 작성하여 공식 발표 및 보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COFOG 지표의 공식적 작성을 전제로 정부기능분류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 활용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COFOG 분류체계를 비교 분석한 후 COFOG 지표 산출대안과 그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이런 분석의 과정을 통해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COFOG-K 운영(안)을 제안한다.

결과적으로 COFOG 지표의 산출은 기능별 재정지출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게 하고 재정건전성 등 유용한 지표의 국제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 지표는 사전적으로 재정전략수립 및 전략검토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후적으로 기능별 지출의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여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뢰할 수 있는 GFS의 COFOG에 근거하여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지표를 산출해야 할 것이다. 이는 지표의 선진화와 자동화를 추구하여 궁극적으로 정부 3.0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GFS 기준의 COFOG 지표 산출의 당위성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추후 COFOG 지표의 공식적 작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반 제약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표의 집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현실적인 제약요인에 관해 살펴보면 집계단위, 집계방법, 일부 기능의 과다집계, 세출예산과 연계되지 않는 경우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프로그램예산에 기초하여 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집계단위에 차이가 존재한다. 중앙정부의 경우 ‘프로그램’ 단위 또는 ‘부문’ 단위로 COFOG 기능을 집계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호조(e-Hojo) 프로그램에서 ‘부문’ 단위로 COFOG 지표가 자동 작성된다. 달리 표현하면 중앙정부는 ‘프로그램’ 단위로 집계가 가능하고, ‘부문’ 단위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부문’ 단위로만 집계가 가능하다.

둘째, 중앙정부는 디브레인(d-Brain) 프로그램에서 COFOG 지표가 산출되지 않아 수작업으로 지표를 분류할 수밖에 없는데, 작성자의 관점 차이에 따라 자의적으로 기능이 달리 분류되는 집계방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셋째, 중앙정부의 경우, 비영리공공기관은 각 기관의 주요 기능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비배분비용은 ‘일반공공행정’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호조(e-Hojo) 프로그램에서 COFOG 지표가 산출되지만, 비영리공공기관은 COFOG 기능별 지출 규모에 비례하여 안분하고 있고, ‘인력운영비’ 등은 ‘일반공공행정’으로 분류되고 있어 ‘일반공공행정’ 기능이 과다하게

추계된다.

넷째, 세출예산과 COFOG 지표가 연계되지 않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가정보를 활용한 성과관리가 미흡하다. 여기서는 세출예산과 결산자료에 근거한 COFOG 지표의 정합성 측면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세출예산과 COFOG 지표를 연계한다고 해서 원가정보를 활용한 성과관리가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세출예산에 초점을 맞추어 기능별 지출을 논의하였다면 이제는 발생주의 기준의 기능별 지출지표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최근 거시재정통계체계가 GFS 체계로 통합(조화)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현금주의 기준의 세출예산과 발생주의 기준의 COFOG 지표를 비교해 볼 때 그 유의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재정지출 관점에서 기준을 일치시키고 기능을 명확히 분류하여 기능별 총지출규모를 산출한다면, 일반정부 또는 개별 정부단위의 기능별 지출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일반정부의 발생주의에 기초한 정합성을 가진 지출정보는 국내 외적으로 시너지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기능별 지표의 신뢰성과 정합성을 높이고 정확한 규모파악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재정전략수립 및 전략검토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고 사후적으로 재정지출의 추세 등 제반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여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국제적으로는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에 신뢰성 있는 재정정보를 생성·보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비교가능성도 높여서 우리나라의 상대적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제약요인이 존재하고 지표 집계과정에서 정합성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체계적인 연구는 드물다. 일부 COFOG 지표를 활용하여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GFS 체계에 근거하여 COFOG 지표를 산출하고 이를 분석하는 연구는 찾기 힘들다. 그러므로 GFS 01 이후 GFS 2014로 기준변경이 검토되는 이 시점에 GFS 기준의 COFOG 지표 산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현존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불일치된 지출체계도 조정가능하며, 국제기구에 신뢰성 있는 지출정보를 제공하여 우리나라의 상대적 재정상황 검토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COFOG에 관한 체계적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범위와 방법을 설정하였다. 연구범위는 중앙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2013회계연도 기준 결산자료를 활용한다. 중앙정부는 정부부처를 통합한 디브레인(d-Brain) 결산자료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호조(e-Hojo) 결산자료에 근거한 COFOG 분류지표를 활용한다.

다만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운영비 배분과 관련하여 세부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는데, 그 연구대상은 1개의 광역시, 1개의 시, 1개의 자치구로 설정하였고, 이들 자치단체의 이호조(e-Hojo) 통합재정통계 연차보고서를 활용하였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를 3개로 한정된 이유는 시간적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세부내용을 논의하면, 중앙정부는 전체 중앙부처의 ‘프로그램’ 단위로 집계한 COFOG 자료를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지방자치단체 244개 중 3개 지방자치단체의 이호조(e-Hojo) 통합재정통계자료(연차보고서)를 활용하였다. 3개 지방자치단체는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청, 경기 부천시인데, ‘부문’ 단위로 집계된 이호조(e-Hojo) 연차보고서의 COFOG 지표를 활용하여 COFOG 기능을 재분류해 본다.

추가로 기초자치단체인 남원시와 그 하위 행정구역인 남원시 아영면과 산내면, 의성군 안계면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핵심 업무에 관한 심층면접을 통해 COFOG 기능분류의 정합성을 검토해 보았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면 단위 기초 행정구역이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추후 공식적 COFOG 지표산출을 위한 선결과제 차원에서 지표산출의 전 과정상 발생 가능한 제약요인을 모니터링해 보았

다. 추가로 GFS COFOG 분류기준에 기초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정책 활용도를 제고한 COFOG-K를 제안하였다.

3.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을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제 II 장에서는 COFOG의 개념과 특징, 유사분류체계, 선행연구 및 주요국의 COFOG 활용사례에 관해 논의한다. 제 III 장에서는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COFOG 산출과정을 논의한다. 제 IV 장에서는 COFOG 지표산출 대안을 논의하는데, 집계단위, 인력운영비 등의 배분방안,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COFOG 지표 산출(안) 등을 제시한다. 제 V 장에서는 COFOG-K(안), 재정지출추이 분석(국내)과 기능별 지출의 국제비교 등 COFOG의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결론과 정책적 함의로 마무리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COFOG의 개요

가. 개념 및 특징

COFOG는 정부의 목적에 따라 지출을 분류하는 기능별 분류로서 GFS 매뉴얼에 의하면 “일반정부단위가 다양한 종류의 지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기능이나 사회·경제적 목표에 대한 상세 분류기준이다”¹⁾라고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 재정지출은 주로 일반조세나 공공적 차원에서 집단 서비스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지출과, 사회·정치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가계에 재화 및 서비스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지출 그리고 주로 가계(household)나 기타 기관 단위(institution unit)에 지급되는 소득재분배 차원의 이전지출로 구분된다.

이와 달리 COFOG는 건강, 교육, 사회보호, 환경보호 등의 목적에 따라 지출을 분류한 것으로서 정부의 지출 현황뿐만 아니라 경제의 특정 분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연구 분석 등에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사회보호’ 기능과 관련된 지출 정보를 활용하여 정부의 복지 정책변화를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환경보호 기능과 관련된 재정지출이 GDP와 같은 경제성장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도 있다.

COFOG는 특정 기능에 대한 분석이나 정책 목적에 따른 정부 지출의 시계열 추세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COFOG는 특정 목적에 부합되는 기능별 분류이므로 상이한 정부조직 구조를 가졌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국가의 일관성 있는 통계지표를 활용하여 국제 비교가 가능하다. 더불어 각 기능별로

1) IMF, “GFSM 2014,” 6장 부록 6.125문단.

일반정부가 제공하는 개인적 서비스(individual services; IS)와 집단적 서비스(collective services; CS)를 구분하여 비교가 가능하다.

당초 COFOG는 목적에 따른 정부지출 분류 네 가지 중 하나로, 정부지출 분석 및 국제비교를 위해 OECD가 개발하고, 국제연합(UN)에서 ‘목적에 따른 지출 분류’의 네 가지 분류로 출판되었다. ‘정부기능별 분류(COFOG)’, ‘개별소비의 목적에 따른 분류(COICOP)’, ‘가계지원 비영리기관의 목적에 따른 분류(COPNI)’, ‘생산자 지출의 목적에 따른 분류(COPP)’가 그것이다.²⁾ 네 가지 분류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기능별 분류(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COFOG)는 1.일반공공행정, 2.국방, 3.공공질서 및 안전, 4.경제활동, 5.환경 보호, 6.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7.보건, 8.휴양·문화·종교, 9교육, 10.사회 보호의 10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GFSM, 2014).

둘째, 목적에 따른 개별 소비 분류(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According to Purpose; COICOP)는 14개의 범주가 있다. 12개 범주(1~12번)는 가계의 개별소비지출 총액이며, 마지막 2개 범주(13~14번)는 현물 사회 이전으로 취급되는 가계지원비영리기관(NPISH)과 일반정부의 개별 소비지출이다.³⁾

셋째, 가계지원 비영리기관의 목적별 분류(Classification of the Purposes of 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 COPNI)는 7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분류에는 모든 비영리기관이 포함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⁴⁾

넷째, 목적에 따른 생산자 지출 분류(Classification of the Outlays of Producers According to Purpose; COPP)는 6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2008 SNA, 문단 29.19). COPP는 시장생산자 또는 비시장생산자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생산자에 대해 적용된다. 실무에서는 주로 시장생산자의 거래를 분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⁵⁾

2) IMF, “GFSM 2014,” 제6장 부록 각주 45; 2008 SNA.

3) UN 등(2008),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9.13문단.

4) UN 등(2008),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9.19문단.

목적에 따른 정부지출 분류 4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COFOG	COICOP	COPNI	COPP
1. 일반공공행정 2. 국방 3. 공공질서 및 안전 4. 경제활동 5. 환경보호 6.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7. 보건 8. 휴양,문화,종교 9. 교육 10. 사회보호	1. 식음료(비주류) 2. 주류, 담배 및 마약 3. 의복 및 신발 4. 주거, 수도,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5. 가구, 가계소유 비품 및 정기적 주택수선유지 6. 보건 7. 운송 8. 통신 9. 휴양 및 문화 10. 교육 11. 식당 및 호텔 12. 잡화 및 기타 서비스 13. NPISH의 개별소비지출 14. 일반정부의 개별소비지출	1. 주거 2. 보건 3. 휴양 및 문화 4. 교육 5. 사회보호 6. 종교 7. 정당, 노동자 및 전문가 조직	1. 기반시설 지출 2. 연구개발 지출 3. 환경보호 지출 4. 마케팅 지출 5. 인적자원개발지출 6. 현행 생산프로그램, 행정 및 관리에 대한 지출

이와 같이 다양한 재정통계가 존재하지만 현재 정부 재정통계가 UN 등의 기준보다 GFS의 기준으로 통합되는 추세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UN 등의 COFOG 분류는 금융자산과 부채가 포함되어 순지출의 개념이 아닌 반면, GFS 기준의 COFOG는 지출로서 의미가 없는 금융자산과 부채가 상계된 순지출의 개념을 가지기 때문이다.

즉, GFS의 COFOG는 UN등의 COFOG 분류 항목과 비교해보면 분류의 기준은 일치하지만, 개념상으로는 상이한 부분이 있다. UN 등의 COFOG 분류항목에서는 출연, 용자, 보조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GFS의 COFOG 분류항목에서는 비용과 비금융자산의 순투자 항목 지출만 적용된다. 따라서

5) UN 등(2008),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9,20문단.

용자 등과 같은 금융자산과 부채의 거래는 제외된다. 이는 금융자산과 부채는 대체가 가능하므로 일반정부 단위에서 통계를 작성할 경우, 금융자산과 부채의 거래에 해당하는 보전활동(financing activities)은 지출로서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⁶⁾

이와 같은 이유로 GFS에서는 COFOG 통계를 재정통계매뉴얼(GFSM 2014⁷⁾)를 통해 정부운영표⁸⁾의 구성 항목 중 비용(expense)을 설명하는 제6장의 부록(annex)에 제시하고 있다.⁹⁾

정부운영표의 일반적인 비용은 피용자 보수, 재화와 서비스의 사용, 이자, 고정자본소비, 보조, 출연, 사회급여, 기타 비용 등 어떤 형태로 지출되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경제적 분류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다. 이에 반해, COFOG 통계는 비용을 형태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에 정부가 얼마나 지출을 수행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고안되었다(GFSM, 2014).

그러므로 정부의 기능적 분류인 COFOG는 경제적 분류와 달리 한 회계연도 동안 일반정부가 특정분야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곳에 지출을 했는지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정부 부문의 효과성, 효율성 등의 성과를 분석하는 원가정보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방식이다.

나. 분류 체계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COFOG는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얼마나 지출하였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고안되었다.¹⁰⁾ COFOG 기능 분류 시 특정 기능

6) IMF, "GFSM 2014," 6.127문단.

7) GFS COFOG는 GFS 1986에서 최근의 GFS 2001 버전으로 업데이트되면서 크게 3가지 변화가 있었다. 이는 1999년 UN COFOG를 반영한 것으로, 분야(Division)가 14개에서 10개로 축소되었고, 환경보호를 별도의 분야로 설정하여 환경분야를 강조하고 있으며, R&D에 대한 지출을 부문으로 분리하여 구체화하였다. 최근 GFS 2014로 재개정되었으며, 제6장 비용의 부록(annex)에 COFOG 세부내용을 수록하고 있음

8) GFS에서는 4개의 핵심적인 보고서가 작성되는데, 이는 '정부운영표(Statement of Operations)', '거래외 경제유량표(Statement of Other Economic Flows)',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현금의 원천 및 사용표(Statement of Sources and Uses of Cash)'임(GFSM, 2014)

9) GFS 1986에서는 제4장 분류(Classification)에서 지출(expenditure)항목을 설명하는데, 기능별 분류와 COFOG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하고, 그 뒤에 경제적 분류를 설명하고 있음

과 관련된 모든 재정지출은 그 경제적 특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동일기능으로 분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시 말해 특정 기능과 관련된 재정지출(현금 이전, 가계로 이전되는 재화와 서비스, 일반정부단위에서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비금융자산 순투자)은 모두 동일한 기능으로 분류되어야 한다.¹¹⁾

이러한 COFOG 분류방식은 각 국가의 정부 조직 형태나 기존 조직의 개편 여부 등에 상관없이 통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데, 이는 COFOG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COFOG는 정부가 특정한 정책목표를 위해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비교와 내부적인 재정운영 모니터링 및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 사회보호분야 지출에 대한 시계열 정보는 국민의 복지에 대한 정부 지원의 추이를 보여주며, 사회부조 등과 관련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COFOG 기능 분류는 작성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분류기준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대학교 의과대학에 재정지출을 하였다면, 그 기능은 '보건'으로 분류하기 쉬운데 원칙적으로는 '교육'으로 분류해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R&D)의 경우, 그 자체가 하나의 기능으로 분류될 수도 있지만, 연구개발과 관련된 재정지출은 연구개발(R&D)의 목적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기능으로 분류해야 한다.¹²⁾ 다시 말해, COFOG는 특정한 분석적 목적을 위해 그 분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정성호, 2015b).

그러나 이러한 분류가 항상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류가 모호한 경우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U의 경우 각국이 기능 분류 시 동일하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모호한 사례와 이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매뉴얼을 공개하고 있다(〈각주 22〉 참고).

또한 부처의 행정적 지출(administrative expenditure)이 여러 등급(class)

10) COFOG 기능분류는 일반정부를 기준으로 COFOG 지표를 집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을 뿐 '부문' 단위로 집계하든지, '프로그램' 단위로 집계하든지는 개별 국가의 재량이다. 다만 일반정부 단위로 69개 '부문'의 총합을 10개 '기능'으로 집계하면 된다.

11) IMF, "GFSM 2014," 6장 부록 6.129문단.

12) IMF, "GFSM 2014," 6장 부록 6.142문단.

에 걸쳐 지출된 경우 관련된 등급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러한 배분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역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등급에 배분되어야 한다.¹³⁾ 정부 지출의 기능별 분류기준은 이와 같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COFOG 기능을 분류할 때 기관단위와는 관계없이 가장 작은 실체를 기준할 때가 최선일 수도 있다. 일부의 경우에는 기능 분류 시 정부부처 내의 기관, 청, 국 또는 그보다 더 작은 실체의 거래를 기준할 경우도 있다.¹⁴⁾ 이와 같이 COFOG 기능은 광의적으로도 정의가 가능하고, 협의적으로도 정의가 가능하다(정성호, 2015b).

COFOG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부부처가 기능별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처별 결산자료가 기능별 지출자료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때로는 한계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정부 조직 개편 시 일관된 시계열 자료를 작성하기가 곤란하며 이에 따른 분석도 어렵게 된다. 또한 하나의 부처가 여러 가지 분야에 걸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정확한 통계 산출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소관부처별로 분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정부의 기능별 분류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

또한 COFOG는 당해 연도의 지출을 파악함과 동시에 다음 회계연도 또는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운영 방향을 수립할 경우 유용한 자료가 된다. 예컨대 재정지출의 기능별 한도(ceiling)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일반정부의 기능별 재정지출 관련 국제비교, 재정지출에 따른 환류(feedback) 등에 활용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COFOG 통계를 통해 정부 재정지출의 기능별 규모와 그 추이를 비교·분석하여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재정정책의 효율성 등을 분석할 수 있다.

GFS에서 COFOG는 UN의 기능별 분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추이, 현 상태에 대한 국제비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물론 각 국가별로 처한 환경, 역사 등 특성이 다르므로 직접적인 단순 비교는 큰

13) IMF, "GFSM 2014," 6장 부록 6.144문단.

14) IMF, "GFSM 2014," 6장 부록 6.140문단.

의미가 없을 수 있으나, 주변국 또는 주요국의 통계를 바탕으로 하여 재정 운영 방향 등을 설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COFOG의 구체적 분류체계를 살펴보자. <표 II-1>을 통해 보는 바와 같이 COFOG의 분류는 굵은 글씨체로 표시된 10개 분야 (division)와 그 하위 69개 부문(group) 및 다수의 최하위 항목인 등급(class)으로 구성되어 있다(정성호, 2015a). 구체적으로 10개 분야는 1.일반공공행정, 2.국방, 3.공공질서 및 안전, 4.경제활동, 5.환경보호, 6.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7.보건, 8.휴양·문화·종교, 9.교육, 10.사회보호로 구분되어 있고, 각 분야별로 5~10개의 하위부문으로 나뉘어져서 총 69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GFS 체계의 COFOG 분류는 다른 통계들과 구분하기 위해 ‘7’ 다음에 분야(2자리 코드), 부문(3자리 코드), 등급(4자리 코드)으로 구분한다.¹⁵⁾

다만, 특정 기능을 위해 사용된 공공 채무 거래, 현금 이전 등은 일반공공 행정분야 중 각각 하나의 부문으로 기록된다. COFOG의 상세 분류는 이 보고서 [부록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II-1> 정부 기능에 따른 COFOG 분야 및 부문 분류 체계

7	총지출		
701	일반 공공행정	706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7011	행정 및 입법기관, 금융 및 재정, 국외 업무	7061	주거시설 개발
7012	해외 경제원조	7062	지역사회 시설 개발
7013	일반 서비스	7063	수도 공급
7014	기초연구	7064	가로등
7015	일반 공공행정 R&D	7065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R&D
7016	기타 미분류 일반 공공행정	7066	기타 미분류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7017	공공 채무 거래	707	보건
7018	정부 간 일반 이전	7071	의료 제품, 기기, 장비
702	국방	7072	외래 환자서비스
7021	군사 방어	7073	병원서비스

15) IMF, “GFSM 2014,” 6장 부록 6.128문단.

〈표 II-1〉의 계속

7		총지출	
7022	민방위	7074	공공 보건서비스
7023	해외 군사원조	7075	보건 R&D
7024	국방 R&D	7076	기타 미분류 보건
7025	기타 미분류 국방	708	휴양, 문화, 종교
703	공공질서 및 안전	7081	휴양 및 스포츠서비스
7031	경찰서비스	7082	문화서비스
7032	소방서비스	7083	방송 및 출판서비스
7033	법원	7084	종교 및 기타 공동체 서비스
7034	교도소	7085	휴양, 문화, 종교 R&D
7035	공공질서 및 안전 R&D	7086	기타 미분류 휴양, 문화, 종교
7036	기타 미분류 공공질서 및 안전	709	교육
704	경제활동	7091	유아 및 초등교육
7041	일반 경제, 상업, 노동	7092	중등교육
7042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	7093	2차 중등교육
7043	연료 및 에너지	7094	고등교육
7044	광업, 제조, 건설	7095	등급 외 교육
7045	운송	7096	교육 보조 서비스
7046	통신	7097	교육 R&D
7047	기타 산업	7098	기타 미분류 교육
7048	경제 R&D	710	사회보호
7049	기타 미분류 경제	7101	질병 및 장애
705	환경보호	7102	노령
7051	폐기물 관리	7103	유족
7052	폐수 관리	7104	가족 및 자녀
7053	공해 방지	7105	실업
7054	생물 다양성 및 경관 보호	7106	주거
7055	환경보호 R&D	7107	기타 미분류 사회적 배제
7056	기타 미분류 환경보호	7108	사회보호 R&D
		7109	기타 미분류 사회보호

자료: IMF, GFSM 2014, 제6장 부록, p.142.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COFOG는 정부 정책목표의 포괄 범위에 따라 분야(division), 부문(group), 등급(class)으로 분류한다. 이 범주에서 등급은

그 서비스가 개인에게 혜택이 주어지면 개인적 서비스(IS)로 분류하고, 집단적으로 공동체에 혜택을 주어지면 집단적 서비스(CS)로 구분되어 표기한다.

즉, 개인적 서비스(IS)는 가계에 의해 취득되는 서비스이며, 해당 가계 구성원의 필요나 요구 충족을 위해 사용되는 반면, 집단적 서비스(CS)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동시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¹⁶⁾

예를 들어 ‘교육’ 분야에 해당하는 등급인 유아교육, 초등교육, 고등교육 등은 개인적 서비스에 해당하며, 교육 관련 응용연구를 위한 교육 R&D, 교육 정책 등과 관련된 기타 미분류 교육 등은 집단적 서비스에 해당한다.

이러한 구분은 우리나라의 경우 생소한 개념으로 여겨지는데, 유럽 국가에서는 개인적 서비스 및 집단적 서비스 관련 지출 규모 등이 재정운영 분석에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개인적 서비스가 한 개인이 혜택을 받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을 위한 서비스의 지출 규모와 공동체를 위한 서비스의 지출 규모를 비교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서 의미를 갖는다. 다만 개인적 서비스와 집단적 서비스가 모든 등급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COFOG의 원칙적인 분류단위는 개별 거래이며,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 임금 및 급여, 이전지출, 기타 지출 등의 개별 거래는 거래가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분류된다. 거래가 아닌 경우 가장 작은 실체단위에 대해 분류기준이 적용되는데,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실체의 경우는 더 큰 부분을 차지하는 목적으로 분류해야 한다.¹⁷⁾

COFOG의 다른 특징으로는 고정자본소비 처리와 관련한 것을 들 수 있다. COFOG의 지출은 비용과 비금융자산 순투자로 구성되는데,¹⁸⁾ 이때 비용에는 고정자본소비가 포함된다. 따라서 비금융자산 순투자를 계산할 때 고정자본소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COFOG 통계 시 고정자본소비를 제외해야 한다.¹⁹⁾ 즉, 다음의 산식이 성립한다.

16) IMF, “GFSM 2014,” 6장 부록 6.134~6.135문단.

17) IMF, “GFSM 2014,” 6장 부록 6.140문단.

18) IMF, “GFSM 2014,” 6장 부록 6.127문단.

COFOG 총 지출 = 비용 + 비금융자산 순투자

= (비용자보상 + .. + 고정자본소비 + .. + 기타비용)

+ (비금융자산 취득 - 처분 - 고정자본소비)

또한 정부운영표(Statement of Operations)에서 비용의 분류에 사용되는 경제적 분류와 기능별 분류를 하나의 표로 나타내는 교차분류를 이용한 분석이 가능하다. <표 II-2>는 이러한 교차분류 방법을 보여준다.

<표 II-2> 기능 및 경제적 분류에 의한 지출의 교차분류

	비용자 보상 [GFS] ¹⁾	재화 및 서비스 사용	고정자 본소비 [GFS]	이자 [GFS]	보조	출연	사회 급여 [GFS]	기타 비용	비금융 자산 순투자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경제									
환경보호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									
보건									
휴양, 문화, 종교									
교육									
사회보호									

주: 1) [GFS]는 GFS 항목이 2008 SNA에서 동일하게 사용되지만 상이한 범위를 가진 경우 표시
자료: IMF, "GFSM 2014," 6장 부록, p.324.

교차분류 분석을 통해 정부 총지출이 각각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기능별 분류) 이루어졌는지와 각 기능별 지출이 어떤 형태(경제적 분류)로 이루어졌는지, 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19) IMF, "GFSM 2014," 6장 부록 6.147문단.

또한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특정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지출 구성의 시계열 변화를 볼 수 있으며, 특정 기능이 다른 정부에 의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비교도 가능하다.

이렇게 유용한 교차분류 분석이지만, 실무적으로 통계를 산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정부부처나 비영리공공기관의 경우 독립적으로 결산이 이루어지므로 각각을 기능별로 배분하고, 이후 경제적 분류항목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훨씬 복잡한 문제를 갖는다. 독립적으로 결산을 수행하는 각 단체가 모든 분야에 걸쳐 지출하므로 정확한 기능별 분류를 위해서는 해당 단체의 부서별, 또는 투입인력별 통계를 작성하는 별도의 추가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인력운영비 등 간접비의 기능별 배분과 유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제Ⅲ장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한국은행의 경우 <표 Ⅱ-3>에서 보는 바와 같이 SNA 2008에 근거하여 매년 총지출에 대한 교차분류표(일반정부의 부문별 기능별 총지출 표)를 작성하고 있다. GFS COFOG 교차분류와 비교할 때 암묵적(imputed) 비용의 경우 원자료가 없으므로 추정 작업을 거치며, 고정자본소비는 경제통계국 BS팀에서 산출한 일반정부 및 산업별 수치를 활용하여 경제활동별로 배분하는 점이 특이하다. 주로 국방, 의료, 복지, 사회보장, 문화, 환경보호 등의 기능으로 분류되며, R&D는 일부 일반공공행정 및 교육분야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경제활동분야에 할당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차분류 통계를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중분류 수치를 매핑하고 현금주의 자료인 예산개요, 재정연감 등과 비교하고 있다. 이렇게 작성된 교차분류표에서는 기능별 증감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 있으며, 주로 증감원인에 대한 분석과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통계에 대한 정확성 제고가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매년 작성되는 한국은행의 COFOG 부문별 기능별 총지출 교차분류표를 이용하여 GFS COFOG 교차분류표를 작성하게 되면, 이중 작업 없이 통계를 산출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을 실무적으로 구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먼저 한국은행의 COFOG 통계는 SNA 2008을 근간으로 하여 산출되며, 대부분의 항목은 GFS COFOG와 부합하지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총지출 합계 및 각 기능별 수치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SNA 2008의 경우에도 GFS와 마찬가지로 발생주의를 기반으로 통계가 작성되나, 분기별 통계 작성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현금주의 기반의 세입·세출 정보가 활용되기도 한다. 즉, 한국은행의 COFOG 통계는 발생주의와 현금주의가 결합된 형태의 통계수치인 것이다. 이에 반해 GFS의 경우 완전한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한 결산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므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차이를 분석·조정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이는 SNA와 GFS의 근본적인 작성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SNA는 경제전반에 걸친 기관단위(가계, 기업, 정부)별 소득, 지출, 투자 등에 대해 균형적인 관점에서 통계가 작성되나, GFS의 경우 일반정부부문에 한정되어 정책적인 관리나 국제비교 등의 실무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II-3〉 한국은행 교차분류 작성 사례: 2013년도 일반정부의 부문별·기능별 총지출¹⁾

(단위: 십억원)

구분	비용자 보수	생산 및 수입세	중간 소비	보조금	재산 소득	사회보장 현물수혜	사회 수혜금	기타경상 이전	자본이전	총고정 자본형성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	비생산 비금융 자산의 순취득	총지출
일반공공 행정	21,393.0	49.8	14,750.8	0.0	23,376.1	0.0	0.0	11,310.0	562.7	5,554.0	0.0	498.6	77,495.0
국방	11,697.4	8.2	9,368.3	0.0	0.3	0.0	0.0	3,216.8	141.3	10,823.2	0.0	113.4	35,368.8
공공질서 및 안전	12,121.1	14.7	2,717.8	0.0	11.9	0.0	0.0	214.6	54.5	2,723.6	0.0	381.6	18,239.9
경제업무	7,194.9	9.3	10,755.8	4,203.4	2,156.4	0.0	0.0	11,499.5	11,081.0	24,935.6	-23.6	4,248.6	76,061.0
환경보호	1,599.2	0.0	4,298.2	0.0	6.1	0.0	0.0	619.2	354.9	3,376.8	0.0	509.7	10,764.0
주택 및 지역개발	711.8	0.0	1,329.4	0.0	42.5	0.0	0.0	697.7	786.6	8,333.6	0.0	1,632.3	13,533.8
보건	1,476.0	9.6	1,361.5	0.0	0.1	48,812.8	0.0	2,835.7	331.5	280.1	0.0	52.2	55,159.4
오락 문화 및 종교	1,228.4	0.0	1,962.3	0.0	3.1	0.0	0.0	1,902.7	482.9	3,654.1	0.0	588.0	9,821.5
교육	32,152.9	11.5	12,772.7	0.0	5.6	1,691.8	2,583.7	16,426.4	579.5	4,494.8	0.0	3,121.1	73,840.2
사회보호	4,630.4	0.2	2,644.2	0.0	20.4	0.0	64,800.9	7,621.6	1,945.7	1,906.7	0.0	137.7	83,707.7
합계	94,205.1	103.3	61,961.1	4,203.4	25,622.5	50,504.6	67,384.6	56,344.3	16,320.6	66,082.5	-23.6	11,283.1	453,991.4

주: 1) 교차분류표는 일반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 각 부문별로 작성되나, 일반정부 통계만을 발췌

자료: 한국은행, 2013년 국민계정(확정), 2015, pp.66~67.

2. 유사 분류 체계

가. 프로그램 예산체계

우리나라의 예산과목구조는 장(분야) - 관(부문) - 항(프로그램) - 세항(단위사업) - 목으로 구분된다(정성호, 2015a). 그 법적 근거는 「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3항과 4항이다.

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 예산의 구분)

- ③ 세출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 ④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특히, 장(분야) - 관(부문)은 정부의 수행 업무를 기능별로 분류한 것으로, 16개 장(분야)과 69개 관(부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하위의 항(프로그램)과 세항(단위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정성호, 2015a). 참고로 관(부문)은 COFOG 69개 부문과는 차이가 있으며, 현재는 COFOG 지표를 산출하는 기초자료는 프로그램 예산체계이다.

우리나라의 예산과목체계인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COFOG 체계를 연계해서 비교해보면 <표 II -4>와 같다. 프로그램예산체계는 16개 분야와 69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COFOG 체계는 10개 분야와 69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프로그램예산체계의 16개 분야 중에서 일반 공공행정과 통일외교가 통합되어 COFOG의 일반공공행정으로 분류되며,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통신, 국토 및 지역개발은 모두 COFOG의 경제활동으로 분류된다. 그 외 과학기술과 예비비의 경우는 재정이 지출된 기능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프로그램예산체계와 COFOG 체계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표 II-4〉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COFOG체계 연계 비교

프로그램예산체계			COFOG	
분야(16개)	부문(69개)		분야(10개)	부문(69개)
010. 일반공공행정	011. 입법 및 선거관리 012. 국정운영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14. 재정·금융 015. 정부자원관리 016. 일반행정	→	701 일반공공행정	행정 및 입법기관 금융 및 재정 국외 업무 해외 경제원조 일반 서비스 기초연구 일반 공공행정 R&D 기타 미분류 일반 공공행정 공공 채무 거래 정부 간 일반 이전
030. 통일·외교	031. 통일 032. 외교·통상			
020. 공공질서 및 안전	021. 법원 및 현재 022. 법무 및 검찰 023. 경찰 024. 해경 025. 재난관리	→	703 공공질서 및 안전	경찰서비스 소방서비스 법원 교도소 공공질서 및 안전 R&D 기타 미분류 공공질서 및 안전
040. 국방	041. 병력운영 042. 전력유지 043. 방위력개선 044. 병무행정	→	702 국방	군사 방어 민방위 해외 군사원조 국방 R&D 기타 미분류 국방
050. 교육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052. 고등교육 053. 평생·직업교육 054. 교육일반	→	709 교육	유아 및 초등교육 중등교육 2차 중등교육 고등교육 등급 외 교육 교육 보조 서비스 교육 R&D 기타 미분류 교육
060. 문화 및 관광	061. 문화예술 062. 관광 063. 체육 064. 문화재 065. 문화 및 관광일반	→	708 휴양, 문화, 종교	휴양 및 스포츠서비스 문화서비스 방송 및 출판서비스 종교 및 기타 공동체 서비스 휴양, 문화, 종교 R&D 기타 미분류 휴양, 문화, 종교
070. 환경	071. 상하수도·수질 072. 폐기물 073. 대기 074. 자연 075. 해양환경 076. 환경일반	→	705 환경보호	폐기물 관리 폐수 관리 공해 방지 생물 다양성 및 경관 보호 환경보호 R&D 기타 미분류 환경보호

〈표 II-4〉의 계속

프로그램예산체계			COFOG	
분야(16개)	부문(69개)		분야(10개)	부문(69개)
080. 사회복지	081 기초생활보장 082 취약계층지원 083 공적연금 084 보육·가족 및 여성 085 노인·청소년 086 노동 087 보훈 088 주택 089 사회복지일반	→ 710 사회보호	710 사회보호	질병 및 장애 노령 유족 가족 및 자녀 실업 주거 기타 미분류 사회적 배제 사회보호 R&D 기타 미분류 사회보호
090. 보건	091 보건의료 092 건강보험 093 식품의약품안전	→ 707 보건	707 보건	의료 제품, 기기, 장비 외래 환자서비스 병원서비스 공공 보건서비스 보건 R&D 기타 미분류 보건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102 임업·산촌 103 수산·어촌 104 식품업	→ 704 경제활동	704 경제활동	일반 경제, 상업, 노동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 에너지 광업, 제조, 건설 운송 통신 기타 산업 경제 R&D 기타 미분류 경제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1 산업금융지원 112 산업기술지원 113 무역 및 투자유치 114 산업진흥·고도화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120. 교통 및 물류	121 도로 122 철도 123 도시철도 124 해운·항만 125 항공·공항 126 물류 등 기타			
130. 통신	131 방송통신 132 우정			
140. 국토 및 지역개발	141 수자원 142 지역 및 도시 143 산업단지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53 과학기술일반	→ 701~710 각 기능	701~710 각 기능	R&D
160. 예비비	161 예비비	→ 701~710 각 기능	701~710 각 기능	예비비

주: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COFOG 체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지표분류시 실무자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기 어려움

자료: 저자 작성

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나라살림

[그림 II-1]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나라살림(예산개요) 분야 분류 체계

〈예산과목구조〉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나라살림〉 (조원)	
구 분	'10	구 분	'10
15. 과학기술	43	1. R&D ¹⁾ (별도통계)	13.7
1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1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1
12. 교통 및 물류	17.5	3. SOC	25.1
14. 국토 및 지역개발	7.6		
10. 농림수산	17.3	4. 농림수산	17.3
8. 사회복지	73.9	5. 보건복지	81.2
9. 보건	7.3		
5. 교육	38.3	6. 교육	38.3
6. 문화체육관광	3.9	7. 문화체육관광	3.9
7. 환경	5.4	8. 환경	5.4
4. 국 방 (총지출)	29.0	9. 국 방 ²⁾ (일반회계 총계)	29.6
3. 통일외교	3.3	10. 통일외교	3.3
2. 공공질서안전	12.9	11. 공공질서안전	12.9
1. 일반공공행정	48.7	12. 일반공공행정	48.7
13. 통 신 ³⁾	6.2		
16. 예비비	2.1		
총지출	292.8		

주: 1) '과학기술'분야 외에, 여타 분야 중 R&D 관련 사업예산을 중복 계상.

2) 국방전력 증강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특별회계(군사시설 이전) 예산은 제외.

3) 대부분이 우편사업·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특별회계 관련 예산.

1. 12개 분야 합계는 총지출 292.8조원과 일치하지 않음.

자료: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분야별 투자방향' 수립이나, 나라살림(예산개요 또는 예산홍보책자)의 '분야별 재원배분' 설명에 사용되는 분야는 총 12개로, 예산과목구조(프로그램 예산체계)의 16개 분야와 차이가 있다. 이는 대국민 설명(홍보)용으로 기능별 재정지출규모를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

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예산과목상의 유사 분야를 통합하거나, 관심이 큰 분야는 별도로 분리하였기 때문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사회복지’와 ‘보건’을 통합하여 ‘보건·복지’ 분야로 구분하고, ‘교통 및 물류’와 ‘국토 및 지역개발’을 통합하여 ‘SOC’ 분야로 구분하며, R&D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 나라살림의 12개 분야 〉

1. R&D	7. 문화·체육·관광
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8. 환경
3. SOC	9. 국방
4. 농림수산	10. 통일·외교
5. 보건·복지	11. 공공질서·안전
6. 교육	12. 일반공공행정

다. 사회복지지출(SOCX) 통계

OECD SOCX는 사회정책분석을 촉진하기 위해 1996년대에 개발된 사회보장 관련 통계자료이다. SNA가 사회적 현금 및 현물급여에 관한 이전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경환 외, 2013; 19). SOCX는 공공사회복지지출, 법정 민간사회복지지출, 자발적 민간사회복지지출, 총사회 복지지출, 순사회복지지출 등으로 구성된다.²⁰⁾ 다만 SOCX는 COFOG의 보건(707)과 사회보호(710)가 합한 재정지출이라 할 수 있다(GFSM, 2014).

다음 〈표 II-5〉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급여성격으로 볼 때 현금과 현물급여가 동시에 적용되는 분야는 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기타 사회보호이며, 현물급여만 적용되는 분야는 보건, 주거이며, 현금과 현물급여의 구분이 없는 분야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다.

20) OECD,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검색일자: 2015.10.28).

〈표 II-5〉 SOCX 공공 및 민간(법정/자발) 지출 분류 체계

분 야	급여형태	공공 (public)	법정 민간 (mandatory private)	자발 민간 (voluntary private)	비 고(지출유형)
노령	현금(cash)				연금 조기퇴직연금 기타 현금급여들
	현물(in-kind)				돌봄/가사보조서비스 기타 현물급여들
유족	현금(cash)		n/a	n/a	연금 기타 현금급여들
	현물(in-kind)		n/a	n/a	장제비 기타 현물급여들
근로무 능력 관련 급여	현금(cash)				장애연금 연금(산업재해) 유급상병휴가(산업재해) 유급상병휴가(기타상병수당) 기타 현금급여들
	현물(in-kind)				생활시설/재가보조서비스 기타 현물급여들
보건	현금(cash)	n/a	n/a	n/a	
	현물(in-kind)				현물급여들
가족	현금(cash)			n/a	가족수당 산전휴가 및 육아휴직 기타 현금급여들
	현물(in-kind)			n/a	보육/재가서비스 기타 현물급여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현금(cash)/ 현물(in-kind) 구분없음		n/a	n/a	고용서비스와 행정 노동시장행정 청년에 대한 지원 고용보호지원 장애인 고용지원
실업	현금(cash)		n/a	n/a	실업수당/해고수당 노동시장환경으로 인한 조기퇴직
	현물(in-kind)		n/a	n/a	현물급여들
주거	현금(cash)	n/a	n/a	n/a	
	현물(in-kind)		n/a	n/a	주거보조 기타 현금급여들
기타 사회보호	현금(cash)				소득보조 기타 현금급여들
	현물(in-kind)				공공부조 기타 현물급여들

주: 음영표시는 해당, n/a는 해당사항 없음

자료: Adema, W., Fron, P., & Ladaique, M.(2011); OECD SOCX(Social Expenditure Aggregated data) Manual,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를 토대로 저자가 재구성(검색 일자: 2015.10.28.).

우리나라에서는 OECD SOCX 기준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지출을 추계하는데, 중앙정부는 디브레인(d-Brain) 시스템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이호조(e-Hojo) 시스템에서 지표를 추출하여 집계한다.

다시 말해 SOCX 지표는 <표 II-4>에 제시된 사회복지(080)와 보건(090)의 합으로 정의할 수 있고 프로그램의 하위 예산자료(세세 사업)와 결산자료(세부사업)를 기초로 예·결산액을 연계하여 비교 검증 후 지표를 집계한다. 다만 COFOG는 결산자료에 기초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또는 그 이하 단위에서 지표를 집계할 수 있다.

3. 선행연구 및 주요국 사례

가. 선행연구

국외의 문헌을 살펴보면 주로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정부지출의 효율성 그리고 이러한 효율성과 경제성장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Donath and Milos(2008)는 정부의 예산제약을 인식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공공재정 지출의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부는 효율성과 효과성이 담보된 관리방식의 수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효율성과 성과평가를 통해 공공지출 비용의 질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Izák(2011)은 내생적 경제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유럽공동체 국가의 조세와 정부지출의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정부지출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비생산적인 지출에 속하는 사회보호와 사회지급(social payments)은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히 왜곡적 조세(distortionary tax)²¹⁾와 간접세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Freysson and Wahrig(2013)는 보건과 사회보호에 초점을 두어 일반 정부

21) 왜곡적 조세(distortionary tax)는 “세금을 올리면 가격곡선에 변동이 생겨 행동(공급이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조세체계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non-distortionary tax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않은 조세체계로 인두세가 이에 해당된다”(정성호, 2015a, 각주 8).

의 지출 추세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부각되고 있는 복지재정지출 증가와 관련되며 COFOG 지표 중 보건과 사회보호 기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음을 예시하고 있다.

Szarowska(2012)는 유럽 중앙국가(8개)의 COFOG 지표를 이용하여 공적분 검정과 오류수정모델을 통해 정부의 지출과 성과에 관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정부지출 중에서 최소 4개의 기능은 성과측면에서 장기적 영향이 있다고 밝힌다. 또한 대부분의 유럽중앙국가의 정부지출이 경기 순응적임을 밝히고 있다.

Szarowská(2014)는 체코공화국의 1995-2008년 COFOG 지표를 활용하여 정부지출과 경제성장이 상관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다시 말해 정부가 경기안정화 기제로서 재정정책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경기안정화 기제의 특성을 지닌 COFOG의 일반공공행정, 교육, 경제활동 등의 정부지출이 GDP와 부정적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한편, GDP와 총정부지출, GDP와 '공공질서 및 안전'과 '경제활동' 지출 사이에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 영향이 있다는 것을 공적분 검정을 통해 밝히고 있다.

Tsouhrou and Mylonakis(2011)는 Eurostat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관해 분석하였다. 대부분 유럽 공동체 국가가 공공부문을 축소하고 있다. 이른바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간 규모의 공공부문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공공부문의 규모별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데, 공공부문의 규모가 큰 국가들은 평균 1.4~3%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고, 중간규모 국가들은 평균 1.5~4.6%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규모가 작은 국가들은 평균 3~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COFOG와 유사한 기능분류 체계인 세출예산의 지출패턴에 관한 연구(임성일, 2007)가 있는데, 세출예산의 지출패턴에서 사회복지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대응 역할에 관해 연구하였다.

외국의 경우에는 COFOG 지표와 경제성장 관련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 아직 관련 연구가 적은 것은 자료 획득과정의 어려움과 정부기능별 지출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은 이유라 판단된다.

따라서 국내연구의 확산을 위해, COFOG 지표를 활용한 연구분야의 범주를 구분하면 몇 가지가 가능하다. 우선 정부의 기능별 재정지출 추이를 파악할 수 있고, 정부의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간 인과관계 검증이 가능하며, 정부기능별 지출을 세분화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도 하나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Tsouhlou and Mylonakis(2011)의 연구와 같이 공공부문의 지출규모와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세출의 예산과 결산을 연계하여 실제 기능별 지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정책결정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으며 성과관리 등에도 활용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합성이 보장되고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COFOG 지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COFOG 지표의 활용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그 활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나. EU²²⁾

EU에서는 SNA 1993을 기반으로 한 ESA95(European System of Accounts 1995)을 기준으로 COFOG를 작성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EU 국가별 비교를 위해 일반 정부부문은 물론 정부지출에 대한 기준 마련하고 있으며, 발생주의 회계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는데, 정부재정통계(GFS, 2014)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관점에서 연결(consolidation)과 순계(netting) 등 세부적인 지침까지 제공하고 있다. 다만 UN COFOG와 동일한 분류 체계를 따르고 있다(정성호, 2015a).

특히 EU 통계청 국가에서는 국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COFOG 통계 작성 시 분류가 애매한 경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분류가 여러 기능에 걸쳐 있는 경우인 간접측정 금융서비스(FISIM)

22) Eurostat(2011), "Manual on sources and methods for the compilation of COFOG Statistics."

의 이자, 고정자본소비, 사회기여금 및 사회급여, 개인 및 집단의 최종소비 지출, 현물 사회이전 등에 대한 세부 분류 지침 및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GFSM, 2014; 정성호, 2015a).

또한, EU 국가들의 작성 실무와 관련하여 통계 작성 부서, 데이터의 출판 여부(근거), 국가별 통계 작성 실무 내용 등을 기술하고, 추가적으로 개별적 및 집단적 최종소비지출, 고정자본소비 등의 처리 방법, 일회성 거래, 여러 기능에 걸친 경우 등에 대해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1) SEEA(CEPA)²³⁾와의 연관성

EU에서는 여러 국제통계와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환경보호활동 및 지출 분류(CEPA) 통계를 활용하고 있다. COFOG의 환경보호(705)분야는 환경보호 활동 관련 지출 분류(CEPA)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보호 분야의 6개 부문은 CEPA의 9개 분야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고 있다.

〈표 II-6〉에서 보는 바와 같이 COFOG의 환경보호 분야와 SEEA(CEPA)는 동일한 분류항목이지만 CEPA의 경우는 환경보호활동 관련 지출을 세분화하여 ‘공해 방지(pollution abatement)’ 부문이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류기준의 차이로 두 통계치상 불일치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COFOG는 개별 거래를 원칙적 분류단위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행정자료는 부처나 행정단위 자체가 분류의 기준이 되기도 하므로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 and Revenues: EPER)이나 환경보호지출(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 Accounts: EPEA) 작성과 비교할 때 다소 개략적 통계가 작성되기 때문이다.

23) SEEA; System of Interated Environment & Economic Account; 환경경제통합계정체계, CEPA; Classification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ies and Expenditures: 환경보호 활동 및 지출 분류

〈표 II-6〉 COFOG의 환경보호분야와 CEPA 2000 분류항목 비교

COFOG(05 환경보호)	SEEA(CEPA 2000)
05.1.0 폐기물 관리	3. 폐기물관리
05.2.0 폐수 관리	2. 폐수관리
05.3.0 공해 방지	1. 대기 및 기후 보호
	4. 토양, 지하수 및 지표수의 보호 및 복구
	5. 소음 및 진동 방지
	7. 방사선으로부터의 보호
05.4.0 생물 다양성 및 경관 보호	6. 종(생물)의 다양성 및 자연경관 보호
05.5.0 환경보호 R&D	8. 연구 및 개발
05.6.0 기타 미분류 환경보호	9. 기타 환경보호 활동

자료: Eurostat(2011), "Manual on sources and methods for the compilation of COFOG Statistics," p.56.

2) 보건계정체계(SHA)와의 연관성

보건계정체계(SHA)는 공공 및 민간통계를 포함하지만, COFOG는 정부의 행정적 통계로 제한되는 차이가 있다. 보건계정체계와 COFOG 보건분야(707)의 부문을 비교해보면 SHA가 COFOG에 비해 더 세분화 되어 있다. 부문 단위의 통계는 일부 분류기준 차이를 제외하면 분류 기준이 유사하여 호환 가능하다.

〈표 II-7〉 COFOG의 보건분야와 SHA 분류항목 비교

COFOG(07 보건)	SHA
07.1 의료 제품, 기기, 장비	HC.5 외래환자에게 조제된 의약품
07.1.1 의약품(S)	HC.5.1.1 처방약
	HC.5.1.2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
07.1.2 기타 의료 제품(S)	HC.5.1.3 기타 의료 소모품
07.1.3 치료 기기 및 장비(S)	HC.5.2 치료 기기 및 의료 장비(내구재)
	HC.5.2.1 안경 및 기타 시력보정제품
	HC.5.2.2 정형외과 기기 및 보철물
	HC.5.2.3 보청기
	HC.5.2.4 휠체어 등 의료기기
	HC.5.2.9 기타 여러 가지 의약품

〈표 II-7〉의 계속

COFOG(07 보건)	SHA
07.2 외래환자 서비스	HC.1.3 외래환자 치료
	HC.1.4 자택 요양 서비스
	HC.2.3 외래환자 재활치료
	HC.2.4 자택 재활치료 서비스
	HC.3.3 자택 요양 장기간병
	HC.4 의료 보조서비스
07.2.1 일반의료 서비스(S)	HC.1.3.1 기본 의료 및 진료서비스
	HC.2.3 외래환자 재활치료
07.2.2 전문의료 서비스(S)	HC.1.3.3 기타 모든 전문의료
07.2.3 치과서비스(S)	HC.1.3.2 외래환자 치과치료
07.2.4 준의료서비스(S)	HC.1.3.9 기타 모든 외래환자 진료서비스
	HC.1.4 자택 진료서비스
	HC.2.3 외래환자 재활치료
	HC.2.4 자택 재활치료 서비스
	HC.3.3 자택 요양 장기간병
	HC.4 의료 보조서비스
	HC.4.1 임상검사실
	HC.4.2 영상진단
	HC.4.3 환자운반 및 긴급구조
07.3 병원서비스	HC.1.1 입원환자 치료
	HC.1.2 무입원 치료
	HC.2.1 입원환자 재활치료
	HC.2.2 무입원 재활치료
	HC.3.1 입원환자 장기간병
	HC.3.2 무입원 장기간병
07.3.1 종합병원서비스(S)	—
07.3.2 전문병원서비스(S)	—
07.3.3 진료소 및 조산소서비스(S)	—
07.3.4 간병소 및 요양소서비스(S)	—
07.4 공공 보건서비스	HC.6(HC.6.4 제외) 예방 및 공공보건서비스(직장의료 제외)
07.4.0 공공 보건서비스(S)	—
07.5 보건 R&D	HC.R.3 보건 R&D
07.5.0 보건 R&D(CS)	—
07.6 기타 미분류 보건	HC.7.1 보건행정 및 건강보험
07.6.0 기타 미분류 보건(CS)	—

자료: Eurostat(2011), "Manual on sources and methods for the compilation of COFOG Statistics," pp.62~63.

일례로 야전병원의 경우 COFOG는 국방 분야로 분류되지만, SHA에서는 보건 통계로 포함된다. 즉, COFOG의 공공보건서비스 부문은 SHA의 예방 및 공공보건서비스(HC.6)와 보건행정 및 건강보험(HC.7)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3) 교육통계

유네스코통계(UOE)와 COFOG는 공통적으로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97)를 기초로 분류하고 있다. UOE에서는 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기관은 정부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정부부문을 단위로 통계를 작성하는 COFOG와 차이가 있다. 특히, COFOG는 등급외 교육(7095)부문에 비정규교육이 포함되지만 UOE는 정규교육만 포함된다.

이 두 통계는 공통적으로 예산자료보다는 결산자료에 근거하여 지표가 작성된다. 다만 UOE는 정부의 학자금 융자 지출도 포함된다. 그러나 COFOG는 융자의 경우 금융자산과 부채의 거래로 작성에서 제외된다.

UOE는 현금주의 회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실무적으로 발생주의 회계 및 혼합 회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COFOG와 UOE의 교육 분야의 세부분류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며, R&D 지출의 경우, UOE에서는 고등교육기관(tertiary educational institutions)의 R&D가 포함되지만, COFOG에서는 각 기관의 기능에 따른 분류항목으로 처리된다.

4) 활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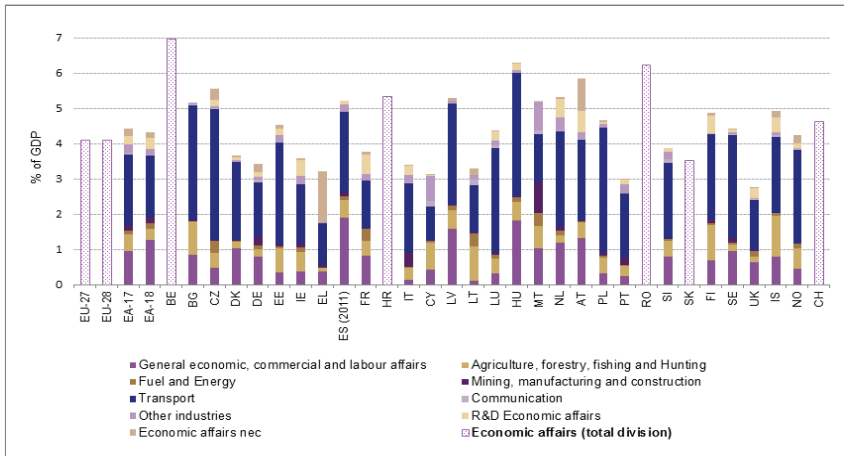
EU에서는 매년 특정 기능에 대한 지출 규모를 EU 전체 및 회원국별 GDP 대비 비율로 발표하고 있다. 2012년도 EU 27개국의 경제 분야 지출 비율은 전체 정부지출의 8.4%로 나타났다(2011년도 8.3%). 분야별로 비교하면, 사회보호 분야가 전체 정부지출액의 40.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보건 분야 14.9%, 일반공공행정 분야 13.5%, 교육 분야 10.7% 등의 순

으로 경제 분야보다 높게 나타났다(EU, 6/2014).

또한, 2012년도 기준 EU 27개국 일반정부 총지출 평균 비율은 GDP 대비 49.3%이며, 경제 분야 지출 비율은 GDP 대비 4.1%로써, 2011년도(GDP 대비 4.0%)와 비교할 때 안정적인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벨기에, 헝가리, 루마니아 등은 경제 분야의 지출 비율이 GDP 대비 6% 이상으로 경제 분야의 지출 비중이 높은 편으로 나타난 반면, 영국, 포르투갈, 사이프러스,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스위스²⁴⁾ 등은 GDP 대비 3% 안팎의 비율을 보였다(EU, 6/2014).

[그림 II-2] 2012년도 경제분야에 대한 EU-27 일반정부 지출의 GDP 대비 비율



자료: Eurostat, "Statistics in Focus," 6/2014, ISSN: 2314-96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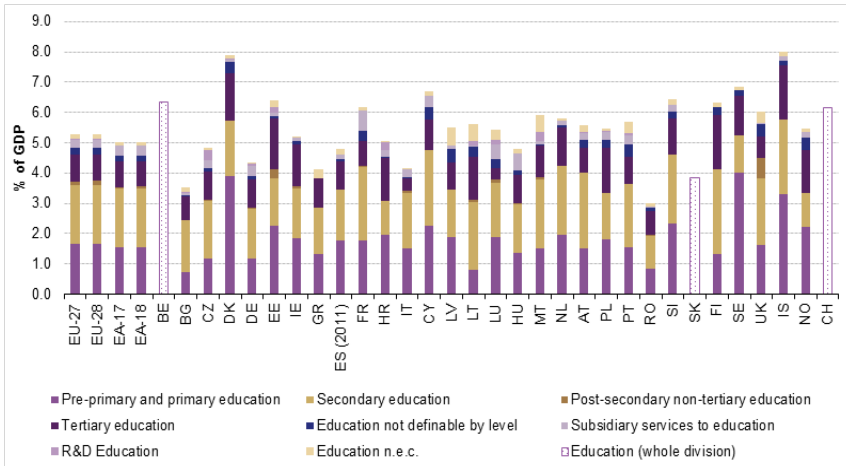
EU의 경우 COFOG의 부문별 통계는 4개 국가 및 EU 전체에 대한 통계를 공표하는 수준이다. 운송부문이 경제분야의 부문별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분야의 절반 이상 비율이 운송부문으로 지출되었다. 부문별 통계를 작성하는 국가 중 불가리아, 폴란드, 체코 등은 운송부문이 전체 정부지출의 8~9%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24) 스위스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eurostat에서는 스위스 국가 통계 및 스위스를 포함한 EU-28 평균치 등을 제시하고 있음

사이프러스, 그리스, 프랑스, 영국 등은 2~3%의 작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각 국가가 공공운송체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정부에 포함될 수도 있고 비금융기업에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벨기에와 그리스의 경우, 운송부문이 경제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이 아니었는데, 이는 금융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이전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그림 II-3] 2012년도 교육분야에 대한 EU-27 일반정부 지출의 GDP 대비 비율



자료: Eurostat "Statistics in Focus," 5/2014, ISSN: 2314-9647.

국가별 GDP 대비 교육분야 지출비율은 덴마크(GDP의 7.9%), 스웨덴(GDP의 6.8%), 사이프러스(GDP의 6.7%) 등이 높은 반면, 루마니아(GDP의 3.0%), 불가리아(GDP의 3.5%), 슬로바키아(GDP의 3.9%) 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EU, 5/2014).

총정부지출 중 교육분야가 가장 큰 비중 차지하는 국가는 에스토니아(총지출의 16.2%), 리투아니아(총지출의 15.5%), 라트비아(총지출의 15.0%) 등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교육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은 GDP 대비 총정부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이다 한편, 총정부지출 대비 교육분야 지출 비중이 가장 적은 국가는 그리스(총지출의 7.7%), 이탈리아와 루마니아(두 국가 모두 총지출의 8.2%)인 것으로 나타났다(EU, 5/2014).

EU 27개국의 교육분야 지출 중 가장 큰 비중 차지하는 부문은 유아 및 초등교육부문과 중등교육부문이었다. 이 두 부문에 대한 지출 규모는 교육 분야 전체 지출 대비 68.4%이며, 그 다음은 고등교육부문(교육분야 지출의 16.5%) 순임을 알 수 있다.

고등교육부문 지출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핀란드(교육분야 지출의 28.4%), 크로아티아(교육분야 지출의 28.2%), 폴란드(27.6%), 에스토니아와 루마니아(두 국가 모두 교육분야 지출의 26.3%) 등으로 나타났다(EU, 5/2014).

비용의 경제적 특성에 따른 분류로 볼 때, 여러 항목 중 피용자 보상(compensation of employees)이 교육분야 지출의 60.8%에 해당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임이 확인되었다. 다만 이러한 교육분야의 지출 통계를 해당 국가의 교육에 대한 총지출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가계나 가계지원 비영리기관이 교육에 대해 지출하는 규모가 교육분야 전체에 대한 지출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EU 통계청은 주요 분야별로 회원국별로 비교 가능한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부문별 통계에 대한 분석보고서도 발간하고 있다. 또한, 통계자료의 원천과 이용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동일한 기준의 제공을 위해 분류가 모호한 경우에는 특정사례에 대한 기준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다른 국가와 달리 EU에서 기능별 분류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가 간 비교 대상인 EU 회원국들이 유사한 역사적 배경과 사회경제적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의미 있는 비교·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환류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둘째, EU가 회원국들에게 재정준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규모에 대한 상한을 제시하는 재정준칙을 설정하고, 그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상황에서 각 회원국들은 상대적으로 기능별 실링 및 지출 규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사업평가(evaluation) 등 성과평가와 함께 재정운영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다. 호주

호주는 2010년 COFOG를 기반으로 하여 14개 분야로 나뉜 정부 목적별 분류(Government Purpose Classification; GPC)를 수정하여 발표하였다. GPC는 일반정부의 재화 및 서비스의 판매, 비용, 비금융자산의 순취득 등 거래를 목적별로 분류하는 데 활용된다.

GPC는 COFOG의 10개 분야와 비교해보면 14개 분야로 세분되어 있지만 환경보호 분야가 제외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경제활동 분야가 6개 분야로 재분류된 것 이외에는 유사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COFOG 10개 분야 중 경제활동(704) 분야는 GPC에서는 세부적으로 나뉘지는데, 연료 및 에너지(09),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10), 광업·제조업·건설업(11), 운송 및 통신(12), 기타 경제활동(13), 기타 목적(14)의 6개 분야로 분류된다.²⁵⁾²⁶⁾

그러나 호주는 최근 IMF의 ‘GFSM 2014’ 발간과 더불어 이를 반영한 GFS 매뉴얼 3판(호주판)을 발간할 예정이며, SNA 2008을 기반으로 한 GPC를 수정한 COFOG-A를 제시하고 있다.

COFOG-A는 SNA 2008과 GFS 2014 COFOG의 10개 분야를 통합하여 경제활동 중 운송 부문만을 따로 떼어 별도 분야로 편성한 총 11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 항목의 처리 관련 사례, 데이터의 산출 및 작성 방법 등을 별도의 장으로 제시하고 있다(정성호, 2015a).²⁷⁾

25)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12), “Amendments to Australian System o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26) 정성호 (2015a).

27)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15), “Australian System o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Concepts, Sources and Methods.”

〈표 II-8〉 호주 GPC 및 COFOG-A 체계 변화

COFOG(SNA, GFS)	GPC	COFOG-A
01. 일반공공행정	01. 일반공공행정	01. 일반공공행정
02. 국방	02. 국방	02. 국방
03. 공공질서 및 안전	03. 공공질서 및 안전	03. 공공질서 및 안전
04. 경제활동		04. 경제활동
041. 일반 경제, 상업, 노동	13. 기타 경제 활동	
042.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	10.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	
043. 연료 및 에너지	09. 연료 및 에너지	
044. 광업, 제조, 건설	11. 광업, 제조, 건설	
045. 운송	12. 운송 및 통신	
046. 통신		
047. 기타 산업	13. 기타 경제 활동	
048. 경제 R&D		
049. 기타 미분류 경제		
05. 환경보호		05. 환경보호
06.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	07.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	06.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
07. 보건	05. 보건	07. 보건
08. 휴양, 문화, 종교	08. 휴양, 문화	08. 휴양, 문화, 종교
09. 교육	04. 교육	09. 교육
10. 사회보호	06. 사회보장 및 복지	10. 사회보호
	14. 기타 목적1	11. 운송

주: 기타 목적 분야는 공공채무거래, 일반 목적 정부 간 거래, 자연재해 구조 부문 등으로 구성됨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15), Australian System o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Concepts, Sources and Methods, pp.465~529; 정성호(2015a) p.39에서 재인용

라. 미국

미국은 2000년도 국민계정(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NIPA's)체계에서 정부 기능별 분류를 기존 21개 기능에서 9개 기능으로 체계를 변경하였고 그 하위에 25개의 기능을 배치하였다. 그 9개 기능은 COFOG 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하였는데, 환경보호 분야를 제외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환경보호 분야는 이전 체계에서도 현 체계에서도 독립된 분류로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폐수 관리와 폐기물 관리는 주거 및 지역사회시

설 기능에 포함되고 있다.

새롭게 변경된 체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교육 분야가 커지면서 새로운 분야로 설정되었고, COFOG 국제통계와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였고, 먼저 지출을 유형별로 작성 후 정부 단계별로 작성하는 것으로 변화하였으며, GDP의 구성요소인 정부소비지출과 총투자 및 연방정부, 주 정부 등 정부단계별 분기 측정치 등이 산출된다.

또한, 새로운 국민계정(NIPA) 체계는 관리예산처(OMB)의 예산체계와도 연관이 있는데, OMB의 예산체계는 20개의 예산기능으로 구분된다. 이 중 17개는 주 정부와 관련된 광범위한 기능에 관한 것이며, 나머지 3개는 총당금, 비배분 차감 수령액(undistributed offsetting receipts), 순이자로서 연방정부 예산과 관련된다.

〈표 II-9〉 미국 NIPA 및 OMB 분류 체계

COFOG(SNA, GFS)	NIPA	OMB
01. 일반공공행정	01. 일반공공행정	150. 국외업무 800. 일반정부 900. 순이자 920. 총당금
02. 국방	02. 국방	050. 국방
03. 공공질서 및 안전	03. 공공질서 및 안전	750. 사법행정
04. 경제활동	04. 경제활동	250. 일반과학, 우주 및 기술 270. 에너지 300. 자연자원 및 환경 350. 농업 370. 상업 및 주거지원 400. 운송
05. 환경보호		
06.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	05. 주거 및 지역사회서비스	450. 지역사회 및 지역 개발
07. 보건	06. 보건	550. 보건 570. 의약품 700. 보훈급여 및 서비스
08. 휴양, 문화, 종교	07. 휴양, 문화	
09. 교육	08. 교육	500. 교육, 훈련, 고용 및 사회 서비스

〈표 II-9〉의 계속

COFOG(SNA, GFS)	NIPA	OMB
10. 사회보호	09. 소득보장	600. 소득보장 650. 사회보장 950. 비배분차감수령액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2000), Government Spending by Function: A New Presentation, the June 2000 SURVEY OF CURRENT BUSINESS,
https://bea.gov/scb/account_articles/national/0600gf/maintext.htm(검색일자: 2015.10.28.);
 정성호(2015a) p.40에서 재인용.

함축하면, COFOG, NIPA, 그리고 OMB 예산기능 체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COFOG의 환경보호 분야는 NIPA 체계에서는 주거·지역사회서비스 분야와 경제활동 분야에 주로 속해 있으며, OMB 예산기능 체계에서는 대체적으로 환경 분야, 자연자원 분야, 지역사회 및 지역 개발 분야에 분포하고 있다.

마. 캐나다²⁸⁾

캐나다는 IMF의 COFOG를 기반으로 하여 CCOFOG(Canadian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CCOFOG) 2014를 작성하였다. 최근에는 수정 현금주의 회계에서 발생주의 회계로 전환하였으며, Canadia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프로그램의 발표를 통해 GFS 통계 작성을 공고히 하였다.

CGFS는 일반정부부문 전체의 기능별 비용을 포괄하고, 2015년 초부터 금융자산 및 부채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게 설계되었다. 또한 향후 이 지표는 국민계정, 국제투자대조표, 투입산출표, 수지보고서 등의 거시통계와 연계하여 국민계정체계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CCOFOG와 COFOG 분류 체계를 비교하면, 동일하게 10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FY 2008~2012 CCOFOG 통계는 고정자본소비·비금융자산의 취득을 제외한 비용에 국한하여 작성하였다.

캐나다는 CCOFOG 자료를 활용하여 자연재해 시 정부의 역할 분석과 시

28) Statistics Canada(2014), "Canadian Classification of Functions of Government," 2008 to 2012; "Canadian Classification of Functions of Government(COFOG) 2014.

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안정성을 분석하고 있다.

첫째, 자연재해 동안 정부의 역할을 분석하고 있는데, 2011년도 매니토바 주에 대규모 홍수로 농지, 도로, 교량, 가옥 등 큰 피해가 발생되자, 매니토바 주 정부는 피해 복구를 위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비용을 지원하였다.

또한, 농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경제활동 분야의 비용도 약 30% 증가하였다. 이러한 비용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 두 분야의 비용은 다음 연도에 정상 규모로 회귀하였다.

둘째, 시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안정성을 분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퀘벡 주(state)의 비용은 부문 수준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보건, 사회보호, 교육 분야의 비율이 평균 비용 비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다. 이는 서비스 전달 모형의 의미 있는 변화로 인해 CCOFOG의 부문 수준에서 비용 비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EU, 호주,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의 COFOG 활용 사례를 종합하여 비교 하면 <표 II-10>과 같으며, 이러한 해외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COFOG 체계를 도입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 V장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한다.

〈표 II-10〉 국가별 COFOG 활용 비교

구분	COFOG 활용 사례
EU	- EU 회원국의 특정 기능에 대한 연도별 GDP 대비 지출 비율 및 EU 평균비율 등 발표 - 통계데이터의 원천과 데이터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 - 분류가 모호한 사례에 대한 기준을 추가적으로 제시
호주	- SNA 2008을 기반으로 한, GPC를 수정한 COFOG-A 제시 - COFOG-A는 SNA 2008 및 GFS COFOG의 경제활동 (704) 중 운송 부문을 별도 분야로 설정(총 11개 분야로 구성).
미국	- 국민계정(NIPA's)의 21개 정부 기능별 분류 체계에서 9개 및 25개의 하위 기능 체계로 변경
캐나다	-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분석 - 시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안정성 분석 등

자료: 저자 작성

Ⅲ.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COFOG 산출

COFOG 산출을 위해서는 집계되는 통계의 포괄범위부터 점검해야 한다. COFOG 지표의 집계단위는 일반정부를 대상으로 한다. 이때 일반정부는 중앙정부(중앙회계 및 기금과 비영리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회계 및 기금과 비영리기관), 지방교육재정 셋으로 구성된다.²⁹⁾ 다만 지방교육재정은 교육으로 분류되어 현재는 교육부에서 작성 중에 있다. 그러나 2015회계연도부터 ‘교육’ 기능은 「지방재정법」 제59조(지역통합재정통계)에 근거하여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될 예정이다.³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COFOG 산출과정을 [그림 Ⅲ-1]과 [그림 Ⅲ-2]에 표시하였는데, 중앙정부의 예산체계는 소관부처, 분야, 부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체계는 분야, 부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자체 내에 주무부서가 존재하므로 소관부처로 나눌 수 없다.

이제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COFOG 산출과정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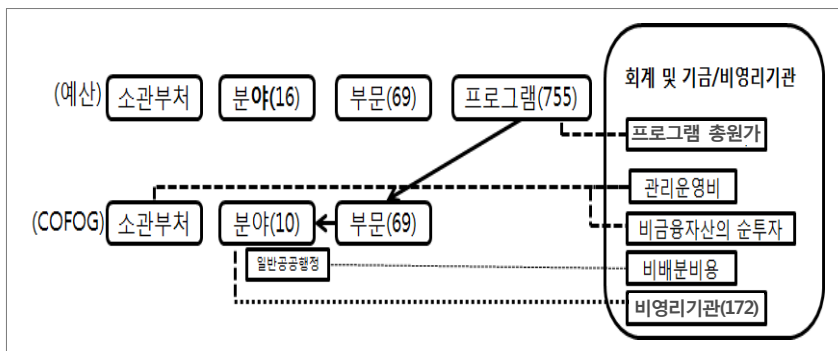
29) IMF, “GFSM 2014,” 2장 2.58문단.

30) 지방재정법 제59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하 “지역통합재정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교육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및 기금 2.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의 방법, 기준,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중앙정부는 세분화된 755개 프로그램 단위를 기준으로 프로그램 총원가를 집계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관리운영비와 비금융자산 순투자는 소관부처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고, 비배분비용은 ‘일반공공행정’으로 분류한다. 또한 비영리기관은 기관의 주요기능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분화된 프로그램 단위로 통계를 집계하여 그것을 69개 부분으로 통합하고 또 다시 10개 분야로 통합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은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통합할 때의 기준은 GFS 매뉴얼에 근거하지만, 현재 명시적 집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집계하는 실무자의 자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관리운영비와 비금융자산의 순투자는 소관부처로 집계되는데 소관부처와 1:1의 분야로 매칭되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의 경우는 모두 보건(707)분야로 매칭된다.

이처럼 중앙정부는 세분화된 통계집계시스템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대분류 및 중분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동화된 시스템과 규정화된 집계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림 III-1] 중앙정부의 COFOG 산출 과정(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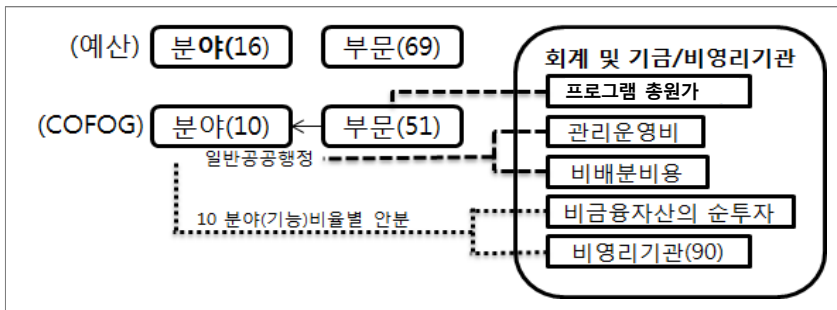


자료: 정성호 (2015a), p.42에서 재인용

지방자치단체는 부문별로 COFOG 지표를 작성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51개 부문에서 집계된 자료에 기초하여 행정자치부가 총괄하여 작성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COFOG 지표를 수작업으로 집계하는 것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이호조(e-Hojo) 프로그램에서 COFOG 지표를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다. 세부적인 절차를 설명하면 ‘프로그램 총원가’는 부문으로 집계되고,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은 ‘일반공공행정’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비금융자산의 순투자’와 90개 ‘비영리기관’은 10개 기능별 지출 비율에 근거하여 안분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COFOG 지표를 자동으로 산출하기는 하지만, 산출과정의 명확한 지침과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서 잘못된 맵핑을 포함하여 과다·과소 집계되는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관리운영비’는 ‘일반공공행정’으로만 집계되고 있어 과다하게 추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III-2] 지방자치단체의 COFOG 산출 과정(현재)



자료: 정성호 (2015a), p.42에서 재인용

1. 중앙정부의 COFOG 산출

중앙정부 부문은 국가결산보고서상 재정운영표 결산수치를 기초로 하여 COFOG 통계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하여 작성하며, 작성된 통계는 국가통합 재정운영표상 프로그램 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의 비용항목에 대해 기능별로 먼저 분류한 후 비금융자산 순투자를 배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즉, COFOG의 총지출은 비용과 비금융자산 순투자를 합산해서 산출한다.

비용의 경우는 기능별로 분류된 프로그램 총원가·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을 각각 합하고, 비금융자산 순투자는 비금융자산 취득에서 처분과 고정자본소비를 차감하여 계산하게 된다.

$$\begin{aligned} \text{COFOG 총지출} &= \text{비용(프로그램 총원가+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 \\ &+ \text{비금융자산 순투자(비금융자산 취득-처분-고정자본소비)} \end{aligned}$$

다음의 <표 Ⅲ-1>은 2013회계연도 국가통합 재정운영표 총괄표이며, 이중 음영으로 표시된 비용항목을 먼저 기능별로 분류해야 한다.

<표 Ⅲ-1> 2013회계연도 국가통합 재정운영표 총괄표

(단위: 원)

I. 프로그램 총원가	331,488,265,117,195
II. 프로그램 수익	67,670,009,986,033
III. 관리운영비	21,396,110,743,319
IV. 비배분비용	29,466,638,464,441
V. 비배분수익	39,377,691,939,584
VI. 내부거래원가	9,374,974,442,590
VII. 내부거래수익	9,374,974,442,590
VIII. 재정운영 순원가	275,303,312,399,338
IX. 비교환수익 등	246,468,783,407,366
X. 재정운영결과	28,834,528,991,972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중 재정운영표

<표 Ⅲ-1>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3회계연도 기준 프로그램 총원가는 331조 4,882억원이고, 관리운영비는 21조 3,961억원이며, 비배분비용은 29조 4,666억원에 달한다.

비용항목 중 프로그램 총 원가는 <표 Ⅲ-2>처럼 해당 분야 또는 프로그램별로 쉽게 분류된다.

〈표 III-2〉 프로그램 총원가의 해당 분야별 배분 예시

(단위: 원, %)

분 야	프로그램 총원가	비율
일반공공행정	61,865,559,217,647	18.7
공공질서 및 안전	3,616,675,351,856	1.1
외교 · 통일	2,260,205,280,521	0.7
국방	26,162,657,528,519	7.9
사회복지	116,205,019,136,327	35.1
농림수산	13,166,165,926,388	4.0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14,225,108,058,989	4.3
환경	5,399,840,014,770	1.6
과학기술	5,592,478,169,861	1.7
보건	7,892,546,451,027	2.4
문화 및 관광	4,018,273,911,415	1.2
국토 및 지역개발	2,959,218,169,524	0.9
교통 및 물류	13,260,865,854,441	4.0
교육	48,030,854,222,542	14.5
통신	6,832,797,823,368	2.1
합 계	331,488,265,117,195	100.0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의 경우도 각 부처별 결산 수치에서 식별되므로 부처의 기능에 따라 해당 분야에 배분할 수 있다. 이러한 예시는 〈표 III-3〉에서 설명된다.

〈표 III-3〉 관리운영비 부처별 식별 예시

(단위: 원)

부 처	관리운영비
국회	336,656,746,652
대법원	1,448,689,065,85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23,648,449,570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61,109,031,837
외교통상부	39,463,819,654
법무부	2,068,030,689,575
국방부	687,702,959,319

〈표 III-3〉의 계속

부 처	관리운영비
고용노동부	815,570,521,223
통일부	54,415,720,438
법제처	23,598,110,079
국가보훈처	99,594,064,485
산림청	131,125,022,276
국세청	1,324,405,325,820
관세청	351,059,436,395
병무청	163,814,537,012
농촌진흥청	132,275,882,634
중소기업청	129,757,656,554
특허청	10,539,360,598
조달청	32,449,369,137
환경부	302,162,225,372
통계청	53,708,761,246
기상청	118,291,015,446
경찰청	7,748,520,069,068
공정거래위원회	49,240,635,071
해양경찰청	665,378,955,542
식품의약품안전청	35,347,015,147
문화재청	76,804,605,136
소방방재청	63,284,517,255
방위사업청	200,919,010,9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5,433,036,381
기획재정부	171,335,107,739
교육과학기술부	100,167,831,892
행정안전부	80,852,768,300
문화체육관광부	263,018,147,340
농림수산식품부	90,704,816,298
지식경제부	162,382,559,288
보건복지부	368,409,841,206
여성가족부	24,635,459,542
국토해양부	146,260,107,041
방송통신위원회	58,045,945,197

〈표 Ⅲ-3〉의 계속

부 처	관리운영비
금융위원회	186,970,442,135
국가과학기술위원회	3,428,220,281
원자력안전위원회	11,155,341,547
미래창조과학부	501,811,850,871
교육부	447,589,648,449
외교부	127,900,798,659
안전행정부	259,397,745,390
농림축산식품부	189,871,446,631
산업통상자원부	138,824,423,199
국토교통부	226,233,511,841
해양수산부	245,690,716,605
식품의약품안전처	115,342,478,187
새만금개발청	3,085,919,990
합 계	21,396,110,743,319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이와 같이 중앙정부는 COFOG를 비용에 대해 분야별로 집계할 경우 기존 부처별 결산자료를 활용하여 쉽게 작성될 수 있다. 다만, 부처가 다수의 분야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배분은 다소 복잡해 질 수 있다.

‘비금융자산 순투자’의 경우에도 부처별 결산자료를 토대로 해당 분야별로 집계할 수 있다. 이렇게 배분된 두 가지 통계를 합산하여 COFOG 통계가 산출된다.

COFOG 지표의 산출방법은 〈표 Ⅲ-4〉에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반 공공행정 152개, 국방 33개, 공공질서 및 안전 51개, 경제활동 256개, 환경 보호 21개, 주거 및 지역사회개발 13개, 보건 40개, 휴양·문화·종교58개, 교육32개, 사회보호 99개 등 총 755개 프로그램에서 COFOG 지표를 집계한다(정성호, 2015a). 다만, d-Brain 프로그램에서는 COFOG 지표를 자동으로 집계하지 않고 755개 프로그램을 기초로 하여 수작업으로 지표를 집계한다.

〈표 III-4〉 중앙정부의 COFOG 산출(2013회계연도 기준)

(단위: 개)

GFS 코드 및 기능	프로그램 수
701 일반공공행정(GENERAL PUBLIC SERVICES)	152
702 국방(DEFENSE)	33
703 공공질서 및 안전(PUBLIC ORDER AND SAFETY)	51
704 경제활동(ECONOMIC AFFAIRS)	256
705 환경보호(ENVIRONMENTAL PROTECTION)	21
706 주거 및 지역사회개발(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13
707 보건(HEALTH)	40
708 휴양, 문화, 종교(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58
709 교육(EDUCATION)	32
710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99
합 계	755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정성호(2015a), p.43에서 재인용.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COFOG 지표 통계에 관한 명시적 가이드라인은 없다. 다만 일반정부 단위로 집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정성호, 2015a). 따라서 정부가 ‘부문’ 또는 ‘프로그램’ 단위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COFOG를 산출할 것인가를 점검하기 위해 전체 정부부처의 담당 기능을 주요 업무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담당기능을 프로그램명을 바탕으로 하여 COFOG 기능을 분류해 본다(부록 1) 참고).

〈표 III-5〉 복수의 기능에 걸친 부문(공적연금 제외)

부처명	분야	부문	프로그램	COFOG 분류
공정 거래 위원회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중소기업경쟁여건개선	704 경제활동
			소비자후생증진	
			공정거래행정지원	
			경쟁촉진	701 일반공공행정
			회계기금 간 거래	
			회계기금 간 거래(예수원금상환)	

〈표 III-5〉의 계속

부처명	분야	부문	프로그램	COFOG 분류
관세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수출입통관	704 경제활동
			관세심사	701 일반공공행정
			정보화 및 국제협력	
			관세행정지원	703 공공질서 및 안전
			밀수감시단속	706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
교육 과학 기술부	과학기술	기술개발	지역균형발전	701 일반공공행정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기초연구진흥	
			거대과학기술개발	
			여유자금운용	
국방부	국방	전력유지	원자력안전	704 경제활동
			원자력진흥	
			국방정보화	
			군수지원 및 협력	
			군인사 및 교육훈련	
국방부	국방	전력유지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702 국방
			예비전력관리	
			국방홍보원운영	
			군책임운영기관	
			군사시설이전사업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국방행정지원	
			회계기금 간 거래(전출금)	
			회계기금 간 거래(공적자금예탁)	
			회계기금 간 거래(예수이자상환)	
			여유자금운용	707 보건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응자)	
기상청	과학기술	과학기술 일반	기상예보	704 경제활동
			기상관측	
			기후변화과학	
			기상산업정보	
			기상연구	
			기상행정지원	701 일반공공행정
			책임행정기관운영	

〈표 III-5〉의 계속

부처명	분야	부문	프로그램	COFOG 분류
문화 체육 관광부	문화 및 관광	관광	관광진흥기반확충	704 경제활동
			관광산업육성	
			외래관광객유치	
			관광산업기금용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운영	
			기금 간 거래	
			관광레저도시육성	706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
법무부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 및 검찰	법무활동	703 공공질서 및 안전
			인권활동	
			출입국관리	
			검찰활동	
			교정활동	
			범죄예방활동	
			법무시설조성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기금운영비	
			기금전출금(예수원금상환)	
			기금전출금(예수이자상환)	
			여유자금운용	
			법무교육훈련	709 교육
			범죄피해자보호기금전출금	710 사회보호
산림청	농림수산	임업·산촌	산림과학기술개발(국립산림과학원)	704 경제활동
			산림자원이용	
			산림자원보호	
			산림행정지원	
			회계 간 거래	
			회계기금 간 거래	
			계정 간 거래	
			기후변화대응 및 산림자원육성	705 환경보호
			산림휴양기반조성	
산업 통상 자원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에너지 및 자원개발	국내외원전의 안정적 건설·운영	704 경제활동
			방사성폐기물관리행정지원	705 환경보호

〈표 Ⅲ-5〉의 계속

부처명	분야	부문	프로그램	COFOG 분류
여성가족부	사회복지	노인·청소년	청소년육성기금기금운영비	709 교육
			청소년정책 및 역량강화	710 사회보호
			청소년사회안전망강화	
			기금 간 거래	
			여유자금운용	
외교통상부	외교·통일	외교·통상	정상외교	701 일반공공행정
			다자관계협력	
			국제기구분담금	
			지역외교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재외동포보호 및 지원	
			여권업무선진화	
			국제개발협력(한국국제협력단출연)	
			외교정책연구및교육	
			재외공관운영	
			외교통상행정지원	
			여유자금운용	
			차입금원금상환	
			경제통상외교	704 경제활동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13회계연도 성과보고서(각 부처)」

〈표 Ⅲ-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공적연금을 제외한 복수의 기능이 존재하는 부문은 11개 부처로 집계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기상청,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이고, 국방부와 법무부, 여성가족부를 제외하고 경제활동과 일반공공행정분야에 주로 걸쳐 있다.

〈표 Ⅲ-6〉은 공적연금과 관련하여 복수의 기능이 존재하는 부문을 설명한 것으로 2개 부처가 해당되며,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이다. 경찰부문은 공공질서 및 안전 기능과 사회보호분야에 걸쳐 있고, 문화예술은 교육과 사회보호분야에 걸쳐 있다.

〈표 Ⅲ-6〉 복수의 기능에 걸친 부문(공적연금 프로그램)

부처명	분야	부문	프로그램	COFOG 분류
경찰청	공공질서 및 안전	경찰	범죄예방 및 사회적약자보호	703 공공질서 및 안전
			회계기금 간 거래 (공무원연금부담금)	710 사회보호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한국예술종합학교운영	709 교육
			국립국악중고운영	
			국립전통예술중고운영	
			회계기금 간 거래 (공무원연금부담금)	710 사회보호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13회계연도 성과보고서(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2. 중앙정부 관리운영비 및 비배분비용의 COFOG 산출

중앙정부의 관리운영비는 소관부처로 집계하고 있으며, 비배분비용은 일반공공행정으로 집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리운영비가 일반공공행정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경우 부처별로 집계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지표의 정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비배분비용은 일반공공행정으로 집계되고 있어 다소 정합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은 부처별 또는 부처기능별 비율별로 안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 〈표 Ⅲ-7〉은 중앙부처의 프로그램 총원가를 집계한 자료이며, 기능이 중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7〉 중앙정부 부처별 COFOG 기능 및 FY2013 프로그램 총원가

(단위: 원)

부처명	701 일반공행정	702 국방	703 공공질서 및 안전	704 경제활동	705 환경보호	706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	707 보건	708 휴양문화종교	709 교육	710 사회보호	총계
감사원	109,652,342,345										109,652,342,345
경찰청			1,141,870,182,618				58,432,458,306				1,200,302,640,924
고용부				8,504,282,295,156						4,440,862,728,217	12,945,145,023,373
공정위	5,788,720,386			37,931,197,287							43,719,917,673
관세청	46,656,751,873										46,656,751,873
교과부	771,219,373,204		39,383,815,332	15,415,662,041				11,388,872,683	15,026,076,368,444		15,842,678,614,331
교육부	388,777,807,247			33,984,000,000					32,895,177,649,727	2,147,787,162,471	35,411,742,619,445
국과위	10,139,000,000										10,139,000,000
보훈처										4,100,433,362,304	4,100,433,362,304
인권위	24,531,548,479										24,531,548,479
국정원	456,629,333,280										456,629,333,280
국조실	474,726,863,628										474,726,863,628
권익위	68,885,961,710									83,927,082	152,812,943,792
국방부		23,348,498,134,738					488,214,549,343				511,566,647,881
국세청	168,884,472,799									8,238,136,024,461	32,076,618,708,542
국토부			265,349,511,220	10,488,341,417,778	100,000,000	562,991,571,920				489,138,672,293	1,618,171,173,211
국해부	45,638,000,000		381,179,633,264	2,988,829,870,996	7,856,502,946	252,842,166,572				25,264,998,987	3,358,549,452,355
국회	197,674,102,750										197,674,102,750

〈표 III-7〉의 계속

부처명	701 일반공공행정	702 국방	703 공공질서 및 안전	704 경제활동	705 환경보호	706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	707 보건	708 휴양문화종교	709 교육	710 사회보호	총계
금융위	1,313,571,892,737			3,188,695,573,888						255,284,473,358	4,757,551,939,963
기상청	11,051,514,330			163,582,864,190							174,634,378,520
기재부	19,587,210,745,621			334,059,222,768						211,417,214,960	20,132,687,183,349
농림부				1,628,804,579,524							1,628,804,579,524
농축부				8,311,934,732,006							8,311,934,732,006
농진청				654,817,990,573							654,817,990,573
대법원			72,283,268,362								72,283,268,362
경호실	61,093,914,017										61,093,914,017
비서실	60,512,860,684										60,512,860,684
대통령실	39,073,390,090										39,073,390,090
문화재청								483,740,591,262			483,740,591,262
문화부	16,397,469,654			739,865,146,215				2,347,432,448,346	32,593,652,243	52,783,634,401	3,219,988,452,623
미래부	2,906,083,476,808			5,965,368,701,791		30,916,101,764		623,547,398,006	109,600,204,371		9,604,599,740,976
민주평통	24,527,150,346										24,527,150,346
방통위				36,680,539,775				21,282,722,728			57,943,262,503
방사청		2,304,886,369,155									2,304,886,369,155
법무부			962,575,906,540						3,782,450,480		966,358,357,020
법제처	5,250,851,767										5,250,851,767

〈표 III-7〉의 계속

부처명	701 일반공행정	702 국방	703 공공질서 및 안전	704 경제활동	705 환경보호	706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	707 보건	708 휴양문화종교	709 교육	710 사회보호	총계
법무청		21,088,475,283									21,088,475,283
복지부				3,446,000,000			8,211,141,785,213			51,112,823,666,876	59,327,411,482,089
산림청				1,428,998,587,154	27,150,447,209						1,456,149,034,363
산업부	182,601,250			7,404,818,294,638	779,743,112						7,405,780,638,900
방재청			891,919,297,726								891,919,297,726
식약처				12,854,183,924			126,017,307,530				138,871,491,454
식약청							15,677,510,944				15,677,510,944
인행부	29,582,316,415,573		93,732,414,589	193,236,037,350		527,176,243,611			7,608,267,454	30,811,775,539,189	61,215,844,917,776
여가부	64,272,528,844									397,060,937,200	461,333,466,044
외교부	1,329,972,048,746										1,329,972,048,746
외통부	430,434,477,324			1,426,669,018							431,861,136,342
원자력위	47,471,000,000			31,246,000,000							78,717,000,000
조달청	80,867,749,438										80,867,749,438
중기청				2,934,728,749,715							2,934,728,749,715
선관위	67,518,179,577										67,518,179,577
지경부	19,500,000,000										2,323,525,679,630
통계청	192,576,183,970			2,304,025,679,630							192,576,183,970
통일부	78,942,088,222									118,919,867,192	197,861,955,414

〈표 III-7〉의 계속

부처명	701 일반공행정	702 국방	703 공공질서 및 안전	704 경제활동	705 환경보호	706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	707 보건	708 휴양문화종교	709 교육	710 사회보호	총계
특임직	1,733,966,605										1,733,966,605
특허청				355,030,084,804							355,030,084,804
해경청			352,685,889,943		5,411,471,878						358,097,371,821
해수부	108,337,000,000		3,000,000,000	2,026,172,067,626	144,131,289,588	11,273,551,697					2,292,913,918,880
행안부	9,111,142,301,369		23,184,546,162	34,445,180,220					1,072,059,234	12,316,952,360	9,182,161,039,335
행복정						101,228,570,804					101,228,570,804
한재			37,142,120,900								37,142,120,900
환경부				688,153,829,865	4,554,196,910,513						5,242,340,740,378
총합계	67,889,244,084,673	25,674,442,979,176	3,921,244,916,676	60,491,175,147,801	4,739,616,375,226	1,486,426,206,388	8,899,483,611,336	3,493,381,993,025	48,075,910,651,963	106,817,339,150,951	331,488,265,117,195

주: 음영은 각 부처의 여러 기능 중 프로그램 총원가 규모에 따른 주(main) 기능 표시.

자료: 대한민국 정부, 「Fy2013 부처별 결산보고서」; 정성호(2015a), p.56~59에서 재인용.

〈표 Ⅲ-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 부처별 프로그램 총원가에 따라 분류된 COFOG 기능 분포를 살펴보면, 한 부처가 여러 기능에 중복된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7〉에서 프로그램 총원가 규모가 가장 큰 기능을 해당 부처의 주(main) 기능이라고 가정하고, 각 부처를 주 기능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표 Ⅲ-8〉와 같이 나타난다.

〈표 Ⅲ-8〉 정부부처 주 기능에 따른 COFOG 분류

COFOG 분류	해당 부처
701 일반공공행정	감사원, 관세청, 국과위, 인권위, 국정원, 국무조정실, 권익위, 국세청, 국회, 기재부, 대통령 경호실,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실, 민주평통, 법제처, 외교부(외통부), 원자력위, 조달청, 선관위, 통계청, 특임장관실, 행정안전부
702 국방	국방부, 방위사업청
703 공공질서 및 안전	경찰청, 대법원,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헌법재판소
704 경제활동	고용부, 공정위, 국토교통부(국토해양부), 금융위, 기상청, 농림부(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산림청, 산업통상부, 중소기업청, 지경부, 특허청, 해양수산부
705 환경보호	환경부
706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	행복청
707 보건	식약처(식약청)
708 휴양, 문화, 종교	문화재청, 문화부
709 교육	교과부(교육부)
710 사회보호	보훈처, 복지부, 안전행정부, 여가부, 통일부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5) 내부자료에 근거하여 저자 작성

특이한 점은 기획재정부의 경우, ‘경제활동’이 주 기능이 아니라 ‘일반공공행정’이 주 기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부처의 공용재산 취득 프로그램에 속하는 공공자금관리료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때에 따라서는 각 부처의 주 기능이 왜곡될 수 있는 개연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표 III-9〉 COFOG 산출(프로그램 단위)

분야	부문	프로그램 코드	프로그램명	GFS코드
일반공공행정	입법 및 선거관리	1000	의정활동지원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입법 및 선거관리	1100	선거의 공정한 관리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입법 및 선거관리	2000	국회사무처운영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입법 및 선거관리	3000	국회도서관운영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입법 및 선거관리	4000	예산정책처운영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입법 및 선거관리	5000	입법조사처운영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입법 및 선거관리	7000	국회행정지원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입법 및 선거관리	7100	선거관리행정지원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국정운영	1500	정부출연연구기관지원(R&D)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국정운영	7000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지방행정 · 재정지원	1100	지방행정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지방행정 · 재정지원	1200	지역발전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지방행정 · 재정지원	1300	지방재정세제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지방행정 · 재정지원	1400	지방행정연수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지방행정 · 재정지원	1500	이북5도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지방행정 · 재정지원	5300	복권기금운영(지자체법정지원)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재정 · 금융	1000	공공자금관리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재정 · 금융	1100	수출입통관	701 일반공공행정 (704 경제활동)
일반공공행정	재정 · 금융	1200	금융서비스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재정 · 금융	1200	관세심사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재정 · 금융	1300	밀수감시단속	701 일반공공행정 (703 공공질서 및 안전)
일반공공행정	재정 · 금융	1300	금융정보분석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재정 · 금융	1400	정보화 및 국제협력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재정 · 금융	3100	지역균형발전	701 일반공공행정 (706 주거 및 지역 사회개발)

〈표 III-9〉의 계속

분야	부문	프로그램 코드	프로그램명	GFS코드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3500	기금운영비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5200	복권기금운영(일반)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7100	금융행정지원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7100	관세행정지원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7100	기획재정 행정지원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8400	회계기금 간 거래(전출금)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8500	회계기금 간 거래(예탁금)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8600	회계기금 간 거래(예수원금상환)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8700	회계기금 간 거래(예수이자상환)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8900	기금 간 거래(전출금)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9000	기금 간 거래(예탁금)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9100	기금 간 거래(예수원금상환)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9200	기금 간 거래(예수이자상환)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9500	계정 간 거래(예수원금상환)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9600	계정 간 거래(예수이자상환)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9700	여유자금운용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9800	차입금원금상환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정부자원관리	1600	인사관리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정부자원관리	1700	중앙공무원교육	701 일반공공행정 (709 교육)
일반공공행정	정부자원관리	1800	조직관리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정부자원관리	1900	국가사회정보화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1000	인권보호 및 향상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1000	정부입법역량강화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1000	대통령실 운영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1100	감사활동 및 행정지원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1100	국가정보지원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1100	국민권익증진	701 일반공공행정

〈표 Ⅲ-9〉의 계속

분야	부문	프로그램 코드	프로그램명	GFS코드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1100	대통령실 국정지원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1200	대통령 및 국가요인 경호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1200	조달사업 운영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2000	정부의전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2100	청사관리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2200	기록물관리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2300	민주화지원 및 과거사정리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7000	법제행정지원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7000	통계행정지원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7000	특임장관실 행정지원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7000	행정안전행정지원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7100	조달행정지원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8200	계정 간 거래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8400	회계기금 간 거래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8600	회계기금 간 거래(예수원금상환)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9700	여유자금운용	701 일반공공행정

주: 일반공공행정(701)만 예시적으로 제시함.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5), 내부자료; 정성호(2015b), p.86~87에서 재인용.

위 〈표 Ⅲ-9〉는 중앙정부의 COFOG 지표 산출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만을 예시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표는 ‘프로그램’ 단위를 기준으로 집계한 기능별 지출자료이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프로그램명 단위의 GFS 기능 분류가 적절한 것인지를 분석해 보자.

세부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현행 분류 체계의 한계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가 ‘프로그램명’에 기초하여 COFOG 분류를 한다면 한계는 없는가? 실무자가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GFS 기능을 수작업으로 분류해야 하는

데, 오류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다음에 제시되는 내용들이 그에 적용되는 사례이다.

첫째, ‘수출입통관’은 경제활동(704)으로 분류할 개연성도 있다. 하지만 ‘일반공공행정’(701)의 ‘금융 및 재정’(70112)으로 분류되어야 한다(정성호, 2015b). 그 이유는 재정부·예산실·국세청·관세청·회계 및 감사, 금융 및 재정활동 등은 해당 부문(70112)으로 분류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밀수감시단속’은 ‘공공질서 및 안전’(703)으로 분류해서는 안 되고 ‘일반공공행정’(701)의 금융 및 재정(70112)으로 분류되어야 한다(정성호, 2015b). 그 이유는 ‘수출입통관’과 동일하게 재정부·예산실·국세청·관세청·회계 및 감사, 금융 및 재정활동 등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셋째, ‘지역균형발전’은 ‘일반공공행정’(701)의 정부 간 일반 이전(70180)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주거 및 지역사회개발’(706)로 분류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일반적 성격(특정 기능으로 할당되지 않는)의 정부 간 일반이전은 해당 부문(70180)으로 분류해야 하기 때문이다(정성호, 2015b).

넷째, ‘중앙공무원교육’은 ‘교육’(709)으로 분류할 개연성이 있는데, ‘일반공공행정’(701)의 일반 인사행정(70131)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는 등급 외 교육(70950)인지 여부도 검토해야 하는데, 등급 외 교육은 어떠한 사전 학습 요건도 요구되지 않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공무원 교육’은 일반적 인사정책, 평가, 직무 등을 포함하는 일반인사행정부문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정성호, 2015b).

3.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의 COFOG 산출

COFOG 집계대상 비영리공공기관은 총 172개로 각 기관의 사업내용 중 주된 기능을 COFOG 기능과 매칭해야 한다. 대부분 비영리 공공기관은 특정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각의 단일 COFOG 기능으로 매칭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비영리공공기관 각각의 기능별 총지출은 해당되는 기능에 집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명동·정동극장은 휴양·문화·종교가 주된 기능이므로 708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3회계연도 기준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의 기능별 분류 자료는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COFOG 산출

지방자치단체는 51개 부문을 COFOG 분야에 매핑하여 지표를 산출하고 있다. 그 산출방법은 <표 Ⅲ-10>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GFS 2001기준에 근거하여 일반공공행정의 입법 및 선거관리, 지원 및 기타 경비 등, 국방의 재난 방재/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의 경찰 등, 경제활동의 농업·농촌, 과학 기술개발 등, 환경보호의 상하수도·수질, 환경보호일반 등, 주거 및 지역사회 개발의 주택, 산업단지 등, 보건의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등, 휴양·문화·종교의 문화예술, 문화 및 관광일반 등, 교육의 유아·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등, 사회보호의 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 일반 등의 부문으로 집계된다.

<표 Ⅲ-10> 지방자치단체 COFOG 산출(부문 단위)

GFS 코드	기능(분야)	부문
701	일반공공행정	입법 및 선거관리
701	일반공공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701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701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701	일반공공행정	지원 및 기타 경비
702	국방	재난방재·민방위
703	공공질서 및 안전	경찰
704	경제활동	농업·농촌
704	경제활동	임업·산촌
704	경제활동	해양수산·어촌
704	경제활동	산업금융지원
704	경제활동	산업기술지원
704	경제활동	무역 및 투자유치
704	경제활동	산업진흥·고도화
704	경제활동	에너지 및 자원개발
704	경제활동	산업·중소기업일반
704	경제활동	도로

〈표 III-10〉의 계속

GFS 코드	기능(분야)	부문
704	경제활동	도시철도
704	경제활동	해운 · 항만
704	경제활동	항공 · 공항
704	경제활동	대중교통 · 물류등기타
704	경제활동	기술개발
704	경제활동	과학기술연구지원
704	경제활동	과학기술일반
705	환경보호	상하수도 · 수질
705	환경보호	폐기물
705	환경보호	대기
705	환경보호	자연
705	환경보호	해양
705	환경보호	환경보호일반
706	주택 및 지역사회 시설	주택
706	주택 및 지역사회 시설	수자원
706	주택 및 지역사회 시설	지역 및 도시
706	주택 및 지역사회 시설	산업단지
707	보건	보건의료
707	보건	식품의약품안전
708	휴양, 문화, 종교	문화예술
708	휴양, 문화, 종교	관광
708	휴양, 문화, 종교	체육
708	휴양, 문화, 종교	문화재
708	휴양, 문화, 종교	문화 및 관광일반
709	교육	유아 및 초 · 중등교육
709	교육	고등교육
709	교육	평생 · 직업교육
710	사회보호	기초생활보장
710	사회보호	취약계층지원
710	사회보호	보육 · 가족 및 여성
710	사회보호	노인 · 청소년
710	사회보호	노동
710	사회보호	보훈
710	사회보호	사회복지일반

자료: 행정자치부, COFOG 매핑자료; 정성호(2015b), p.89~90에서 재인용.

〈표 Ⅲ-11〉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일반공공행정(701)을 예로 설명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류하고 있는 부문은 거의 유사하지만 COFOG 기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4]에 설명된 COFOG 세부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Ⅲ-11〉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COFOG 부문 분류 예시(일반공공행정)

COFOG 분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부문 (group)	부문명		
7011	행정 및 입법기관, 금융 및 재정, 국외 업무	입법 및 선거관리, 법원 및 헌재, 법무 및 검찰, 재정금융	입법 및 선거관리 재정금융
7012	해외 경제원조		
7013	일반 서비스	일반행정, 정부자원관리,	일반행정
7014	기초연구	국정운영(출연연 R&D)	
7015	일반 공공행정 R&D		
7016	기타 미분류 일반 공공행정		지원 및 기타경비
7017	공공 채무 거래		
7018	정부 간 일반 이전	지방행정 · 재정지원	지방행정 · 재정지원

자료: 세출예산 체계를 기초로 저자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별 결산액을 기초로 1차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에서 취합 및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최종 COFOG 자료를 산출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림 Ⅲ-3]에서 제시한 것처럼 GFS 주요 보고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이호조(e-Hojo)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illegible]

정부운영표(GFSM 2001 정부운영표)는 특정항목을 기말 결산시 GFS의 해당 항목으로 불러올 수 있도록 매핑되어 있어서 손쉽게 산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COFOG 통계도 자동적으로 산출되는데, 이는 [그림 III-4]에서 볼 수 있다.

[illegible]

이러한 산출 과정에서 세출 결산의 경우 간단한 프로세스로 매핑이 가능하지만, 미수 또는 미지급 계정과 같은 발생주의 항목 및 비금융자산 순취득 등의 매핑처리는 매우 복잡할 것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말 재무보고서에 재정운영보고서를 기능별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과정을 거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 관리운영비 및 비배분비용의 COFOG 산출

80 • 정부기능분류(COFOG)의 체계적 고찰

이다. 중앙정부는 각 부처가 기능별로 분류되어 있어서 부처 인건비를 해당 분야에 직접 매핑시킬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운영비(인력운영비)를 기능별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각각 해당 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능별로 배분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다소 번거로워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일반공공행정 등의 특정 분야에 인건비를 일괄적으로 배분할 유인이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일괄 배분된 인건비가 전체 자료에서 정확한 통계수치를 얼마나 왜곡시키는지, 그 정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인건비의 정밀한 기능별 배분이 실익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은 일반공공행정으로만 집계되고 있어 다소 정합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달리 관리운영비가 ‘일반공공행정’으로 집계되고 있어 지표가 과다하게 집계되고 있다. 다음 장에서 논의하겠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운영비가 27% 정도 과다하게 집계되고 있는 실정이다(부천시). 또한 비배분비용이 ‘일반공공행정’으로 집계되고 있어 과다하게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은 부서별로 배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공공기관의 COFOG 산출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공공기관 COFOG 집계대상은 총 141개 기관 중 90개 기관이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공공기관은 COFOG 10개 기능별 지출 비율에 근거하여 안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의 비영리기관에서 주 기능으로 지표를 집계하는 것과는 달리 10개 분야의 지출규모에 비례하여 기계적으로 안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영리공공기관은 주된 기능으로 COFOG 지표를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담론만 제시할 것이다. 추후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간략히 90개의 비영리공공기관을 COFOG 분류기준에 근거할 경우 경제활동(704), 환경보호(705), 휴양, 문화, 종교(708)로 분류된다. 예를 들면 시

설관리공단인데, 대부분 문화 및 체육 등 편의시설임을 알 수 있다.

〈표 III-12〉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공공기관의 COFOG 기능별 분류

기관명	주요 사업내용	COFOG 분류
대구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 운영	704 경제활동
인천교통공사, 양평지방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의왕도시공사, 구리도시공사,	지하철 및 육상교통 운영	704 경제활동
부산환경공단,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인천 환경공단, 광주환경공단,	환경시설 관리 및 운영	705 환경보호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 생략),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광역시 시설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 생략), 중구, 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 울산광역시 중구도시관리공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 생략),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군포시, 양주시, 안성시, 포천시, 오산시, 과천시,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동해시, 속초시, 영월군, 정선군, 청주시, 단양관광관리공단, 보령시, 전주시, 포항시, 안동시, 구미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창원시, 창원경륜공단, 김해시, 양산시, 천안시, 이천시, 부여군, 경상북도관광공사,	문화체육 - 경기장, 어린이 대공원,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도로교통 등	708 휴양, 문화, 종교

주: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공공기관으로 GFS 기준 집계대상 기관은 90개임.

자료: 비영리공공기관 현황을 근거로 저자 작성

IV. COFOG 지표산출 대안 탐색

1. 집계단위

가. 프로그램 예산체계상 부문과 COFOG 부문 매핑

세출예산 중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대분류인 분야, 중분류인 부문, 그리고 그 하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야에는 정부 기능별로 최상위 정책목표에 해당하는 일반·공공행정(010), 공공질서 및 안전(020), 통일·외교(030), 국방(040), 교육(050), 문화 및 관광(060), 환경(070), 사회복지(080), 보건(090), 농림수산(10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10), 교통 및 물류(120), 통신(130), 국토 및 지역개발(140), 과학기술(150), 예비비(160) 등 16개가 이에 해당된다(정성호, 2015a). 이러한 분야 분류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GFS COFOG의 10개 분야(division)로 매칭이 가능하다.

현행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16개 분야 69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1개의 분야는 다수의 하위부문으로 구성된다. 분야와 부문의 차이는 정부 정책목표의 포괄 범위를 의미한다(정성호, 2015a).

예를 들어 교육(050)의 경우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051), 고등교육(052), 평생·직업교육(053) 및 교육일반(054)의 4개의 부문으로 구성된다. 이들 간의 차이는 중장기와 단기 등의 시차적 차이라기보다 포괄범위의 차이라고 봐야 한다. 교육 분야와 관련한 정책목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하위 4개 부문을 모두 포괄하는 대표지표가 설정되어야 하지만, 범위가 너무 넓어 지표 선택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분야보다는 부문 수준에서 정책목표 달성을 점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구체적인 지표 선정에 위해 더 적절하다. 또한 동일한 논리로 부문 수준에서보다 프로그램 수준에서 정책목표 달성을 점검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와 반대로

기능별(부문별 또는 프로그램별) 원가정보를 산출하는 데에는 분야가 가장 용이하며, 부문 또는 프로그램 수준으로 낮아질수록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프로그램 예산체계상 부문을 기준으로 COFOG에 매핑하는 것이 통계 작성뿐 아니라 활용 면에서도 선호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프로그램 예산체계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성과목표체계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특히 68개 부문(예비비 제외) 중에서 사회복지분야의 공적연금(083)부문은 다른 부문과는 상이한 점이 있다(정성호, 2015a). 대부분의 부문들이 해당 범위 내에서 중장기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반해, 공적연금(083)부문 중 주택·시설운영 및 고객지원 프로그램은 정책목표별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의 기금을 수단으로 운용한다는 의미로 공적연금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결과(기능)보다는 수단(재원)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기능별 분류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공적연금 부문의 COFOG 매핑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표 IV-1〉 부문 분류가 모호한 사례(083 공적연금 부문)

소관	회계명	회계	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84	0	080	083	600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 및 기금 운용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84	0	080	083	600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 및 기금 운용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84	0	080	083	600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 및 기금 운용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84	0	080	083	600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 및 기금 운용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84	0	080	083	600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 및 기금 운용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84	0	080	083	61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지급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84	0	080	083	61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지급

〈표 IV-1〉의 계속

소관	회계명	회계	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84	0	080	083	61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지급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84	0	080	083	63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운영비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84	0	080	083	63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운영비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84	0	080	083	63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운영비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84	0	080	083	63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운영비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84	0	080	083	63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운영비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84	0	080	083	63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운영비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84	0	080	083	63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운영비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84	0	080	083	9700	여유자금운용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84	0	080	083	9700	여유자금운용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84	0	080	083	9700	여유자금운용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84	0	080	083	9700	여유자금운용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84	0	080	083	9700	여유자금운용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84	0	080	083	9700	여유자금운용
국방부	군인연금기금	81	0	080	083	4300	군인연금(연금정책)
국방부	군인연금기금	81	0	080	083	4300	군인연금(연금정책)
국방부	군인연금기금	81	0	080	083	4300	군인연금(연금정책)
국방부	군인연금기금	81	0	080	083	7000	군인연금기금(기금운영비)
국방부	군인연금기금	81	0	080	083	9700	여유자금운용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11	0	080	083	2000	국민연금운영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11	0	080	083	2000	국민연금운영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11	0	080	083	8400	회계기금 간 거래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11	0	080	083	8400	회계기금 간 거래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11	0	080	083	8400	회계기금 간 거래

〈표 IV-1〉의 계속

소관	회계명	회계	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82	0	080	083	7300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영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82	0	080	083	7300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영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82	0	080	083	7300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영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82	0	080	083	7300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영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82	0	080	083	7300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영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82	0	080	083	7300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영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82	0	080	083	7300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영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82	0	080	083	7300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영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82	0	080	083	7300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영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82	0	080	083	7300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영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82	0	080	083	7300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영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82	0	080	083	7400	국민연금운영(여유자금운영위탁 등)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82	0	080	083	7400	국민연금운영(여유자금운영위탁 등)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82	0	080	083	7400	국민연금운영(여유자금운영위탁 등)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82	0	080	083	7400	국민연금운영(여유자금운영위탁 등)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82	0	080	083	7400	국민연금운영(여유자금운영위탁 등)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82	0	080	083	7400	국민연금운영(여유자금운영위탁 등)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82	0	080	083	7400	국민연금운영(여유자금운영위탁 등)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82	0	080	083	7400	국민연금운영(여유자금운영위탁 등)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82	0	080	083	7400	국민연금운영(여유자금운영위탁 등)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82	0	080	083	7400	국민연금운영(여유자금운영위탁 등)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82	0	080	083	7400	국민연금운영(여유자금운영위탁 등)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82	0	080	083	7400	국민연금운영(여유자금운영위탁 등)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82	0	080	083	7400	국민연금운영(여유자금운영위탁 등)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82	0	080	083	7600	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82	0	080	083	9700	여유자금운용

〈표 IV-1〉의 계속

소관	회계명	회계	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82	0	080	083	9700	여유자금운용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82	0	080	083	9700	여유자금운용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82	0	080	083	9700	여유자금운용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82	0	080	083	9700	여유자금운용
안전행정부	일반회계	11	0	080	083	8800	회계기금 간 거래(공무원연금부담금)
안전행정부	일반회계	11	0	080	083	8800	회계기금 간 거래(공무원연금부담금)
안전행정부	공무원연금기금	83	0	080	083	3000	공무원연금급여지급
안전행정부	공무원연금기금	83	0	080	083	3000	공무원연금급여지급
안전행정부	공무원연금기금	83	0	080	083	3000	공무원연금급여지급
안전행정부	공무원연금기금	83	0	080	083	3100	대부사업운영
안전행정부	공무원연금기금	83	0	080	083	3100	대부사업운영
안전행정부	공무원연금기금	83	0	080	083	3200	주택·시설운영 및 고객지원
안전행정부	공무원연금기금	83	0	080	083	3200	주택·시설운영 및 고객지원
안전행정부	공무원연금기금	83	0	080	083	3200	주택·시설운영 및 고객지원
안전행정부	공무원연금기금	83	0	080	083	3200	주택·시설운영 및 고객지원
안전행정부	공무원연금기금	83	0	080	083	3200	주택·시설운영 및 고객지원
안전행정부	공무원연금기금	83	0	080	083	3200	주택·시설운영 및 고객지원
안전행정부	공무원연금기금	83	0	080	083	3200	주택·시설운영 및 고객지원
안전행정부	공무원연금기금	83	0	080	083	3200	주택·시설운영 및 고객지원
안전행정부	공무원연금기금	83	0	080	083	3200	주택·시설운영 및 고객지원
안전행정부	공무원연금기금	83	0	080	083	3400	차입금이자상환
안전행정부	공무원연금기금	83	0	080	083	3400	차입금이자상환
안전행정부	공무원연금기금	83	0	080	083	3500	공무원연금기금운영비
안전행정부	공무원연금기금	83	0	080	083	3500	공무원연금기금운영비
안전행정부	공무원연금기금	83	0	080	083	3500	공무원연금기금운영비
안전행정부	공무원연금기금	83	0	080	083	3500	공무원연금기금운영비

〈표 IV-1〉의 계속

소관	회계명	회계	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안전행정부	공무원연금기금	83	0	080	083	3500	공무원연금기금운영비
안전행정부	공무원연금기금	83	0	080	083	9700	여유자금운용
안전행정부	공무원연금기금	83	0	080	083	9700	여유자금운용
안전행정부	공무원연금기금	83	0	080	083	9700	여유자금운용
안전행정부	공무원연금기금	83	0	080	083	9700	여유자금운용
안전행정부	공무원연금기금	83	0	080	083	9800	차입금원금상환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14회계연도 부처별 성과계획서」, 성과목표관리체계와 예산사업과의 연계 현황

나. 프로그램 예산체계상 프로그램과 COFOG 부문 매핑

프로그램 예산체계상 프로그램은 분야, 부문의 하위 정책목표이며, 성과 관리의 기본 단위인 단위사업(관리과제), 예산편성의 기본단위인 세부사업 등의 상위 정책목표이다. 2013회계연도 중앙관서 기준 프로그램은 총 755개로 구성되어 있다.³¹⁾

COFOG의 기능 정의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분류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예산체계상 분야나 부문보다 하위단위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실질적인 정책목표, 사업내용 등을 분석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미 정부조직체계에 프로그램 예산체계가 그러한 정책목표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대부분의 하위단위들은 합리적인 성과목표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세출예산을 COFOG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데에 그 기준 단위를 어떤 단위로 할 것인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분야나 부문을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이를 위한 별도의 작업이 많지 않으므로 최소비용을 투입하여 합리적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정책목표별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고는 하나 국제적인 분류기준과 정부조직 또는 프로그램 예산체계상 체계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

31) 대한민국 정부,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다. 다시 말해 기능분류에 대한 정확성을 고려한다면 하위단위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정확할 수 있다.

다만, 지표의 정합성을 고려한다면 프로그램 단위로 분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단위에서 분류하는 것도 고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의 수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기능분류 시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지만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상위 정책목표에 맞게 구성되어 있을 것이므로 COFOG 분류 시 비용 대비 효과는 낮을 것이라 판단된다(정성호, 2015a).

그러므로 프로그램 단위로 분류할 경우 ‘분야’나 ‘부문’ 단위로 분류할 때 보다는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 단위보다는 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분류와 관련된 비용이 덜 들어가게 되는 장점이 있다(정성호, 2015a).

프로그램 단위 기준으로 COFOG의 분야에 매칭하는 경우 분류가 모호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다. 첫째는 현재 프로그램이 속해 있는 분야나 부문이 COFOG에서 정의하는 부문, 등급 등의 세부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는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프로그램이 정부조직체계 또는 프로그램 예산체계가 적절하지 않은 정책목표체계(성과목표관리체계) 하에 잘못 구성된 경우와 프로그램 예산체계상 분야, 부문의 정의와 COFOG 기준상 정의가 상이한 경우이다. 두 번째는 분류가 모호한 경우는 프로그램의 정책목표가 COFOG 다수의 분야에 걸쳐 있는 경우이다.

1)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COFOG 분류기준이 상이한 경우

가) 프로그램 예산체계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먼저 프로그램 단위를 기준으로 COFOG 매칭 시 분류가 모호한 경우 중 프로그램 예산체계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세출예산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2013회계연도 기준 16개 분야, 69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예비비를 제외한 부문 중 사회복지 분

야의 공적연금 부문이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COFOG을 매칭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세출예산의 분류 체계는 기본적으로 정책목표에 따라 기능별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의 프로그램 예산체계상 부문과 COFOG 부문 매칭 시 문제점에서 다룬 것과 같이, 공적연금부문만이 수단에 따라 분류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예는 <표 IV-2>에서 볼 수 있다.

〈표 IV-2〉 적절하지 않은 프로그램 예산체계(2013회계연도 기준)

분야	부문	프로그램 코드	프로그램	기존 COFOG 분류	COFOG 분류(안)
사회복지	공적연금	2000	국민연금운영	710 사회보호	710 사회보호
사회복지	공적연금	3000	공무원연금급여지급	710 사회보호	710 사회보호
사회복지	공적연금	3200	주택시설운영 및 고객지원	710 사회보호	706 주거 및 지역사회 개발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14회계연도 부처별 성과계획서」, 성과목표관리체계와 예산사업과의 연계 현황.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수령 대상자에 대한 연금급여의 현금 및 현물 지급 등의 업무는 COFOG 분류기준상 사회보호(710)분야로 분류되어야 한다.³²⁾ <표 IV-2>는 해당 내용에 대한 COFOG 기준을 발췌한 것이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적립금이 어떤 정부의 정책목표를 위해 사용된다면,

32) <710 사회보호분야>

- Cash benefits, such as disability pensions paid to persons below the standard retirement age who encounter a disability which impairs their ability to work, early retirement benefits paid to older workers who retire before reaching the standard retirement age due to reduced capacity to work, care allowances, allowances paid to disabled persons undertaking work adapted to their condition or undergoing vocational training, other periodic or lump-sum payments paid to disabled persons for social protection reasons;
 - Provision of social protection in the form of cash benefits and benefits in kind against the risks linked to old age (loss of income, inadequate income, lack of independence in carrying out daily tasks, reduced participation in social and community life, etc.);
 - Provision of social protection in the form of cash benefits and benefits in kind to persons who are survivors of a deceased person (such as the person's spouse, ex-spouse, children, grandchildren, parents or other relatives);
- 이상(IMF, 「GFSM 2014」, 제6장 부록, 710 사회보호분야).

이는 해당 기능의 분야, 부문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러한 예로 공무원연금 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공무원에게 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시설운영 및 고객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주거 및 지역사회개발(706)분야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COFOG 기준 정의가 상이한 경우

두 번째로 분류가 모호한 경우 중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COFOG 분류 정의가 상이한 대표적인 예는 <표 IV-3>에서 볼 수 있다.

<표 IV-3> COFOG 정의와 상이한 프로그램(2013회계연도 기준)

분야	부문	프로그램 코드	프로그램	COFOG 분류(안)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2700	한국예술종합학교운영	709 교육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3700	국립국악중고운영	709 교육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3800	국립전통예술중고운영	709 교육
문화 및 관광	관광	4100	관광진흥기반확충	704 경제활동
문화 및 관광	관광	4200	관광산업육성	704 경제활동
문화 및 관광	관광	4300	외래관광객유치	704 경제활동
문화 및 관광	관광	4400	관광산업기금용자	704 경제활동
문화 및 관광	관광	4500	관광레저도시육성	704 경제활동 (706 주거 및 지역사회 개발)
외교 · 통일	통일	230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710 사회보호
외교 · 통일	통일	3000	남북경제협력	701 일반공공행정
국방	전력유지	2200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707 보건
문화 및 관광	체육	5500	장애인체육육성	710 사회보호
사회복지	노동	1300	고용평등실현	704 경제활동
사회복지	노동	1400	장애인고용증진	704 경제활동
사회복지	노동	2000	노사정책	704 경제활동
사회복지	노동	3000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704 경제활동
과학기술	과학기술일반	7000	원자력안전운영지원	704 경제활동

주: 관광레저도시육성(4500) 프로그램은 경제활동(704)으로 분류되어야 함. 통계작성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주거 및 지역사회개발(706)로 분류될 여지가 있는데 주의를 요함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14회계연도 부처별 성과계획서, 성과목표관리체계와 예산사업과의 연계 현황

‘한국예술종합학교운영’은 체계적인 예술실기교육을 통한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주도할 창의적 전문예술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부의 프로그램이다. 이는 대통령령인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23644호, 2012.2.29.)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6개월 및 협동과정 교육지원 및 운영, 교사 증개축 및 학습장 시설 관리, 국외 예술대학과의 상호교류 추진 등을 위한 대외협력 강화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³³⁾ 이 프로그램은 세출예산 기준 프로그램 예산체계상 문화 및 관광분야, 문화예술부문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문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문화부가 이 프로그램의 시행주체이다.

〈표 IV-4〉 한국예술종합학교운영 프로그램의 단위 및 세부사업(2013회계연도 기준)

(단위: 백만원)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수	단위 사업	단위사업명	세부 사업수	세부 사업	세부사업명	'13예산	'13결산
한국예술 종합학교 운영	2	2,731	한국예술 종합학교 운영	10	300	교육기자재구입 및 관리	2,469	1,847
					301	교육환경개선	2,490	2,248
					302	학습장 시설 유지관리	3,960	3,307
					303	교육지원 및 운영	10,238	9,397
					304	공연전시지원센터 운영	444	368
					305	선진예술교류 활성화	674	358
					306	예술영재교육	1,692	1,492
					307	아시아 예술계 인력양성 및 지원	656	413
					309	기숙시설 확충	1,800	1,788
					650	예술학교 수입대체경비	1,095	1,049
		2,732	학교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1	500	학교종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597	582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1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성과보고서」 별첨5, '성과목표관리체계와 예산사업과의 연계 현황'

33) 대한민국 정부, 「2013회계연도 성과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p.204.

그러나 COFOG 기준으로 분류할 때는 좀 더 복잡하다. COFOG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민간기관과 유사한 교과과정을 제공하는 교육기관(군사학교, 경찰대학 등)을 교육(709)분야로 분류해야 한다.³⁴⁾

문화부의 다른 프로그램인 ‘관광진흥기반확충’, ‘관광산업육성’, ‘외래관광객유치’, ‘관광산업기금융자’, ‘관광레저도시육성’ 등은 세출 프로그램 예산체계상 ‘문화 및 관광분야’ 및 관광부문 내에 속해 있다.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COFOG 분류기준상 다른 분야에 해당된다.

COFOG에서는 관광과 관련하여 두 개의 분야로 분류가 가능하다.³⁵⁾

34) 〈709 교육분야〉

This division includes military schools and colleges where curricula resemble those of civilian institutions, police colleges offering general education in addition to police training and the provision of education by radio or television broadcasting. Expenditure so incurred are classified to groups (7091) to (7095) as appropriate.
(IMF, 「GFSM 2014」, 제6장 부록, 709 교육분야).

35) 〈704 경제활동분야〉

70473 Tourism (CS)

- Administration of tourism affairs and services; promotion and development of tourism; liaison with the transport, hotel and restaurant industries and other industries benefiting from the presence of tourists;
- Operation of tourist offices at home and abroad, etc.; organization of advertising campaigns, including the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promotional literature and the like;
- Compilation and publication of statistics on tourism.

〈708 휴양, 문화, 종교분야〉

70810 Recreational and sporting services (IS)

- Operation or support of facilities for active sporting pursuits or events (playing fields, tennis courts, squash courts, running tracks, golf courses, boxing rings, skating rinks, gymnasias, etc.); operation or support of facilities for passive sporting pursuits or events (chiefly specially equipped venues for playing cards, board games, etc.); operation or support of facilities for recreational pursuits (parks, beaches, camping grounds and associated lodging places furnished on a noncommercial basis, swimming pools, public baths for washing, etc.);

Excludes: zoological or botanical gardens, aquaria, arboreta and similar institutions (70820); sporting and recreational facilities associated with educational institutions (classified to the appropriate class of Division 709).

70820 Cultural services (IS)

- Provision of cultural services; administration of cultural affairs; supervision and regulation of cultural facilities;
- Operation or support of facilities for cultural pursuits (libraries, museums, art galleries, theatres, exhibition halls, monuments, historic houses and sites, zoological

경제활동(704)분야에는 관광 산업의 증진 및 발전을 위한 관련 행정 전반이 포함된다. 휴양, 문화, 종교(708)분야에는 휴양 목적의 시설물(공원, 해변, 캠핑장, 비상업적 숙박업소, 수영장, 공공 세면장 등)의 운영 또는 지원 및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극장, 전시관, 기념관, 유적관 및 유적지, 동물원과 식물원, 수족관, 수목원 등)의 운영 또는 지원, 문화행사(음악회, 연극 및 영화, 예술 공연 등)의 개최·운영·지원 등이 포함된다(GFSM, 2014). 즉, 관광 산업 전반에 대한 운영 및 지원은 경제활동(704)분야, 단순 관광시설 운영은 휴양, 문화, 종교(708)분야로 분류해야 한다.

위에서 열거된 관광 관련 프로그램의 정확한 분류를 위해 실제 정책목표나 사업목적에 점검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들은 다음의 표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단순 관광시설 운영이 아닌 관광 산업 육성과 관련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경제활동(704)분야로 분류해야 한다.

기타 다른 프로그램 중에도 정책목표나 사업내용에 따라 분류가 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다.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은 그 정책목표가 북한 이탈주민의 기본 생계유지를 위한 현금이나 현물 지급이라면 사회보호(710) 분야에, 그렇지 않고 대북 외교적 전략 중 하나인 경우 일반공공행정(701) 분야의 국외 업무(외교)부문으로 분류해야 한다. 여기서는 사회보호분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반면 ‘남북경제협력’의 경우 북한의 싼 인건비 등을 활용한 원가절감을 통한 활동으로서의 경제활동(704)분야나 대북한 관련 국외 업무인 일반공공행정(701)분야 중 하나로 분류해야 한다. 이 경우는 일반공공행정분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and botanical gardens, aquaria, arboreta, etc.); production, operation or support of cultural events (concerts, stage and film productions, art shows, etc.);

Includes: national, regional or local celebrations provided they are not intended chiefly to attract tourists.

Excludes: cultural events intended for presentation beyond national boundaries (70113); national, regional or local celebrations intended chiefly to attract tourists (70473); production of cultural material intended for distribution by broadcasting (70830).

이상, IMF, “GFSM 2014,” 제6장 부록, 704, 708 분야).

〈표 IV-5〉 관광 관련 프로그램의 단위 및 세부사업(2013회계연도 기준)

(단위: 개, 백만원)

프로그램명	단위 사업수	단위 사업	단위사업명	세부 사업수	세부 사업	세부사업명	'13예산	'13결산
관광진흥기반 확충	1	4,131	관광정책 개발지원	2	300	관광자원개발 지원 및 평가	1,196	895
					301	재해복구비(관광)	178	178
외래관광객 유치	1	4,331	국제관광 교류	3	300	관광외교역량강화	664	601
					301	국제관광협력	203	174
					302	개도국관광발전 지원(ODA)	667	667
관광산업 기금용자	1	4,461	관광사업체 용자지원	1	300	관광산업 용자지원	312,000	312,000
관광레저도시 육성	1	4,531	관광레저 도시개발 지원	1	300	관광레저도시지 원 및 콘텐츠개발	448	213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1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성과보고서」 별첨5, '성과목표관리체계와 예산사업과의 연계 현황.'

고용부 프로그램인 '고용평등실현', '장애인고용증진', '노사정책' 등도 그 목표가 전반적인 노동 환경 개선 등일 경우 경제활동(704)분야 중 노동부문에,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계유지와 관련한 근로 재할 등을 위한 직업 훈련 등 일 경우 사회보호(710)분야 중 장애부문, 노령부문 등으로 분류해야 한다. 위의 프로그램들은 경제활동분야의 노동부문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다.

과학기술부의 '원자력안전운영지원' 프로그램은 분류하기 더욱 까다롭다. 원자력 산업 측면에서 보면 경제활동(704)분야의 연료 및 에너지부문에 해당하나, 사업내용에 따라서는 환경보호(705)분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 예산체계상 또는 정부조직체계상의 분류와 COFOG 분류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가장 단순한 문제 해결 방법은 국제표준(COFOG)에 따르도록 우리나라의 체계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이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궁극적인 목표이나, 실무적으로는 상위 정책 담당자의 결단, 정책조직체계의 개편 등 많은 부분에서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단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경우 과도기적 방법으로,

기존의 프로그램 예산체계, 정부조직 등을 유지하면서도 해당 프로그램은 COFOG 통계에서는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분야에 집계되도록 조정해야 할 것이다.

2) 프로그램이 다수의 COFOG 분야에 걸쳐 있는 경우

프로그램 단위 기준으로 COFOG의 분야에 매칭하는 경우 분류가 모호한 또 다른 경우는 프로그램의 정책목표나 사업내용이 COFOG 두 개 이상의 분야에 걸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보통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거나, 예산 비중이 높은 쪽의 정책목표로 편성한다. 프로그램 기준으로 분류하는 취지가 분류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복수의 분야에 걸친 프로그램 결산액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배분할 실익이 있는지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예는 <표 IV-6>에서 설명된다.

<표 IV-6> 다수의 COFOG 분야에 걸친 프로그램(2013회계연도 기준)

분야	부문	프로그램 코드	프로그램	GFS COFOG
사회복지	주택	1100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용자)	706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710 사회보호
사회복지	사회복지 일반	7000	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	707 보건, 710 사회보호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13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및 부처별 결산보고서」

국토부의 프로그램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용자)’은 총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주거환경개선, 분양주택(용자), 준주택지원(용자) 등은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706)분야로 분류되지만, 세부사업 중 주거약자 개량자금 지원사업은 장애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호(710)분야로 분류될 수도 있다.

〈표 IV-7〉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옹자)의 단위 및 세부사업
(2013회계연도 기준)

(단위: 개, 백만원)

프로그램명	단위 사업수	단위 사업	단위사업명	세부 사업수	세부 사업	세부사업명	'13예산	'13결산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옹자)	3	1131	주거환경개선 지원(옹자)	2	401	주거환경개선	2,500	2,161
					404	주거약자 개량자금지원	2,600	2,600
		1134	분양주택지원 (옹자)	1	401	분양주택(옹자)	1,832,621	1,831,932
		1136	준주택지원 (옹자)	1	401	준주택지원(옹자)	66,500	66,444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13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성과보고서」 별첨5, '성과목표관리체계와 예산사업과의 연계 현황'

보건복지부의 '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다수의 COFOG 분야에 걸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즉 정부 부처가 그 기능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경비(인건비, 경상비)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의 경우 크게 보건(707)분야와 사회보호(710)분야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의 인건비와 경상비 등은 해당되는 분야로 배분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는 주요 기능이 다수의 분야에 걸친 정부 부처들의 기본경비 등 행정적 지출의 대부분이 해당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OFOG 통계 작성 시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기존 세출예산 프로그램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편을 통해 COFOG의 부문과 프로그램 예산체계상 부문을 일치시키면, COFOG 통계 산출 시 편의성은 물론 정확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중앙정부의 경우 '프로그램' 단위 또는 '부문'단위로 산출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부문'단위로만 COFOG 지표를 산출하는데(정성호, 2015a), 동일한 기준에 근거한 지표 산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실적, 실무적인 문제로 단기간에 커다란 개편이 어렵다면, 현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COFOG 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안이 존재한다.

첫째, 예산편성부터 결산까지 부문코드(등급코드 5자리)를 추가하여 하면 프로그램상에서 집계가 용이할 것이다(정성호, 2015a). 아래 표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예산편성 시에 부문2를 추가하여 활용하고 동일하게 결산 시에도 이 코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표 IV-8〉 예산 편성 및 결산 시 COFOG에 따른 부문2 추가 예시

〈예산 편성〉 현행체계에 부문추가								
소관	회계명	회계	계정	분야	부문	부문2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84	0	080	083	71020	600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 및 기금 운용
〈결산〉 현행체계에 부문추가								
소관	분야명	부문명	부문2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교육부	사회복지	공적연금	71020		600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 및 기금 운용		

자료: 정성호(2015a), p.48에서 재인용.

둘째, 중앙정부의 경우 수작업으로 지표를 산출하고 있는데, 디브레인(d-Brain)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집계가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호조(e-Hojo) 시스템에서는 지표가 자동 산출되고 있으나, ‘세부 부문’ 단위의 일치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인력운영비 등 배분 방안

부문에 따라 기능별로 분류하는 것은 통계 작성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최상위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 등 간접비 배분의 기본단위로는 부문보다 상위의 단위인 분야가 더 효율적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는 이미 어느 정도의 중복이 제거된 기능별 정부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결산 통계를 부처별로 작성하고 있다. 분야

별로 통계를 작성할 경우 특정 부처의 간접비는 해당 분야로 바로 집계될 수 있다. 만일 보다 정밀한 통계치를 위해 부문, 프로그램이나 세부사업 단위의 통계를 작성한다면 인건비 배분을 위한 작성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즉, 부문 및 이하 하위 단위로의 인건비 배분을 위해 연중 인사발령, 조직개편, 업무실적 등을 추적조사하거나 연말 주먹구구식으로 일괄적인 배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부문 및 이하 하위 단위로 통계를 작성하는 목적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정밀한 통계치를 작성하는 것이지만, 그 중 인건비는 배분 시 정밀성을 기하기 어려우며 때로는 배분과정에서 목적과 방법이 서로 배치된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의 인사과나 총무과 등 행정지원 부서에서 일하는 인력의 인건비는 분야로 분류할 경우 바로 보건(090)분야로 분류하게 된다. 그러나 부문단위로 분류할 경우 보건복지부가 포괄하는 부문의 범위인 보건 의료(091), 건강보험(092), 식품의약품안전(093) 중으로 배분해야 한다. 현재 부처별 결산에서 인건비는 하나의 프로그램인 본부 기본경비로 편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어떤 기준으로 상위 단위인 부문에 배분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확한 기준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프로그램 이하 단위를 기준으로 배분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이 훨씬 많아진다. 프로그램만 놓고 볼 때 행정지원 관련 프로그램은 그 업무 특성상 일반·지방행정(010)분야의 일반행정(016)부문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해당 행정지원 프로그램은 상위 정책목표(보건 분야) 달성을 위한 수단이므로 보건(090)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의 인건비 배분은 복잡하지 않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훨씬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인건비가 분야별로 나뉜 부처별 결산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분야별 배분통계가 없어서 기존의 결산자료를 통해 별도의 배분을 실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은 일반정부와 비교하면 그리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치 작성과 관련하여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목표수준이 다를 수도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COFOG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내부거래를 제거하고 작성한 통계를 행정자치부가 최종으로 취합하고 또 한번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기획재정부로 제출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다양한 한계가 있어 COFOG 지표를 그대로 활용할 수는 없지만 이호조(e-hojo) 프로그램을 통해 COFOG 지표가 자동으로 집계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COFOG 통계산출 과정을 확인하였다. 시스템의 결산자료에서 내부거래가 제거된 후 COFOG 10개 분야로 매핑이 가능하여 쉽게 지표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별 지방자치단체 실무자가 정확하게 내부거래를 통제한 후 지표가 작성되었는지, 더불어 빠짐없이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입력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다. 따라서 실무자가 초기 입력단계부터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정성호, 2015a).

이렇듯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취합된 COFOG 지표는 행정자치부에서 재검토 과정을 거치는데, 소수 인력으로 전 지방자치단체의 지표를 검토, 취합한다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으므로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확한 통계지표 산출을 위한 표준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정성호, 2015a).

지방자치단체의 COFOG 작성 실태 조사 결과, 부문(2014회계연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1개 부문)단위로 매핑하여 분야로 집계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는 인건비를 배분함에 있어 사업부문이 아닌 '일반공공행정'으로 집계되고 있어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처가 기능별로 조직되어 있어 해당 분야로 집계되는 것에 문제가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각 부서별 사업내용, 정책목표를 감안하여 해당 분야에 배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태 조사 결과, 대구광역시, 부천시, 대구광역시 중구청의 경우 인건비를 일반공공행정(701)으로 배분하고 있다. 이는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공공행정(701) 분야에 실제보다 과다하게 집계되고 있다. 특히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건비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통계지표의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지표 통계가 얼마만큼 왜곡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인건비를 해당 사업 부문으로 배분하도록 요청하였다. 우선 부서별 인건비는 각 부서의 주요 사업내용으로 분류하고,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해당 분야에 우선 분류함과 동시에 행정지원부서의 경우 일반공공행정으로 분류하도록 요청하였다. 그 결과, 대구광역시, 부천시, 대구광역시 중구청의 경우 일반공공행정(701)분야에 각각 9.3%, 27.0%, 7.6% 과다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정성호, 2015a).

〈표 IV-9〉 대구광역시 2013회계연도 COFOG 통계(인건비 배분 전)

(단위: 원)

GFS 코드	GFS 계정명	회계 및 기금	공기업	내부거래	합계
7	총 경비	6,964,463,384,801	659,777,285,831	0	7,624,240,670,632
701	일반공공행정	1,722,091,995,999	2,663,146,143	0	1,724,755,142,142
702	국방	0	0	0	0
703	공공질서 및 안전	75,196,720,203	0	0	75,196,720,203
704	경제활동	1,115,401,624,820	282,299,299,801	0	1,397,700,924,621
705	환경보호	152,466,778,024	73,677,855,802	0	226,144,633,826
706	주택 및 지역사회 시설	114,956,599,477	301,136,984,085	0	416,093,583,562
707	보건	229,707,873,316	0	0	229,707,873,316
708	레크리에이션, 문화, 종교	186,240,244,028	0	0	186,240,244,028
709	교육	413,765,430,490	0	0	413,765,430,490
710	사회보호	2,954,636,118,444	0	0	2,954,636,118,444

자료: 대구광역시청 이호조(e-Hojo)시스템 연차보고서. 검색일자: 2015.5.11(재무회계 관리자 로그인)

〈표 IV-10〉 대구광역시 2013회계연도 COFOG 통계(인건비 배분 후)

(단위: 원, %)

GFS 코드	GFS 계정명	배분 전 합계 (A)	공통인건비 (B)	인건비 배분액 (C)	배분 후 합계 (D=A-B+C)	비율 (A/D×100)
7	총경비	7,624,240,670,632	269,731,412,715	269,731,412,715	7,624,240,670,632	100.0
701	일반공공행정	1,724,755,142,142	269,731,412,715	123,515,140,690	1,578,538,870,117	109.3
702	국방	0	0	0	0	0
703	공공질서 및 안전	75,196,720,203	0	87,717,936,795	162,914,656,998	46.2
704	경제활동	1,397,700,924,621	0	13,770,154,140	1,411,471,078,761	99.0
705	환경보호	226,144,633,826	0	2,798,880,790	228,943,514,616	98.8
706	주택 및 지역사회 시설	416,033,583,562	0	15,477,857,910	431,571,441,472	96.4
707	보건	229,707,873,316	0	6,019,037,350	235,726,910,666	97.4
708	레크리에이션, 문화, 종교	186,240,244,028	0	13,603,823,430	199,844,067,458	93.2
709	교육	413,765,430,490	0	0	413,765,430,490	100.0
710	사회보호	2,954,636,118,444	0	6,828,581,610	2,961,464,700,054	99.8

자료: 대구광역시청 인력운영비 내부자료 활용 재계산; 정성호(2015a), p.49에서 재인용

〈표 IV-11〉 부천시 2013회계연도 COFOG 통계(인건비 배분 전)

(단위: 원)

GFS 코드	GF S계정명	회계 및 기금	공기업	내부거래	합계
7	총경비	928,286,589,992	105,511,595,907	0	1,033,798,185,899
701	일반공공행정	242,733,424,640	0	0	242,733,424,640
702	국방	0	0	0	0
703	공공질서 및 안전	6,246,684,318	0	0	6,246,684,318
704	경제활동	107,420,507,837	0	0	107,420,507,837
705	환경보호	58,561,085,693	105,511,595,907	0	164,072,681,600
706	주택 및 지역사회 시설	23,558,087,354	0	0	23,558,087,354
707	보건	20,344,456,424	0	0	20,344,456,424
708	레크리에이션 문화 종교	54,429,180,970	0	0	54,429,180,970
709	교육	42,256,742,100	0	0	42,256,742,100
710	사회보호	372,736,420,656	0	0	372,736,420,656

자료: 부천시청 이호조(e-Hojo)시스템 연차보고서. 검색일자: 2015.2.13(재무회계 관리자 로그인)

〈표 IV-12〉 부천시 2013회계연도 COFOG 통계(인건비 배분 후)

(단위: 원, %)

GFS 코드	GFS 계정명	배분 전 합계 (A)	공통인건비 (B)	인건비 배분액 (C)	배분 후 합계 (D=A-B+C)	비율 (A/D×100)
7	총경비	1,033,798,185,899	58,806,302,474	58,806,302,474	1,033,798,185,899	100.0
701	일반공공행정	242,733,424,640	58,806,302,474	7,140,134,238	191,067,256,404	127.0
702	국방	0	0	0	0	0
703	공공질서 및 안전	6,246,684,318	0	1,399,058,655	7,645,742,973	81.7
704	경제활동	107,420,507,837	0	2,119,213,000	109,539,720,837	98.1
705	환경보호	164,072,681,600	0	12,133,499,720	176,206,181,320	93.1
706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23,558,087,354	0	20,961,972,730	44,520,060,084	52.9
707	보건	20,344,456,424	0	6,863,038,790	27,207,495,214	74.8
708	레크리에이션, 문화, 종교	54,429,180,970	0	4,484,328,751	58,913,509,721	92.4
709	교육	42,256,742,100	0	258,211,430	42,514,953,530	99.4
710	사회보호	372,736,420,656	0	3,446,845,160	376,183,265,816	99.1

자료: 부천시청 인력운영비 내부자료 활용 재계산; 정성호(2015a), p.50에서 재인용

〈표 IV-13〉 대구광역시 중구청 2013회계연도 COFOG 통계(인건비 배분 전)

(단위: 원)

GFS 코드	GFS 계정명	회계 및 기금	공기업	내부거래	합계
7	총경비	133,975,119,960	0	0	133,975,119,960
701	일반공공행정	55,404,638,193	0	0	55,404,638,193
702	국방	0	0	0	0
703	공공질서 및 안전	424,913,168	0	0	424,913,168
704	경제활동	7,736,602,573	0	0	7,736,602,573
705	환경보호	3,634,311,839	0	0	3,634,311,839
706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3,297,785,114	0	0	3,297,785,114
707	보건	3,501,900,725	0	0	3,501,900,725
708	레크리에이션, 문화, 종교	3,817,992,510	0	0	3,817,992,510
709	교육	444,213,190	0	0	444,213,190
710	사회보호	55,712,762,648	0	0	55,712,762,648

자료: 대구광역시 중구청 이호청(e-hq)시스템 연차보고서 검색일자: 2015.7.17(재무회계 관본자 로그인)

〈표 IV-14〉 대구광역시 중구청 2013회계연도 COFOG 통계(인건비 배분 후)

(단위: 원, %)

GFS 코드	GFS 계정명	배분 전 합계 (A)	공통인건비 (B)	인건비 배분액 (C)	배분 후 합계 (D=A-B+C)	비율 (A/D×100)
7	총경비	133,975,119,960	37,966,426,950	37,966,426,950	133,975,119,960	100.0
701	일반공공행정	55,404,638,193	37,966,426,950	34,037,138,890	51,475,350,133	107.6
702	국방	0	0			0
703	공공질서 및 안전	424,913,168	0		424,913,168	100.0
704	경제활동	7,736,602,573	0	3,240,000	7,739,842,573	100.0
705	환경보호	3,634,311,839	0	455,112,960	4,089,424,799	88.9
706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3,297,785,114	0	442,850,180	3,740,635,294	88.2
707	보건	3,501,900,725	0	467,040,620	3,968,941,345	88.2
708	레크리에이션, 문화, 종교	3,817,992,510	0	617,259,890	4,435,252,400	86.1
709	교육	444,213,190	0		444,213,190	100.0
710	사회보호	55,712,762,648	0	1,943,784,410	57,656,547,058	96.6

자료: 대구광역시 중구청 인력운영비 내부자료 활용 재계산.

이를 지방자치단체 전체 재정지출규모로 확대하여 논의하면, 인건비 배분의 오류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일반공공행정(701)분야 전체 규모 39조 7,000억원 중 대구광역시 3조 7,000억원(9.3% 전체 적용 시), 부천시 10조 7,000억원(27.0% 전체 적용시), 대구광역시 중구청 3조원(7.6% 전체 적용시)가 각각 과다 집계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총지출액인 167조 9,000억원의 2.2%, 6.4%, 1.7%에 해당하며, 일반정부 전체 지출규모인 463조 3,000억원의 0.8%, 2.3%, 0.6%에 해당한다(정성호, 2015a). 이는 규모상으로 적지 않다. 따라서 내부 관리목적이나 국제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다 정확한 통계정보 산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해보면, 대구광역시의 경우, 공공질서 및 안전이 46.2%로 실제보다 과소집계되고 있고, 부천시의 경우,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이 52.9%로 실제보다 과소집계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중구청의 경우,

휴양, 문화, 종교가 86.1%로 실제보다 과소집계되고 있다. 이를 통해, 대구 광역시의 경우 공공질서 및 안전에, 부천시의 경우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의 경우 휴양, 문화, 종교 등에 많은 재정지출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정성호, 2015a).

지방자치단체 COFOG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다음 단계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인 읍, 면, 동 등의 인건비는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남원 아영면 등을 조사한 결과, 그 조직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은 <표 IV-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직 특성상 여러 부문에 걸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 남원시 아영면 담당업무별 기능 분류

직위	직급	담당업무	비고 (인터뷰 결과종합)
면장	행정5급	면 행정전반	일반공공행정
주민 생활	행정6급	동향, 보안(비밀문서), 건축, 생활민원, 도시	일반공공행정
	사회6급	사회복지일반, 보훈	사회보호
	행정6급	예산, 회계, 건설, 숙원사업, 감사, 재산관리, 상수도(마을관리)	일반공공행정
	행정8급	서무, 행사, 선거, 기획, 문화관광, 교육체육, 재난관리	일반공공행정
	공무직 (무기계약직)	환경, 홍보전산, 보건, 세무, 민방위, 통계(인구통계 등)	환경보호(주), 공공질서 및 안전, 보건, 일반공공행정
산업	농업6급	산업업무전반, 축산(친환경농업 제외), 산림과업무전반	경제활동
	행정7급	원예허브전반, 농정과(농촌개발 등), 농지취득자격	경제활동
	세무8급	농정과(쌀산업), 축산과(친환경농업), 농어촌공사, 경제과, 교통과, 농업기술센터	경제활동
민원	사회6급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제증명	일반공공행정
	행정7급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민원	일반공공행정

자료: 인터뷰자료에 근거하여 저자 작성

아영면 공무원은 총 11명(정원 12명)으로 5급 1명, 6급 5명, 7급 2명, 8급 2명, 공무직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6명, 경제활동

3명, 사회보호 1명, 환경보호 1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의 인력운영비는 COFOG 통계에서 '농림축산', 즉, 경제활동(704)분야로 배분하고 있었다. 이는 시 단위 인건비 배분 시 특정 분야에 과다 배분된 것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아영면 공무원의 담당업무를 COFOG 기준에 근거하여 배분한 결과, <표 IV-15>의 비고(인터뷰 결과 종합)처럼 경제활동은 일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환경, 전산, 보건, 세무, 민방위 등 여러 부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인터뷰 결과 주요 업무(투입시간 대비)는 환경보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 남원시 산내면 담당업무별 기능 분류

직위	직급	담당업무	비고 (인터뷰 결과 종합)
면장	행정5급	면 행정전반	일반공공행정
주민 생활	환경6급	주민생활총괄, 보안, 감사실, 상수도·환경사업소, 시설사업소, 안전재난(민방위 제외)	일반공공행정
	행정6급	예산, 회계, 주민숙원사업, 시민소통실, 건설, 재정과, 차량관리(배차 등)	일반공공행정
	행정7급	기획(예산 제외), 총무, 건축, 방역업무, 각종 행사, 선거 사무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7급	주민복지, 여성가족(노인복지업무 제외), 보건소(방역 제외)	보건
	사회복지9급	여성가족(노인복지업무), 문화관광, 교육체육, 품안 도서관관리	사회보호
	공무직 (무기계약직)	홍보전산, 환경, 민방위, 가로등, 세무, 통계(인구통계 등)	환경보호(주),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 공공질서 및 안전, 일반공공행정
산업	농업6급	산업업무전반, 농촌개발, 농업시설, 농지전용, 경제과	경제활동
	행정7급	원예허브전반, 교통, 쌀산업, 농업재해	경제활동
	행정7급	축산, 산림, 귀농귀촌, 농업행정, 농지관리	경제활동
민원	행정6급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제증명, 인구동태신고업무	일반공공행정
	행정8급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발급, 민원24 등	일반공공행정

자료: 인터뷰자료에 근거하여 저자 작성

남원시 산내면은 공무원이 총 12명으로 5급 1명, 6급 4명, 7급 4명, 8급 1명, 9급 1명, 공무직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담당업무를 COFOG 기

준에 근거하여 분류해보면, 기능별로 일반공공행정 6명, 사회보호 1명, 보건 1명, 경제활동 3명, 환경보호 1명 등이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운영비를 ‘일반공공행정’으로 분류하여 집계(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청 등)하고 있는 반면 남원시 산하 면 단위 자치단체(아영면과 산내면)는 인력운영비를 ‘농림축산’으로 분류하고 있었다.³⁶⁾ 농림축산으로 분류할 경우 COFOG 지표는 ‘경제활동’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경제활동 기능에 과다 집계될 개연성이 있다.

의성군 안계면 공무원은 총 15명으로 6급 5명, 7급 6명, 8급 2명, 9급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인력운영비는 ‘일반공공행정’으로 분류하고 있다. 공무원의 담당업무를 COFOG 기준에 근거하여 분류해보면 일반공공행정 9명, 사회보호 2명, 경제활동 3명, 환경보호 1명이다. 다른 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공공행정에 인력운영비가 과다 계상될 개연성이 있다.

〈표 IV-17〉 의성군 안계면 담당업무별 기능 분류

직위	직급	담당업무	비고 (인터뷰 결과 종합)
면장	행정5급	면정전반	일반공공행정
부면장	행정6급	인사, 보안, 선거	일반공공행정
총무 재정	행정7급	회계, 물품관리, 선거보조	일반공공행정
	위생7급	공공일자리, 청사관리, 체송(행낭)	일반공공행정
	세무7급	재정(세무)업무, 주민등록 및 증명명	일반공공행정
	행정9급	일반사무, 기획, 통계	일반공공행정
주민 생활	농업6급	환경·새마을, 문화·관광, 옥외광고	환경보호 휴양·문화·종교
	사회복지8급	국민기초생활, 장애인복지, 긴급복지, 자활지원사업, 희망복지, 보호업무	사회보호
	사회복지9급	노인·여성·아동복지, 드림스타트, 노인대학, 장사업무, 다문화가정	사회보호
민원 관리	행정6급	민원관리전반, 가족관계등록, 결격사유조회, 인구동태	일반공공행정

36) FY2013 남원시 재무보고서

〈표 IV-17〉의 계속

직위	직급	담당업무	비고 (인터뷰 결과 종합)
산업 경제	농업6급	산업전반, 농정, 농지전용, 농지원부, 농지취득, 소재지정비사업	경제활동
	기능직 (사무운영7급)	축산, 주택, 건축, 산림, 생태공원관리	경제활동
	농업7급	지역경제, 교통, 상공, 가로등, 귀농귀촌, 유통, 마케팅, 과수, 환경농업, 민방위	경제활동
	농업7급	쌀사랑, 농자재, 특용작물, 산업건설	일반공공행정
	시설8급	건설행정, 도시행정, 도로건설(농로 등), 지역개발, 상·하수도, 하천방제, 재난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자료: 인터뷰자료에 근거하여 저자 작성

이러한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읍면 등의 경우 대부분 업무가 민원 등 서비스와 관련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일반공공행정’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정확한 통계 산출을 위해서는 COFOG 기능에 근거하여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수의 공무원이 실제 일반공공행정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이외의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소수임을 감안하면, 일괄적으로 인력운영비를 일반공공행정분야에 배분하는 것은 전체 통계를 왜곡하는 규모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확한 배분을 위해 면사무소 공무원을 일일이 인터뷰하여 정리해야 하는 데, 이는 실무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읍면 등의 필요에 의해 특정 부문으로 배분하는 것만 주의한다면, 읍, 면, 동 같은 지방자치단체 하부조직인 경우 인력운영비를 일반공공행정(701)분야로 분류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운영비를 일반공공행정(701)으로 집계하고 있어 ‘일반공공행정’이 과다하게 집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대구광역시 9.3%, 부천시 27%, 중구청 자치구 7.6%)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력운영비를 경제활동(704)으로 집계하고 있는 실정이다(남원시 아영면과 산내면). 따라서 다음의 사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호조(e-Hojo) 시스템에서 작성되는 통합재정통계 연차보고서³⁷⁾에서는 인력운영비가 일반공공행정으로만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인력운영비가 COFOG 기능별로 배분되어 자동집계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읍·면 등 행정구역의 경우, 대부분의 공무원이 민원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기능별 COFOG 지표를 분류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초 행정구역인 읍·면의 경우, 주로 민원을 담당하는 소수의 공무원임을 감안할 때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분류하는 것도 대안이다. 다만,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편성 시 인력운영비를 경제활동(704)으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정성호, 2015a).

3. 비영리공공기관 등 배분 방안

GFS 기준에 의하면 COFOG 지표 집계대상기관은 90개이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공공기관은 COFOG 기능별 지출규모액에 비례하여 기계적으로 안분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A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공공기관의 지출규모가 5,000억이라고 가정하면, 이 금액은 COFOG 10개 기능별 지출규모에 비례하여 안분되기 때문에(예를 들어 일반공공행정 5%: 250억원, ..., 사회보호 15%: 750억원) 지표의 정합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같이 기관의 주된 기능으로 지표를 집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부록 2 참조).

〈표 IV-18〉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COFOG 자료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제시하였고 한국은행의 통계자료와 비교하였다. 한국은행의 COFOG 통계자료와 GFS 기준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GFS 기준과 SNA 기준은 집계 방법에서 일부 차이가 있기

37) 연차보고서의 종류는 발생주의 기준에 근거한 통합재정통계양식을 의미한다. 그 구성은 정부운영표, 현금의 원천 및 사용표, 수익명세, 비용명세, 자산과 부채의 거래명세, 자산과 부채의 보유순의명세, 자산과 부채의 기타내용변화명세, 재정상태표, 정부지출의 기능별 분류(COFOG), 부문별 금융자산부채의 명세, 자산과 부채의 거래와 경제유량 등이다.

때문이다.

정부 기능별 총지출규모는 일반정부 단위가 약 10조원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일부 기능(예, 교육분야)은 약 10조원 적게 집계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한국은행은 학교회계(일선 학교의 회계, 현금주의 기준)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일반정부 통계자료는 교육비 특별회계(발생주의 기준)만을 집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후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표 IV-18〉 2013회계연도 COFOG 통계 규모

(단위: 십억원)

구 분	GFS 기준 시뮬레이션 결과		한국은행 통계
	지방자치단체	일반정부 전체	
총지출	167,892	463,269	453,991.4
일반공공행정	39,740	77,601	77,495.0
국방	—	32,985	35,368.8
공공질서 및 안전	2,652	17,163	18,239.9
경제	28,689	84,195	76,061.0
환경보호	11,761	13,754	10,764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	14,832	18,349	13,533.8
보건	2,961	48,788	55,159.4
휴양, 문화, 종교	6,835	9,936	9,821.5
교육	9,165	63,458	73,840.2
사회보호	51,253	97,036	83,70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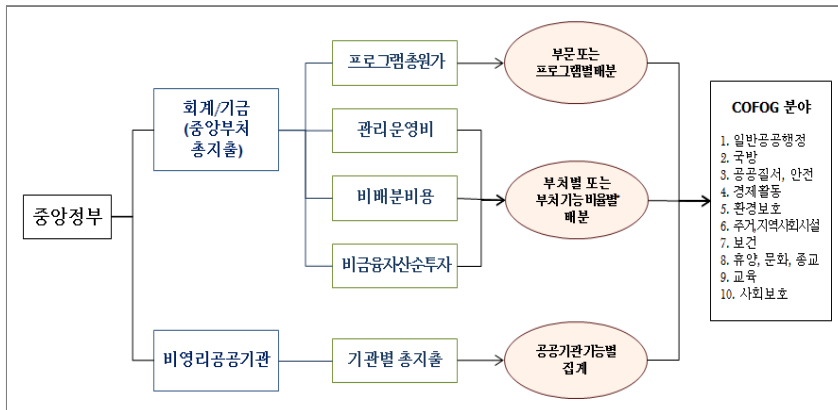
자료 : 1. 시뮬레이션 원천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내부자료.
 2.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at <http://ecos.bok.or.kr>(검색일자: 2015.10.28)
 3. 정성호 (2015a) p.50에서 재인용

4.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COFOG 지표 산출(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COFOG 지표 산출의 과정과 개선안은 [그림 IV-1], [그림 IV-2]에 제시되어 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COFOG 지표 산출 과정의 가장 큰 차이는 중앙정부의 경우는 프로그램 단위로 프로그램 총원가를 집계하고(부분으로도 집계 가능), 지방자치단체는

‘부문’ 단위로 프로그램 총원가를 집계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두 정부 간에 집계단위 및 과정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중앙과 지방의 기능 차이에서 비롯되었으나, 중앙·지방 간의 근본적으로 집계단위를 다르게 해야 하는 당위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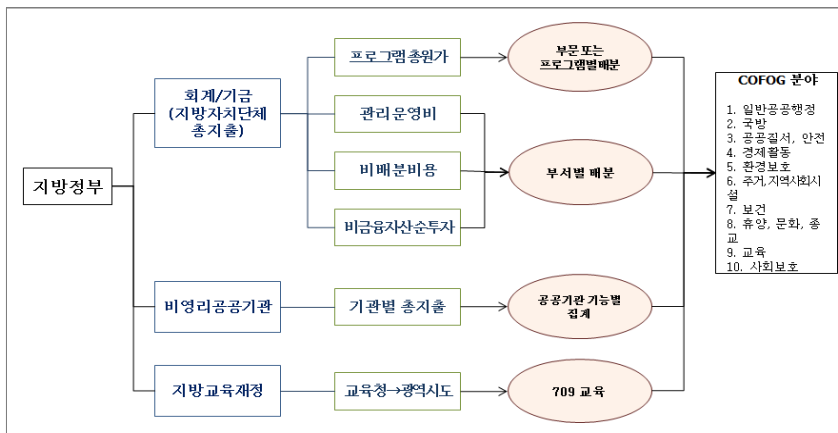
[그림 IV-1] 중앙정부 COFOG 지표 산출(안)



주: 부처 기능 비율별 배분은 각 부처의 프로그램 단위를 기준으로 COFOG 기능에 분류했을 때, 프로그램 총원가가 배분된 모든 기능에 비율별로 안분하는 것을 의미함

자료: 정성호(2015a) p.51에서 재인용

[그림 IV-2] 지방자치단체 COFOG 지표 산출(안)



자료: 정성호(2015a) p.51에서 재인용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COFOG 지표 산출의 과정과 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중앙정부의 경우 현재는 프로그램 단위로 프로그램 총원가를 집계하고, 관리운영비, 비금융자산순투자자는 소관부처 단위로 집계하며, 비배분비용은 일반공공행정으로 집계하며, 비영리기관은 분야별로 집계하고 있다.

대안으로서 프로그램별 총원가를 산출한 후 ‘부문’단위로 집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금융자산 순투자자는 부처 또는 부처 기능의 비율규모로 배분하여 집계하고, 비영리 공공기관은 주된 기능별로 집계할 필요가 있다(정성호, 2015a).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현재는 ‘부문’ 단위로 프로그램 총원가를 집계하고,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은 일반공공행정으로 집계하며, 비금융자산순투자자와 비영리기관별 총지출은 ‘분야’로 집계하고 있다.

대안으로서 현재와 같이 프로그램별 총원가를 산출한 후 부문단위로 집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금융자산 순투자자의 배분은 부서(기능)별로 집계할 것과 비영리 공공기관은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주된 기능으로 집계할 필요가 있다(정성호, 2015a). 현재 비영리 공공기관의 지출은 기능별 규모에 비례하여 기계적으로 안분하고 있는데 이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공공기관의 총지출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그 공공기관의 주된 기능으로 지표를 집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해서는 세밀한 분석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

또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이호조(e-Hojo)의 통합재정통계 연차보고서³⁸⁾에서 자동집계되는 COFOG 지표는 인력운영비가 일반공공행정(701)으로만 집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이호조(e-Hojo) 시스템에서 집계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38) 연차보고서의 종류는 발생주의 기준에 근거한 통합재정통계양식을 의미한다. 그 구성은 운영보고서, 현금의 원천 및 사용표, 수익명세, 비용명세, 자산과 부채의 거래명세, 자산과 부채의 보유손익명세, 자산과 부채의 기타내용변화명세, 재정상태표, **정부지출의 기능별 분류(COFOG)**, 부문별 금융자산부채의 명세, 자산과 부채의 거래와 경제유량 등이다.

V. COFOG 활용 방안

1. COFOG-K 운영(안)

대부분 국가에서 COFOG 10개 분야에 부합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특정 분야를 새로 설정하거나, 다른 분야에 포함시키는 등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체계를 설정하고 있다.

EU와 캐나다는 COFOG 10개 분야와 정확히 일치하는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EU는 다수의 국가별 통계를 산출하고 비교하기 위한 일관된 분류 체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소속 국가들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분류 체계를 설정하기보다, 국제기준으로 제시된 UN COFOG 체계를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고 있다.

반면, 호주의 경우는 기존 10개의 분류 체계에서 경제활동 분야의 한 부문인 ‘운송’을 추가적인 분야로 확대하여 설정하고 있으며, COFOG에서 운송부문을 구성하는 여러 등급(class)도 부문으로 한 단계 확대하여 설정하고 있다. 이는 매우 넓은 영토를 소유하고 있어 운송과 관련한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관리적 목적으로 운송을 별도의 분야로 설정하였으나, 국제기준의 COFOG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COFOG-A의 경제활동과 운송 두 분야를 단순히 합하면 되므로 통계 작성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적절한 체계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오히려 국제적인 COFOG 10개 기능보다 적은 9개의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환경보호분야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주거 및 지역사회 개발이나 경제활동에서 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UN COFOG에서 환경보호는 1999년도에 별도의 분야로 처음 설정하게 되었는데, 미국의 체계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환경보호분야가 주거 및 지역

사회개발, 경제활동 등의 분야에서의 정책목표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별도의 분야로 설정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며, 그러한 변화 이전에 구축된 통계와의 비교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표 V-1〉 국가별 COFOG 분류 체계 비교

구분 (GFS COFOG)	EU		호주		미국		캐나다	한국
	COFOG	SEEA	GPC	COFOG-A	NIPA	OMB	CCOFOG	COFOG
일반공공 행정 701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국방 702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공공질서 및 안전 703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사법행정 750	동일	동일
경제활동 704	동일	동일	동일 class 일부통 합 (9→6)	704 포괄	동일	동일	동일	동일
환경보호 705	동일	공해방지 7053 class 세분화 (1→4)	n/a	동일	n/a 주거 및 지역사회 서비스, 제활동 포함	n/a 자연자원, 환경, 지역사회· 지역개발 포함	동일	동일
주거 및 지역사회 개발 706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보건 707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휴양, 문화, 종교 708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교육 709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사회보호 710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기타 목적 714	운송 711				

주: 분야(Division): 705, 부문(Group): 7053, 등급(Class): 70531.
자료: 저자 작성

해외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리적 목적에 따라 국가적 특성을 반영한 COFOG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향후 통계의 활용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 다만 이러한 고유 체계를 설정함에 있어 국제기준으로 변환 시 작성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더욱 효율적인 체계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국제기준인 10개 분야 중 사회보호(710)분야에 대해 이를 적용할 만하다. 복지지출은 국회, 국민, 학계, 정책결정자 등 모두가 특히 많은 관심을 갖는 사안이므로 사회보호 중 일정 항목을 새로운 분야로 설정하는 이른바 COFOG-K를 제안한다.

COFOG에서 취약계층 등에 대해 지급되는 현금 및 현물 급여 지출이 사회보호분야로 분류되며, 그 하위 부문들은 질병 및 장애(7101), 노령(7102), 유족(7103), 가족 및 자녀(7104), 실업(7105), 주거(7106), 기타 미분류 사회적 배제(7107), 사회보호 R&D(7108), 기타 미분류 사회보호(7109)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SOCX를 포함한 일반적인 복지지출통계는 보건분야(707)와 이 사회보호분야(710)의 합으로 구해진다.

사회보호분야의 하위 부문들 중 노령부문(7102)에는 군인 및 정부 피용자에 대한 연금 제도가 포함된다. 따라서 프로그램예산체계 기준으로 공적연금부문(083)이 여기에 포함된다. 공적연금을 제외한 다른 사회보호 항목들은 국민 전체 중 취약계층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집단이 수혜를 받는 데 반해, 공적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공무원 등 지정된 특정 집단이 수혜자가 된다. 또한 이러한 공적연금은 피용자와 사용자 간의 임금협약의 일환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GFISM에서 일반적인 연금급여는 암묵적 우발부채로 취급하지만, 군인, 공무원 등의 연금수급권은 부채로 취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공적연금은 사회보호분야의 나머지 부문들과는 상이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복지지출로 간주되는 항목들과 공적연금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관리적 측면에서 유용할 것이다.

이렇게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입각하여 사회보호분야에서 공적연금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한 COFOG-K를 정리하면 <표 V-2>와 같다.

〈표 V-2〉 적용가능한 COFOG-K(안)

GFS COFOG	COFOG-K	비고
1. 일반공공행정	1. 일반공공행정	
2. 국방	2. 국방	
3. 공공질서 및 안전	3. 공공질서 및 안전	
4. 경제활동	4. 경제활동	
5. 환경보호	5. 환경보호	
6. 주거 및 지역사회개발	6. 주거 및 지역사회개발	
7. 보건	7. 보건	
8. 휴양, 문화, 종교	8. 휴양, 문화, 종교	
9. 교육	9. 교육	
10. 사회보호	10. 사회보호 - 질병 및 장애 - 노령 - 유족 - 가족 및 자녀 - 실업 - 주거 - 기타 미분류 사회적 배제 - 사회보호 R&D - 기타 미분류 사회보호	COFOG 노령부문에서 공적연금항목을 분리, 공적연금분야로 신설
-	11. 공적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운영	공무원·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프로그램예산체계의 공적연금부문 (083) 해당

자료: 저자 작성

2013회계연도의 GFS COFOG의 사회보호분야 지출액은 대략 97조이며, 이 중 공적연금과 관련된 지출은 74.0조로 76.3%에 해당하는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분야로 관리할 만한 규모임을 알 수 있다. 공적연금의 세부항목을 각각의 부문으로 설정할 경우 각 부문의 지출액과 비중은 〈표 V-3〉과 같이 나타난다.

〈표 V-3〉 FY2013 공적연금분야 지출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지출액	비중
사회보호 총지출(A)	97.0	—
공적연금 총지출(B=C+D) (비율(B/A×100))	74.0 (76.3)	100.0
중앙정부 지출(C=a+b+c+d)	74.0	
— 사립학교교직원연금(a)	2.2	3.0
— 군인연금(b)	8.2	11.1
— 공무원연금(c)	31.3	42.3
— 국민연금운영(d)	32.3	43.7
비영리공공기관 지출(D)*	—	—

주: 비영리공공기관 중 국민연금공단의 지출액(13.8조)은 사회보호분야 지출액에 포함되어야 하나, 중앙부처와 내부거래이므로 연결과정에서 전액 제거됨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사회복지지출 부문별 집행내역, pp.1058~1059.

다만, COFOG-K의 공적연금분야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COFOG 노령(7102)부문에서 일부 공적연금 항목을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작성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적연금과 관련한 지출은 중앙부처의 프로그램이 거의 전부를 차지(비영리공공기관 중 국민연금공단 지출액은 사회보호분야로 집계되나, 중앙부처와의 내부거래로 인해 연결과정에서 거의 제거됨)하고 있고, 프로그램예산체계 상에서도 사회복지분야(080)의 공적연금부문(083)에 바로 대응되므로 정부결산보고서에서 지출액을 쉽게 산출할 수 있다.

이러한 COFOG-K를 국제 기준 COFOG로 변환하는 경우, 공적연금분야를 사회보호분야(710)에, 또는 부문 기준으로는 노령부문(7102)에 합산하여 간단히 작성되므로 국제기구 제출 목적과 내부 관리적 목적에 따라 선택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COFOG 지표를 활용한 기능별 재정지출의 국제비교

EU는 특정 기능에 대한 지출 규모를 EU 회원국별 및 EU 평균에 대해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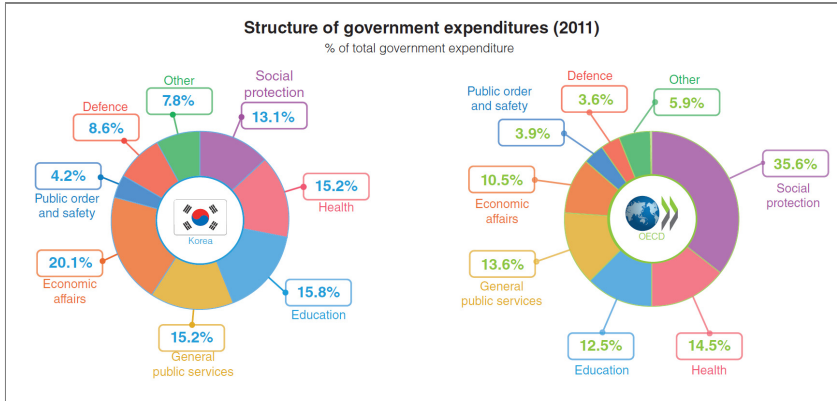
도별 GDP 대비 비율 등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EU에서는 회원국 간 주요 분야(예: 경제, 교육 등)별 및 부문별 비교 통계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그 외 통계지표의 원천은 물론 지표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 EU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활용가능한 일관된 분류기준을 제공하고 있고, 분류가 모호한 사례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른 국가와 달리 EU에서 기능별 분류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는 국가 간 비교 대상인 EU 회원국들이 유사한 역사적 배경과 사회·경제적 환경을 가지고 있어 의미 있는 비교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환류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EU가 회원국들에게 재정준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재정지출 규모에 대한 상한을 두는 재정준칙을 설정하고, 그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상황에서 각 회원국들은 상대적으로 기능별 실링 및 지출 규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전략적 검토(strategic review)나 사업평가(evaluation) 등의 성과평가와 함께 재정운영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호주 및 캐나다 등 주요국의 경우 국제비교를 위해 가장 최근 버전인 GFSM 2014의 COFOG 분류기준을 도입했거나 곧 도입할 예정이다. 내부 관리적 목적으로는 각 국가의 특성에 맞춘 고유의 COFOG(호주: COFOG-A, 캐나다: Canadian COFOG)를 개발하여 활용하지만, 국제적 기준에 맞는 COFOG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다.

이와 같이 COFOG 분류에 기초한 기능별 정부지출 통계는 정책결정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아래 그림 [V-1]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경제활동, 교육, 보건, 일반공공행정 순으로 재정을 지출하고 있다(정성호, 2015a).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사회보호, 보건, 일반공공행정, 교육 순이다. 한국은 경제활동과 교육에 많은 지출하고 있으나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사회보호, 복지 등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

[그림 V-1] 우리나라와 OECD의 정부지출 구조 비교(2011년도)



자료: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3 at http://www.oecd.org/gov/GAAG2013_CFS_KOR.pdf
(검색일자: 2015.10.28); 정성호 (2015a), p. 53에서 재인용

3. COFOG-K 지표를 활용한 기능별 재정지출추이 분석

국제비교 목적의 COFOG를 내부 관리 및 분석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COFOG-K(안)을 앞 절에서 제안하였다. 따라서 COFOG-K 지표를 활용하여 내부 통제 목적의 기능별 지출 추이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COFOG-K는 정부지출 규모를 파악하여 정책결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것이므로 관리적 측면에서 기존 COFOG 보다 적합하다. COFOG는 정부가 제공하는 개인적 서비스(individual services)와 집단적 서비스(collective services)³⁹⁾로 구분되며, 기능별 정부지출(government outlays)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GFSM, 2014).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정보에 근거하여 COFOG-K 통계를 작성, 공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EU의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동종 지방자치단체 기능별 재정지출규모를 비교·분석할 필요도 있다. 이를 통해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고 있는 재정정책의 방향성

39) 일반적으로 보건(705)의 7075~7079, 휴양·문화·종교(708)의 7083~7086, 교육(709)의 7097~7098, 사회보호(710)의 7108~7109와 같은 일반공공행정(701)~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706)의 모든 서비스를 의미한다(GFSM, 2014, 제6장).

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구청의 경우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EU, 호주 등의 경우와 같이 COFOG 지표 작성 기준(매뉴얼)을 명확히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4. 재정전략 수립 및 전략 검토

GFS 체계는 발생주의 기준을 기반으로 정보를 산출하게 된다. 따라서 수익 및 비용 등 재정성과, 자산 및 부채 등의 재정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미래 위험요인 식별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제공된다. 특히, COFOG-K 통계는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 수립 및 전략적 자원 배분 등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정성호, 2015a).

우리나라는 현행 중기재정운용체계(Mid-Term Expenditure Framework)로서 당해 연도를 포함한 5개 연도의 재정 총량, 분야별 자원배분 전략 등을 제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매년 수립·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작성하는 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전망치가 수정되는 등 재정운용의 실효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라는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⁴⁰⁾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중기재정전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재정운용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의 재원을 투입할 것인가 하는 재정전략수립을 위한 기초 정보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분야별 성과정보, 원가정보, 정책적 우선 순위 등이 될 것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원가정보도 세출결산액이 종종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발생주의 회계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에서 현금주의 정보만을 의사결정에 이용한다면, 발생주의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COFOG-K 통계는 발생주의 기준의 결산 정보이므로 이러한 한계를 해결할 수 있다(정성호, 2015a).

40) 국회예산정책처,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2013.11, p.113.

그러므로 발생주의 기준의 성과정보와 원가정보를 활용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은 현 시점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전략 검토(Strategic Review)라 명명되는데, 전략 검토는 3~5년 주기로 정부재원 배분의 효과성, 효율성, 지속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기 재정운용 전략 수립에 환류할 수 있다.

정부부문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는 지금까지 단위사업(관리과제)의 성과평가 위주로 시행해 왔으나, 분야별 정책목표와의 연계성, 방향성 등을 분석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 미국의 경우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평가에서 분야(부처)별 상위 목표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성과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좀 더 상위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분석할 수 있는 전략 검토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체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COFOG 지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발생주의 기준의 결산정보를 활용하여 COFOG 지표를 산출함에 있어 현존하는 한계를 논의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맞게 제안된 COFOG-K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는 정부의 정책수립 및 결정과정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유용한 통계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Ⅵ.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 연구결과 종합 및 정책제언

지금까지 본 보고서는 정합성 있고 국제비교가 가능한 COFOG의 개념과 추이를 살펴보고 해외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표산출 및 공식 발표를 제안하고 이의 활용을 위한 대안인 COFOG-K(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이 지표를 공식산출하지 못하는 현존하는 산출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해결방안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디브레인(d-Brain)시스템과 이호조(e-hojo) 시스템상 집계는 물론 통계 로직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COFOG 지표의 공식작성을 전제로 정합성이 보장된 COFOG 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였고 이를 위해 지표 산출간 다양한 한계를 논의하고 그 대안을 논의하였다. 이런 논의의 과정에서 얻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정합성을 가진 COFOG 지표를 산출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재정상황뿐만 아니라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결산자료인 COFOG 지표의 국제 비교는 기능별 재정배분과 관련된 정부 재정정책결정 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과 유동성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둘째, COFOG의 내부 관리적 활용을 위해 COFOG-K(안)를 제안한다. 최근 사회현상을 반영해서 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을 위해 사회보호(710)분야 중 노령(7102)부문에서 공적연금을 분리하여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내부관리목적의 COFOG-K(안) 지표를 활용하여 기능별 재정지출추

이를 분석함과 동시에 재정정책 수립 및 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발생주의 기준으로 작성되는 원가정보 등은 효율적인 재원배분의 정책결정자료 활용이 가능 할 것이다. 특히 공적연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사회보호(710)분야의 정부지출 통계는 복지 관련 정책결정시 필요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위에 제시한 시사점 외에도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공식적인 COFOG의 통계작성을 전제로 현행 예산 프로그램체계를 개편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COFOG 통계 산출 과정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COFOG 지표를 작성할 경우 중앙정부는 ‘부문’이나 ‘프로그램’ 단위로 COFOG 지표를 집계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부문’ 단위의 COFOG 지표를 산출하고 있는데, 통계의 작성단위를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실무적인 문제로 개편이 어려울 경우 단기적으로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COFOG을 작성하기 위해 다음 내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동일한 ‘부문’ 단위에 기초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COFOG 지표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앙정부는 ‘부문’이나 ‘프로그램’ 단위로 지표산출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부문’ 단위로 지표를 산출하고 있다. 더불어 예산편성과 결산의 연계를 위해 부문코드(등급코드 5자리)를 추가하여 집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예산편성 시 ‘부문2’(〈표 IV-8〉 참조)를 추가함과 동시에 결산 시에도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정성호, 2015a).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경우 프로그램별 총원가를 산출한 후 ‘부문’단위로 집계하고, 관리운영비 등은 부처별 또는 부처의 기능별 비율로 배분하여 집계하며, 비영리공공기관은 현재와 같이 그 공공기관의 주된 기능으로 집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프로그램별 총원가를 산출한 후 부문단위로 매핑하고, 관리운영비 등은 부서별로 배분하여 집계하고, 비영리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주 기능별로 집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공공기관은 그 기관의 주된 기능으로 지표를 집계하더라도, 이에 관한

타당성은 다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중앙정부는 COFOG 지표를 수작업으로 산출하고 있는데, 디브레인(d-Brain)시스템에서 지표가 자동 집계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호조(e-Hojo)에서 지표를 자동 집계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정성호, 2015a). 예컨대, 인력운영비는 이호조(e-Hojo)시스템에서 일반공공행정(701)으로만 집계되는데, COFOG 기능(701~710)별로 자동 집계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일부 읍·면의 경우 관리운영비가 경제활동(704)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결과이다. 따라서 이를 제어하기 위한 대안차원에서 행정자치부 등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COFOG 지표의 공식작성을 전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다양한 대안 및 그 활용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운영비가 일반공공행정으로 과다하게 집계되는 한계를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공공기관의 지출은 그 기관의 주된 기능으로 지표를 집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비영리공공기관의 기능이 중복될 경우 기능별 지출규모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으므로 추후 세부적인 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제안한 정합성이 보장된 COFOG 지표의 공식산출 및 발표를 위해서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지표의 산출은 하나의 정부단위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 및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여러 기관의 정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집계단위 및 체계, 디브레인(D-brain)시스템과 이호조(e-hojo)시스템상 집계체계, 국제보고서 GFS 기준(IMF)과 SNA 기준(OECD)의 적용에 따른 COFOG 지표의 차이 표시 등의 점검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일관성을 도모하고 자의성을 배제하는 노

력이 필요하다. 이에 여러 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기적인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회예산정책처,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2013.11, p.113
- 고경환·장영식·강지원·서문희·이규용·김지옥·윤상용, 『2012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 기획재정부,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13, p. 251.
_____, 내부자료.
- 남원시, 『2013회계연도 이호조시스템 연차보고서』, 2014.
_____,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 2014.
_____, 아영면 및 산내면 공무원 담당업무 인터뷰, 2015.
- 대구광역시, 『2013회계연도 이호조시스템 연차보고서』, 2014.
- 대구광역시 중구청, 『2013회계연도 연차보고서』, 2014.
- 대한민국 정부,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14.
_____, 『2013회계연도 성과보고서(각 부처)』, 2014.
_____, 『2013회계연도 부처별 결산보고서』, 2014.
_____, 『2013회계연도 성과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2014.
_____, 『2013회계연도 성과보고서(국토교통부)』, 2014.
_____, 『2014회계연도 부처별 성과계획서』, 2014.
- 부천시, 『2013회계연도 이호조시스템 연차보고서』, 2014.
- 의성군, 안계면 공무원 담당업무 인터뷰, 2015.
- 임성일, 「사회복지 수요증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대응전략; 사회복지재정의 환경변화에 따른 중앙, 지방정부간 재정관계 재정립」, 『지방재정』, 한국지방정부학회, 2007(2), pp.70~94.
- 정성호, 「정부기능분류의 공식작성 및 활용을 위한 제언」, 『재정포럼』, 2015a. 10월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p.31~59.

_____, 「정부기능별 분류(COFOG)에 따른 자원산출의 합리적 대안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논집』, 20(2), 2015b, 한국지방재정학회, pp.71~103.

한국은행, 2013년 국민계정(확정), 2015, pp.66~6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COFOG 관련 내부자료, 2015.

행정자치부, GFS COFOG 매핑 수정자료.

Adema, W., P. Fron, and M. Ladaique, “Is the European Welfare State Really More Expensive?,”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24, 2011.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mendments to Australian System o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Information Paper, 2012.

_____, Australian System o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Concepts, Sources and Methods, 2015.

Donath, L., & Milos, M., “Public sector efficiency according to COFOG classification in the European Union,” MPRA Paper, 2008.

EC, IMF, OECD, UN & World Bank,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

Eurostat, “Manual on sources and methods for the compilation of COFOG Statistics,” Methodologies and working papers, 2011.

_____, “EU-27 Government expenditure on economic affairs stable at 4.1% of GDP in 2012 compared with 2011,” *Statistics in Focus*, 6/2014.

_____, “Government expenditure on education as a ratio to GDP continued to fall in 2012,” *Statistics in Focus*, 5/2014.

Freysson, L. and L. Wahrig,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 in 2011—Focus on the functions ‘social protection’ and ‘health’,” *Statistics in Focus*, 9/2013, pp.1~8.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11.

_____,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14.

Izák, V., “Government Expenditures and Taxes Influence on the Economic Growth (Empirical Analysis),” *Politická ekonomie*, 2011(2), pp. 147~163.

Szarowska, I., “Public spending and Wagner’s law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MPRA Paper, 2012.

Szarowská, I.,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spending and economic growth in the Czech Republic,” *ACTA Universitatis Agriculturae et Silviculturae Mendelianae Brunensis*, 59(7), 2014, pp.415~422.

Tsouhrou, A. and J. Mylonakis, “Public Expenditure, Public Sector Size and Growth: The European Union Marked Structural Differences,” *Review of European Studies*, 3(2), 2011, pp.33~51.

〈웹사이트〉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알리오시스템 자료, <http://www.alio.go.kr/>,
검색일자 2015.10.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검색일자: 2015.10.28.

한국은행,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at <http://ecos.bok.or.kr>.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3,” 2013,
at http://www.oecd.org/gov/GAAG2013_CFS_KOR.pdf, 검색일자: 2015.10.28.

OECD, “Social Expenditure- Aggregated data”
at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EX_AGG, 검색일자: 2015.10.28.

Statistics Canada, “Canadian Classification of Functions of Government, 2008 to 2012,” 2014, <http://www.statcan.gc.ca/daily-quotidien/141126/dq141126b-eng.htm>, 검색일자: 2015.10.28.

Statistics Canada, “Canadian Classification of Functions of Government(CCOFOG) 2014,” 2014, <http://www23.statcan.gc.ca/imdb/p3VD.pl?Function=getVD&TVD=201435&CVD=201436&CPV=7&CST=01011960&CLV=1&MLV=4>,
검색일자: 2015.10.28.

U.S. Department of Commerce, Government Spending by Function: A
New Presentation, the June 2000 SURVEY OF CURRENT BUSINESS, 2000.
at https://bea.gov/scb/account_articles/national/0600gf/maintext.htm,
검색일자: 2015.10.28.

부 록

[부록 1] 중앙정부 부처별 기능 분류

부처명	분야	부문	프로그램	COFOG 분류
감사원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감사활동 및 행정지원	701 일반공공행정
경찰청	공공질서및안전	경찰	범죄예방 및 사회적약자보호	703 공공질서 및 안전
			회계기금 간 거래(공무원연금부담금)	710 사회보호
고용 노동부	사회복지	노동	고용평등실현	704 경제활동
			장애인고용증진	
			노사정책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국제고용노동협력	
			고용노동행정지원	
			지방고용노동행정	
			고용노동행정지원(차입금이자)	
			회계기금 간 거래(전출금)	
			기금 간 거래(전출금)	
			기금 간 거래(예탁금)	
			기금 간 거래(예수원금상환)	
			기금 간 거래(예수이자상환)	
	사회복지	노동	여유자금운용	710 사회보호
			차입금원금상환	
			고용정책	
			직업능력개발	
			산재보험	
			산업재해예방	
			중소기업경쟁여건개선	704 경제활동
공정 거래 위원회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소비자후생증진	
			공정거래행정지원	
			경쟁촉진	701 일반공공행정
			회계기금 간 거래	
			회계기금 간 거래(예수원금상환)	

[부록 1]의 계속

부처명	분야	부문	프로그램	COFOG 분류
관세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수출입통관	704 경제활동
			관세심사	701 일반공공행정
			정보화 및 국제협력	
			관세행정지원	
			밀수감시단속	703 공공질서 및 안전
			지역균형발전	706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
교육 과학 기술부	과학기술	과학기술 연구지원	과학기술기반조성	701 일반공공행정
			과학기술인력양성	
			과학문화창달	
			과학기술국제협력	
			출연연구기관지원	
			기금 간 거래(예수이자상환)	
			여유자금운용	
		과학기술일 반	국립중앙과학관운영	
			국립과천과학관운영	
			회계 간 거래	
			회계기금 간 거래(예수원금상환)	
			회계기금 간 거래(예수이자상환)	
			회계기금 간 거래	
			계정 간 거래	
		기술개발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기초연구진흥	
			거대과학기술개발	
			여유자금운용	
			원자력안전	704 경제활동
			원자력진흥	

[부록 1]의 계속

부처명	분야	부문	프로그램	COFOG 분류
	교육	고등교육	대학교육역량강화	709 교육
			학술연구역량강화	
			한국사연구진흥	
			맞춤형국가장학제도기반조성	
			국립대학운영지원	
			기금운영비	
			회계기금 간 거래(전출금)	
			회계기금 간 거래(예수원금상환)	
			회계기금 간 거래(예수이자상환)	
			기금 간 거래(예수원금상환)	
			기금 간 거래(예수이자상환)	
			여유자금운용	
			대학교육역량강화(기금,용자)	
		교육일반	교육과학기술행정지원	
		유아및초중 등교육	학교교육내실화	
			교육복지증진	
			학교교육재정지원	
			학교교육활성화	
			회계기금 간 거래(전출금)	
		평생·직업 교육	인적자원정책기반강화	
			평생직업교육체제구축	
			국제교육협력증진	
			국립국제교육원지원	
			산학연협력활성화	
			정보활용활성화지원	

[부록 1]의 계속

부처명	분야	부문	프로그램	COFOG 분류
	사회복지	공적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운영비	710 사회보호
			여유자금운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운용	
			사립학교교직원연금등지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운용 (기금용자)	
국가 과학 기술 위원회	과학기술	과학기술연구 구지원	과학기술연구지원	701 일반공공행정
			과학기술종합조정	
			과학기술진흥기금운영비	
			과학기술운영지원	
국가 보훈처	사회복지	보훈	보훈심사 및 보상	710 사회보호
			보훈단체지원	
			보훈의료복지	
			생활안정지원	
			기금증식	
			보훈선양	
			국립묘지	
			제대군인지원	
			보훈행정	
			회계기금 간 거래	
			기금 간 거래(전출금)	
			여유자금운용	
인권위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인권보호 및 향상	701 일반공공행정
국정원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국가정보지원	701 일반공공행정
국무 조정실	일반공공행정	국정운영	정부출연연구기관지원(R&D)	701 일반공공행정
			국무총리실행정지원	
		일반행정	특임장관실행정지원	
		국정운영	KDI대학원연금기금국가부담금지원	710 사회보호

[부록 1]의 계속

부처명	분야	부문	프로그램	COFOG 분류
권익위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국민권익증진	701 일반공공행정
국방부	국방	병력운영	급여정책	702 국방
			급식및피복	
			회계기금 간 거래(전출금)	
		전력유지	국방정보화	
			군수지원 및 협력	
			군인사 및 교육훈련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예비전력관리	
			국방홍보원운영	
			군책임운영기관	
			군사시설이전사업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국방행정지원	
			회계기금 간 거래(전출금)	
			회계기금 간 거래(공적자금예탁)	
			회계기금 간 거래(예수이자상환)	
			여유자금운용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707 보건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용자)	
	사회복지	공적연금	군인연금(연금정책)	710 사회보호
			군인연금기금(기금운영비)	
국세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과세기반확충	701 일반공공행정
			탈세대응강화	
			체납·징수관리	
			성실납세 및 민생지원	
			국세행정지원	

[부록 1]의 계속

부처명	분야	부문	프로그램	COFOG 분류
국토 교통부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국토해양행정지원	704 경제활동
		도로	고속도로건설	
			국도건설	
			도로관리	
			민자도로건설 및 관리	
			지자체도로건설지원	
			회계 간 거래(전출금)	
			공자기금예탁(도로계정)	
		도시철도	도시철도건설	
			도시철도경영개선지원	
			회계 간 거래(전출금)	
			회계기금 간 거래(예수원금상환)	
			회계기금 간 거래(예수이자상환)	
		물류 등 기타	해양정책 및 영토관리	
			2012여수세계박람회개최	
			물류정책	
			국토해양연구개발	
			국토해양정보화	
			건설정책지원	
			국토해양인재개발	
			건설기술정책	
			기업형책임운영기관운영 (대산지방해양항만청)	
			물류정책	
			행정형책임운영기관운영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계정 간 거래(전출금)	

[부록 1]의 계속

부처명	분야	부문	프로그램	COFOG 분류
		철도	고속철도건설	
			일반철도건설	
			철도안전 및 운영	
			광역철도건설	
			회계 간 거래(전출금)	
			회계기금 간 거래(예수원금상환)	
			회계기금 간 거래(예수이자상환)	
			공자기금예탁(철도계정)	
		항공·공항	일반공항건설 및 관리	
			항공발전지원	
			항공운영지원	
			계정간거래(전출금)	
		해운·항만	항만개발 및 관리	
			주요항 및 일반항건설	
			항만운영 및 해상운송	
			해운사업선진화	
			해양및해상교통안전관리	
			해양 및 해상교통관리	
			행정형기관운영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회계 간 거래(전출금)	
	국토 및 지역개발	산업단지	산업단지개발 및 지원	
		수자원	용수공급 및 개발	
			수자원정책	
			댐건설 및 댐치수능력증대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부록 1]의 계속

부처명	분야	부문	프로그램	COFOG 분류
		지역 및 도시	지역개발	706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
			도시정책	
			국토정보관리	
			국토지리정보원운영	
			회계 간 거래(전출금)	
			회계기금 간 거래(예수이자상환)	
	사회복지	주택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710 사회보호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기금운영비)	
			내부거래지출	
			회계기금 간 거래(예수원금상환)	
			회계기금 간 거래(예수이자상환)	
			기금 간 거래(전출금)	
			기금 간 거래(예수원금상환)	
			기금 간 거래(예수이자상환)	
			여유자금운용	
			차입금 등 원금상환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융자)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구입·전세자금융자)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임대주택융자)	
	교통 및 물류	도로	회계기금 간 거래 (공무원연금부담금)	703 공공질서 및 안전
		물류 등 기타	회계기금 간 거래 (공무원연금부담금)	
			광역교통정책	
			자동차 및 교통정책	
			대중교통육성	
	환경	해양환경	해양환경보전	705 환경보호

[부록 1]의 계속

부처명	분야	부문	프로그램	COFOG 분류
국회	일반공공행정	입법 및 선거관리	의정활동지원	701 일반공공행정
			국회사무처운영	
			국회도서관운영	
			예산정책처운영	
			입법조사처운영	
			국회행정지원	
금융 위원회	농림수산	농업·농촌	농어민금융지원	704 경제활동
			기금운영비	
			여유자금운용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금융 지원	산업금융지원	
			기금운영비	
			일반회계전출금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	
			여유자금운용	
	사회복지	주택	주택금융지원	710 사회보호
			기금운영비(주택신용보증기금)	
			차입금원금상환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금융정책	701 일반공공행정
			금융서비스	
			금융정보분석	
			금융행정지원	
			회계기금 간 거래(전출금)	
			회계기금 간 거래(예수원금상환)	
			회계기금 간 거래(예수이자상환)	
			기금 간 거래(전출금)	
			차입금원금상환	

[부록 1]의 계속

부처명	분야	부문	프로그램	COFOG 분류
기상청	과학기술	과학기술 일반	기상예보	704 경제활동
			기상관측	
			기후변화과학	
			기상산업정보	
			기상연구	
			기상행정지원	
			책임행정기관운영	701 일반공공행정
기획 재정부	공공질서 및 안전	경찰	공용재산취득(행정안전부)	703 공공질서 및 안전
			공용재산취득(경찰청)	
		법무 및 검찰	공용재산취득(법무부)	
		법원 및 한재	공용재산취득(대법원)	
		재난관리	공용재산취득(소방방재청)	
		해경	공용재산취득(해양경찰청)	
		재난관리	복권기금운영(재해재난긴급구호)	710 사회보호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자활서비스지원	
		보육 · 가족 및 여성	가족기능강화	
			가족기능강화	
			민간보육시설지원	
		보호	공용재산취득(국가보호처)	
			복권기금운영(보호복지법정지원)	
		사회복지일반	복권기금운영(사회복지법정지원)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장애인생활안정지원	
			복권기금운영(취약계층지원)	
	교육	유아 및 초중등교육	공용재산취득(교육과학기술부)	709 교육

[부록 1]의 계속

부처명	분야	부문	프로그램	COFOG 분류
	국방	병무행정	공용재산취득(병무청)	702 국방
	농림수산	임업·산촌	공용재산취득(산림청)	705 환경보호
	문화및관광	문화재	공용재산취득(문화재청)	708 휴양문화종교
	보건	보건의료	공용재산취득(보건복지부)	707 보건
	과학기술	과학기술일반	공용재산취득(기상청)	704 경제활동
	교통 및 물류	물류등기타	사회기반시설민자사업지원	
			기금운영비	
			공용재산취득(국토해양부)	
			사회기반시설민자사업지원	
			여유자금운용	
	농림수산	농업·농촌	공용재산취득(농림수산식품부)	
			공용재산취득(농촌진흥청)	
		임업·산촌	복권기금운영(산림환경법정지원)	
	사회복지	노동	공용재산취득(고용노동부)	
	외교·통일	외교·통상	대외경제협력지원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경제정책	
			경제협력	
	통신	방송통신	공용재산취득(방송통신위원회)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701 일반공공행정
	외교·통일	외교·통상	공용재산취득(외교통상부)	
			기금운영비	
		통일	공용재산취득(통일부)	
		일반행정	공용재산취득(감사원)	
			공용재산취득(행정안전부)	
			공용재산취득(통계청)	
		입법 및 선거관리	공용재산취득(국회)	
			공용재산취득(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록 1]의 계속

부처명	분야	부문	프로그램	COFOG 분류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공공자금관리	
			정부위원회	
			정책조정	
			국유토지비축(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고관리	
			재정정책	
			재정운용	
			공공정책	
			재정관리	
			국제금융	
			기금운영비	
			공용재산취득(국세청)	
			공용재산취득(관세청)	
			복권기금운영(일반)	
			저축은행구조조정지원	
			통합시설	
			기획재정행정지원	
			회계기금 간 거래(예탁금)	
			기금 간 거래(예탁금)	
			기금 간 거래(예수원금상환)	
			기금 간 거래(예수이자상환)	
			계정 간 거래(예탁금)	
			계정 간 거래(예수원금상환)	
			계정 간 거래(예수이자상환)	
			여유자금운용	
		지방행정·재정지원	복권기금운영(지자체법정지원)	

[부록 1]의 계속

부처명	분야	부문	프로그램	COFOG 분류
농림 수산 식품부	농림수산	농업 · 농촌	농가경영안정	704 경제활동
			농어업경영체육성	
			농수산인력양성	
			양곡관리	
			친환경농업육성	
			농식품기술개발정책연구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경쟁력제고	
			축산업진흥	
			농업생산기반확충	
			농어업인복지증진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활성화	
			농업농촌정보화	
			국제협력협상	
			농산물품질관리	
			농업연수	
			가축방역검역	
			식물검역	
			종자관리	
			농수산식품연수	
			검역검사 R&D 및 정보화	
			농수산행정	
			기관운영 및 사업지원	
			회계 간 거래(전출금)	
			회계기금 간 거래(전출금)	
			회계기금 간 거래(예수원금상환)	
			회계기금 간 거래(예수이자상환)	
			기금 간 거래(예수원금상환)	
			기금 간 거래(예수이자상환)	
			계정 간 거래(전출금)	

[부록 1]의 계속

부처명	분야	부문	프로그램	COFOG 분류
		수산·어촌	기금 간 거래(예탁금)	
			수산물유통 및 안전관리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	
			어촌, 어항개발	
			수산경영	
			원양협력	
			수산연구(수산과학원)	
			수산물품질관리	
			어업지도관리	
			기금운영비(수산)	
			회계기금 간 거래(전출금)	
			기금 간 거래(예수이자상환)	
			여유자금운용	
		식품업	식품산업육성	
		농업·농촌	농지은행(농지, 융자)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융자)	
			경쟁력제고(기금, 융자)	
			축산업진흥(축발, 융자)	
		식품업	식품산업육성(융자)	
		임업·산촌	국립자연휴양림기반조성	705 환경보호
농촌 진흥청	농림수산	농업·농촌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기술개발	704 경제활동
			농축산물경쟁력제고기술개발	
			농업신기술보급	
			지역농업특성화	
			농가경영능력향상	
			전문인력양성	

[부록 1]의 계속

부처명	분야	부문	프로그램	COFOG 분류
대법원	공공질서 및 안전	법원 및 현재	재판활동종합지원	703 공공질서 및 안전
			법원시설확충 및 유지보수	
			법원도서관	
			회계 간 거래(전출금)	
			내부거래지출	
대통령실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대통령실운영	701 일반공공행정
			대통령실국정지원	
			대통령 및 국가요인경호	
문화재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문화재정책기반구축	708 휴양문화종교
			문화유산교육연구	
			문화재보존관리	
			궁능원관리	
			문화재보호	
			문화재연구소운영(R&D)	
			문화자원개발	
			문화재국제교류	
			문화재활용	
			문화재행정지원	
			회계기금 간 거래(전출금)	
			여유자금운영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국정홍보기획	701 일반공공행정
		관광	관광진흥기반확충	704 경제활동
			관광산업육성	
			외래관광객유치	
			관광산업기금융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운영	
			기금 간 거래	
			관광레저도시육성	706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
		문화예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부록 1]의 계속

부처명	분야	부문	프로그램	COFOG 분류
		문화 및 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708 휴양·문화·종교
			기금운영비	
			여유자금운용	
		문화예술	종교문화지원	
			콘텐츠산업육성	
			건강한저작권생태계조성	
			문화미디어산업육성 및 지원	
			창의적문화정책구현	
			예술의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	
			국가브랜드위원회운영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운영	
			예술원지원	
			국립박물관운영	
			국립국어원운영	
			국립중앙도서관운영	
			해외문화홍보원운영	
			국립중앙극장운영	
			국립현대미술관운영	
			국립국악원운영	
			국립민속박물관운영	
			한국정책방송원운영	
			회계 간 거래(전출금)	
			회계기금 간 거래(전출금)	
			기금 간 거래	
		체육	생활체육육성	
			전문체육육성	
			스포츠산업육성 및 국제교류	

[부록 1]의 계속

부처명	분야	부문	프로그램	COFOG 분류
		문화예술	한국예술종합학교운영	709 교육
			국립국악중고운영	
			국립전통예술중고운영	
			회계기금 간 거래(공무원연금부담금)	710 사회보호
		체육	장애인체육육성	
미래 창조 과학부	과학기술	과학기술 일반	과학기술종합지원	701 일반공공행정
		기술개발	원자력연구개발기금운영비	704 경제활동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방송통신융합촉진	708 휴양문화종교
			전파방송산업기반조성	
			방송진흥기반구축	
			방송인프라개선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통신	방송통신	방송통신연구개발기반조성(R&D)	
민주 평통	외교·통일	통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운영	701 일반공공행정
방송 통신 위원회	통신	방송통신	통신서비스고도화	704 경제활동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	
			네트워크고도화	
			네트워크고도화	
			정보보호강화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방송진흥기반구축(용자)	708 휴양문화종교
			방송통신발전기금운영비	
			내부거래지출	
			여유자금운용	
	통신	방송통신	방송통신융합촉진	
			방송인프라개선	
			전파방송산업기반조성	
			전파관리 및 연구기반확충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방송통신행정지원	

[부록 1]의 계속

부처명	분야	부문	프로그램	COFOG 분류
방위 사업청	국방	방위력개선	지휘통제통신사업	702 국방
			기동전력사업	
			함정사업	
			항공기사업	
			화력탄약사업	
			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	
			정밀타격/신폭수무기사업	
			국방연구개발사업	
			성능개량사업	
			방위사업종합지원	
			내부거래지출	
법무부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 및 검찰	법무활동	703 공공질서 및 안전
			인권활동	
			출입국관리	
			검찰활동	
			교정활동	
			범죄예방활동	
			법무시설조성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기금운영비	
			기금전출금(예수원금상환)	
			기금전출금(예수이자상환)	
			여유자금운용	
			법무교육훈련	709 교육
			범죄피해자보호기금전출금	710 사회보호
법제처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정부입법역량강화	701 일반공공행정
			법제행정지원	

[부록 1]의 계속

부처명	분야	부문	프로그램	COFOG 분류
병무청	국방	병무행정	병역자원선발	702 국방
			병역자원충원	
			보충역복무지원	
			병무행정지원	
보건 복지부	사회복지 보건	노인·청소년	노인일자리	704 경제활동
		건강보험	건강보험제도운영	707 보건
		보건의료	공공보건의료확충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보건산업육성	
			한의학연구 및 정책개발	
			국민건강생활실천	
			암및희귀질환지원	
			정신질환관리	
			국립서울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구강보건사업지원	
			보건의료서비스지원	
			소록도병원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질병관리본부지원	
			응급의료기금기금운영비	
			회계 간 거래	
			회계기금 간 거래	
			회계기금 간 거래	
			기금 간 거래	
			계정 간 거래	
			여유자금운용	

[부록 1]의 계속

부처명	분야	부문	프로그램	COFOG 분류
	사회복지	노인·청소년	노인의료보장	710 사회보호
		사회복지 일반	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	
		사회복지 일반	국민건강증진기금기금운영비	
	보건	보건의료	취약계층의료비지원	
	사회복지	공적연금	국민연금운영	
			국민연금기금기금운영비	
			국민연금운영 (여유자금운영위탁등)	
			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	
			회계기금 간 거래	
		기초생활 보장	기초생활보장	
		노인·청소년	아동·청소년정책	
			노인생활안정	
			장사시설확충	
		보육·가족 및여성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지원	
			보육지원강화	
			회계 간 기금 간 거래	
		사회복지 일반	사회복지기반조성	
			일반사회복지행정지원	
		취약계층 지원	요보호아동보호육성	
			아동복지지원	
			장애인재활지원	
			국립재활원	
			부랑인의사상자지원	
			회계 간 거래	
			회계기금 간 거래	
			계정 간 거래	

[부록 1]의 계속

부처명	분야	부문	프로그램	COFOG 분류
산림청	농림수산	임업·산촌	산림과학기술개발(국립산림과학원)	704 경제활동
			산림자원이용	
			산림자원보호	
			산림행정지원	
			회계 간 거래	
			회계기금 간 거래	
			계정 간 거래	
			기후변화대응 및 산림자원육성	705 환경보호
			산림휴양기반조성	
산업 통상 자원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무역 및 투자유치	무역보험지원	704 경제활동
		에너지 및 자원개발	국내외원전의 안정적 건설·운영	705 환경보호
			방사성폐기물관리행정지원	
소방 방재청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관리	재난·민방위대응	703 공공질서 및 안전
			소방정책관리	
			방재관리	
			소방방재 R&D	
			재난정보화	
			소방방재행정지원	
식품 의약품 안전청	보건	식품의약 안전	식품안전성제고	707 보건
			위해관리 선진화	
			의약품안전성제고	
			의료기기안전성제고	
			과학적 안전관리연구	
			지방청운영	
			식약품행정지원	
안전 행정부	사회복지	공적연금	공무원연금급여지급	710 사회보호
			대부사업운영	
			차입금이자상환	

[부록 1]의 계속

부처명	분야	부문	프로그램	COFOG 분류
여성 가족부	사회복지	보육·가족 및 여성	여성가족부행정지원	701 일반공공행정
		노인· 청소년	청소년육성기금기금운영비	709 교육
			청소년정책 및 역량강화	710 사회보호
			청소년사회안전망강화	
			기금 간 거래	
			여유자금운용	
		보육·가족 및 여성	성평등정책기반강화	
			여성능력개발 및 일자리지원강화	
			여성·아동폭력예방 및 보호지원	
			기금 간 거래(전출금)	
			여유자금운용	
외교 통상부	외교·통일	외교·통상	정상외교	701 일반공공행정
			다자관계협력	
			국제기구분담금	
			지역외교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재외동포보호 및 지원	
			여권업무선진화	
			국제개발협력(한국국제협력단출연)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	
			재외공관운영	
			외교통상 행정지원	
			여유자금운용	
			차입금원금상환	
			경제통상외교	704 경제활동
원자력 안전 위원회	과학기술	과학기술 일반	원자력안전운영지원	704 경제활동
		기술개발	원자력안전	

[부록 1]의 계속

부처명	분야	부문	프로그램	COFOG 분류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일반공공행정	입법 및 선거관리	선거의 공정한 관리	701 일반공공행정
			선거관리행정지원	
지식 경제부	과학기술	과학기술연 구지원	기관지원(산업기술)	704 경제활동
			기관지원(에너지)	
	교통및물류	물류 등 기타	경제자유구역사업추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무역 및 투자유치	무역진흥	
			무역구제	
			무역보험지원(기금운영비)	
			해외진출활성화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	
		산업·중소 기업일반	지식경제부행정지원	
		산업진흥· 고도화	산업기술진흥	
			주력산업진흥	
			신산업진흥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주력산업진흥(기금운영비)	
			정보통신산업활성화	
			광역경제활성화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여유자금운용	
		에너지 및 자원개발	기후변화 및 에너지자원정책	
			국내외자원개발	
			에너지공급체계구축	
			에너지안전관리	
			녹색성장기반확충	
			전력경쟁력강화·수급안정(운영)	
			회계 간 거래(전출금)	
			회계기금 간 거래(전출금)	
			기금 간 거래(예탁금)	
			계정 간 거래(전출금)	
			여유자금운용	

[부록 1]의 계속

부처명	분야	부문	프로그램	COFOG 분류
	통신	방송통신	정보통신산업진흥	
			정보통신행정지원	
			회계 간 거래	
			기금 간 거래	
			여유자금운용	
		우정	국민과함께하는우편서비스	
			우체국예금성장강화	
			우체국보험내실화	
			우정사업경영지원	
			우정사업행정지원	
			회계 간 거래(전출금)	
			회계기금 간 거래(전출금)	
			회계기금 간 거래	
			계정 간 거래	
통계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국가통계인프라개선	701 일반공공행정
			국가통계생산관리	
			책임운영기관운영	
			통계행정지원	
통일부	외교 · 통일	통일	통일정책	701 일반공공행정
			북한정세분석관리	
			남북사회문화교류	
			인도적 문제해결	
			남북경제협력	
			개성공단지원	
			남북회담	
			통일교육	
			통일행정지원	
			남북협력기금운영비	
			회계기금 간 거래	
			기금 간 거래	
			여유자금운용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710 사회보호

[부록 1]의 계속

부처명	분야	부문	프로그램	COFOG 분류
특허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일반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704 경제활동
			회계기금 간 거래(예탁금)	
		산업진흥·고도화	심사·심판서비스제공	
			지식재산창출기반강화	
			국내외지식재산권보호 및 활용촉진	
			지식재산행정정보화	
해양경찰청	공공질서 및 안전	해경	장비관리	703 공공질서 및 안전
			해상경비 및 안전활동	
			해상치안확립	
			정비창운영	
			해양경찰행정지원	
	환경	해양환경	해양오염관리	705 환경보호
해양수산부	농림수산	수산·어촌	수산물유통 및 안전관리 (기금·융자)	704 경제활동
행정안전부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정부의전	701 일반공공행정
			통계서비스제고	
			청사관리	
			기록물관리	
			민주화지원 및 과거사정리	
			행정안전행정지원	
		정부자원관리	인사관리	
			조직관리	
			국가사회정보보화	
		지방행정·재정지원	지방행정	
			지역발전	
			지방재정세제	
			지방행정연수	
			이북5도	
	공공질서 및 안전	경찰	과학수사	703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관리	재난안전	

[부록 1]의 계속

부처명	분야	부문	프로그램	COFOG 분류
	교통 및 물류	도로	지방도구조개선	704 경제활동
	일반공공행정	정부자원 관리	중앙공무원교육	709 교육
	사회복지	공적연금	주택 및 시설운영	710 사회보호
			공무원연금기금운영비	
			회계기금 간 거래(공무원연금부담금)	
			기금 간 거래(예탁금)	
			차입금원금상환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지원	
행정 중심복 합도시 건설청	국토 및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운영	706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전출금	
			회계기금 간 거래(연금부담금)	
헌법 재판소	공공질서 및 안전	법원 및 헌재	헌법재판소운영	703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부	환경	상하수도 · 수질	4대강유역관리	704 경제활동
		대기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보전	705 환경보호
		상하수도 · 수질	상하수 및 토양지하수관리	
			수질보전 및 관리	
			여유자금운용	
		자연	자연환경, 생물자원보전	
		폐기물	자원순환사회형성촉진	
			자원순환기반구축	
			환경보전기반육성	
		환경일반	환경행정지원	
			회계 간 거래(전출금)	
			회계기금 간 거래(예수원금상환)	
			회계기금 간 거래(예수이자상환)	
			회계기금 간 거래(전출금)	
			여유자금운용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내부자료를 근거로 저자 작성

[부록 2]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의 COFOG 기능별 분류

기관명	사업내용(주요 기능)	COFOG 분류
명동·정동극장	• 명동예술극장 및 정동극장의 운영·관리사업 • 무대예술작품 제작 등 공연예술진흥사업 • 전통문화의 보존 및 계승발전사업 •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목적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공연장 관리운영사업 • 예술영재장학금 지급사업 • 유망예술인발굴연구비 지급사업 • 우수창작품개발연구비 지급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708 휴양·문화·종교
체육인재육성재단	• 체육분야 인력양성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및 평가 • 체육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학술연구 및 조사 • 체육분야 인력양성 관련 관계기관 네트워크구축 • 체육분야 인력양성 관련 국내외 정보구축 및 제공 • 기업의 체육분야지원 활성화 및 체육인력 자생력 강화를 위한 교류기반 마련 •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708 휴양·문화·종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증진지원 • 문화예술회관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 문화예술회관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홍보 •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문 및 지원 • 문화예술회관 관련 국내외교류 •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한 소외계층 대상공연활동 지원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 그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08 휴양·문화·종교
한국장애인개발원	•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사업 • 장애인복지 관련 평가 및 인증사업 • 복지진흥 및 재활체육진흥사업 • 장학사업 및 장애극복상사업 • 국제협력사업 • 이룸센터 관리 및 운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하는 사업	710 사회보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가축의 예방접종·약물목욕·임상검사 및 검사시료 채취 • 축산물의 위생검사 •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홍보 • 가축방역사 및 도축검사원 교육·양성 • 수입 식용축산물의 현물검사 및 유통이력관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부대사업	704 경제사업

[부록 2]의 계속

기관명	사업내용(주요 기능)	COFOG 분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 심사 및 평가기준의 개발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검사 등 전산관리 - 요양비에 대한 심사 및 심사평가원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홍보 등 -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707 보건
게임물등급 위원회	-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통하여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게임산업과 게임문화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 -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유통여부에 대한 확인·점검 등 사후관리를 통하여 게임물의 유통 및 이용 제공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 불법 게임물에 대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감시활동 전개, 사법 기관의 단속업무지원	708 휴양·문화· 종교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 경제·인문사회분야의 연구기획 및 연구기관 발전방향의 기획 - 연구기관기능 조정 및 정비(신설·통합 및 해산 포함) - 연구기관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 -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01 일반공공행정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 및 기술혁신에 대한 조사분석·연구 - 과학기술정책 대안개발 및 기술경영전략수립에 관한 연구 및 자문 - 과학기술과 경제사회의 상호작용에 관한 학제적 연구 - 과학기술의 지역협력, 국제협력 및 과학기술정책의 세계동향에 관한 조사분석·연구 - 정부·산업계·학계 및 외국기관과의 연구옹역 수탁·위탁 및 공동협력 연구 - 연구결과의 보급·홍보,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업 - 위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및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01 일반공공행정
국립공원 관리공단	-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경관 조사·연구 및 보전 - 생물종다양성 증진을 위한 야생 동·식물 복원 및 증식 - 자연자원 생태변화 관찰 - 탐방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건전한 탐방문화 정립 - 탐방객 안전관리 및 공원시설의 설치·유지관리 - 공원자원 훼손예방 및 불법행위 단속 - 공원사업시행, 행위허가 및 협의 업무 - 공원시설사용료 징수 - 공원이용에 관한 계도·홍보 기능 등	705 환경보호

[부록 2]의 계속

기관명	사업내용(주요 기능)	COFOG 분류
국민건강 보험공단	〈건강보험사업〉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 보험료 기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 보험급여의 관리,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및 사후관리 • 가입자 및 피부양자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홍보,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업무 〈장기요양사업〉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 격관리 •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 신청인에 대한 조사,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제공 •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 현금급여의 지급 •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 노인성질환 예방사업 •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707 보건
국민생활 체육회	• 범국민 체육생활화 운동전개 •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체육동호인활동의 지원·육성 • 생활체육의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활성화 • 국민의 체육활동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생활체육지도자의 효율적 관리 • 생활체육을 통한 국제교류 • 세계한민족축전 조직 및 운영	708 휴양문화종교
국민연금 공단	•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 연금보험료의 부과 • 급여의 결정 및 지급 • 노후설계상담, 소득활동 지원 및 자금의 대여 •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 기금 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사업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 그 밖의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심사	710 사회보호

[부록 2]의 계속

기관명	사업내용(주요 기능)	COFOG 분류
국방과학 연구소	- 국방에 필요한 병기, 장비 및 물자에 관한 연구, 개발 및 시험평가 - 군 무기체계 신규소요 및 운용관련 기술검토, 분석, 지원 등	702 국방
국방기술 품질원	- 국방과학기술의 기획에 대한 업무지원과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조사 분석 - 방위력 개선사업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에 대한 업무 지원 -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의 수행 기관 선정 및 수행 결과 평가 등에 대한 지원 - 국방 과학 기술 및 무기체계에 관한 정보의 통합 관리 - 군수품의 품질 보증 및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등에 대한 업무 지원과 이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군수품의 표준화 및 시험평가 등에 대한 기술 지원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부품 국산화 등 국방기술협력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 군수품에 대한 수출입 가격정보의 수집, 제공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방 과학 기술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702 국방
국제방송 교류재단	-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제사회의 이해 증진을 위한 해외 위성 방송 사업 - 주한 외국인의 한국 이해 증진 및 내국인의 세계화 의식제고를 위한 방송 사업 - 방송 영상물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 - 해외 매체를 통한 우리 방송물의 방송 지원 사업 - 해외 방송사와의 국제교류 협력 사업 - 방송 프로그램, 홍보 영상물 등 영상 제작 사업 - 방송 제작 시설, 장비, 건물 등의 임대 사업 - 국제회의 기획, 전시, 이벤트 등 컨벤션 사업 - 정부 및 공공기관 해외광고 대행사업 등 광고사업	708 휴양·문화· 종교
국토연구원	- 국토·지역·도시·SOC·환경 등 국토분야 계획 수립 및 전략 연구 - 토지, 주택, 건설산업 등 국토경제분야 시장분석, 정책연구 - GIS·사이버국토·지능국토 등 국토정보에 대한 종합 연구 - 북한 국토 및 동북아 지역 연구 - 국토철학·국토역사·국토문학·지지 등 국토 문화 분야 기초 연구 - 국토 관련 분야의 인재양성 및 국내외 전문 기관과의 학술 교류	706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기초기술 연구회	- 기초 기술분야의 연구기획과 소관 연구기관 발전방향의 기획 - 소관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 -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 내용 평가 - 소관 연구기관 간의 협동 연구 지원 -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 확산 지원 -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 소관 연구기관 국제협력 역량제고 및 연구성과 홍보지원 등	701 일반공공행정

[부록 2]의 계속

기관명	사업내용(주요 기능)	COFOG 분류
노사발전 재단	• 노사 공동사업을 통한 노사주도의 자율적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 도모 • 노사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교육, 연구, 컨설팅 사업으로 노사 관계 혁신 • 노사 공동의 고용 안정(창출)·전직 지원·인적자원 개발·노사 관계 관련 업무의 전문적 수행 • 우리나라와 외국의 노사 관계 제도·관행에 대한 국제적 상호 이해 촉진과 민간 노동 외교 활성화 •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복지지원 및 노사공동 사회 공헌 사업을 통해 사회 양극화 완화	704 경제사업
녹색사업단	• 산림청장이 운용·관리하는 녹색 자금의 위탁 관리 •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 환경 개선 사업 • 공해 방지 및 경관 보전을 위한 산림 및 도시림 조성 사업 • 국민을 위한 산림 체험 활동 시설의 설치, 운영 사업 • 산림 문화의 교육, 홍보 사업 • 해외에서 산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흡수원 확충 및 배출권 확보 사업 • 산림 환경 기능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 등	704 경제사업
농림수산 식품기술 기획평가원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지원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등 지원 • 농림 수산 식품 분야 기술 역량 진단 및 인력 육성 지원 등	704 경제사업
농수산물 유통공사 (현 한국 농수산물식품 유통공사)	• 농수산물 수출 진흥: 해외 시장 개척, 수출 상품 육성 지원, 수출 자금 및 정보 제공 등 • 농수산물 유통 혁신: 농수산물 사이버 거래소 운영, 소비자·산지 협력 지원, 산지 유통 조직 육성, 도매 시장 관리 등 • 농수산물 수급 관리: 정부 비축 사업(수매,수입), MMA 쌀도입·판매, 해외 식량 자원 개발 등 • 농식품 산업 육성: 식품 업체 경영활성화, 인프라 구축 및 한식 세계화 등	704 경제사업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 및 알선 •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 연구개발성과의 영농 현장 활용을 위한 제품 개발 지원 •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위탁 관리 업무 • 농가 및 농업생산자 단체 등의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지원 •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민원인이 의뢰하는 농업에 관한 시험·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여 긴급하게 보급하고자 하는 종자·종묘 증식	704 경제사업

[부록 2]의 계속

기관명	사업내용(주요 기능)	COFOG 분류
	-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정보화 -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벤처 창업 지원 - 연구개발성과의 권리화 지원 -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전시 및 홍보 지원 업무 - 농식품 기술 실용화, 기술 금융 등을 위한 기술 평가 -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자본 및 기술 출자 - 농식품 우수 기술의 해외 이전 및 수출 사업화 촉진 - 농식품 분야 탄소 배출권 관련 사업화 지원	
대구경북 과학기술원	- 고급 과학 기술 인재의 양성 - 첨단 산업 분야에서 지역 산업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 -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와의 수탁·위탁 연구 및 공동 연구 - 지역산업의 향상을 위한 기술 수요 조사 및 연구 평가 - 연구 개발 결과의 산업화 지원 등	701 일반공공행정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 무역·통상, 국제 금융 협력, 국제 투자, 해외지역을 비롯한 국가의 대외 경제 정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분석과 정책 수단의 개발 - 세계 경제 및 주요 경제권역의 경제동향 및 정책에 대한 연구·분석 - 국내외학계·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 - 세계경제 및 주요 경제권역에 관한 연구용역의 위탁 및 수탁 - 세계경제 및 주요 경제권역에 관한 교육·연수 및 홍보 - 상기사업과 관련된 부대 사업 및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704 경제사업
대한 무역투자 진흥공사	- 국내기업에 대한 해외 시장 개척 - 전략산업 해외마케팅 및 맞춤형 수출지원 활동 - 해외 진출 지원 및 정보 조사 - 국내기업 해외투자 및 프로젝트 진출 지원 - 해외시장 정보의 수집 및 전파 - 외국인 투자 유치 - 외국인 투자 유치, 홍보 및 유치 지원 - 기 진출 외국인 투자 기업 정착 지원 및 고충 처리 - 정부 수입 사업 수행, 무역 투자 전문 인력 양성 - EXPO 참가 및 무역, 투자 유치 정책 수립 지원 - 국가 무역, 투자 인프라 구축, 운영 - 국가 브랜드 제고 및 방산물자 등의 수출 지원	704 경제사업
대한장애인 체육회	- 장애인 생활 체육의 육성 및 보급 - 장애인 선수 양성 및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 장애인 경기 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 - 장애인 체육 경기 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 장애인 선수, 장애인 체육 지도자 및 장애인 체육계 유공자의 복지 향상	710 사회보호

[부록 2]의 계속

기관명	사업내용(주요 기능)	COFOG 분류
도로교통 공단	• 교통안전 교육 출판 및 홍보 • 도로 교통사고 조사 분석 지원 및 자격 관리 •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 단속 장비의 시험 검사 교정 설계 운영 관리 등 • 도로 교통안전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기술 용역 • 교통방송,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 • 운전면허시험 관리 및 정기 수시 적성검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도로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703 공공질서 및 안전
독립기념관	•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및 전시, 조사, 연구 •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기 위한 국민 교육 • 기념관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 기념관 시설의 관리 및 확충 • 기념관 운영 재원 조달을 위한 사업	708 휴양· 문화·종교
동북아역사 재단	• 동북아시아의 바른 역사 정립을 위한 조사·연구 •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전략과 정책의 개발 및 대정부건의 •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협력 •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홍보·교육·출판 및 보급 • 동해·독도의 표기 관련 체계적 오류 시정 활동	701 일반공공행정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 민주화 운동 기념관 건립 및 운영 • 민주화 운동의 역사 정리를 위한 사료의 수집·보존·전산화·관리·홍보·조사 및 연구 • 민주화 운동 유적의 보존·관리·조사·홍보 및 연구 • 민주화 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 민주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708 휴양·문화· 종교
산업기술 연구회	• 산업기술 연구 분야의 연구기획과 소관 연구기관의 발전방향 기획 • 소관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신설·통합 및 해산 포함) • 소관 연구기관의 평가(연구실적 및 경영내용 평가) • 소관 연구기관의 협동 연구 지원 •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 확산 지원 • 국가과학기술분야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 기타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04 경제사업
산업연구원	• 국내외의 산업 기술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수단의 개발 • 기업 경영, 기술 혁신 등에 관한 상담, 자문 및 정보의 제공 •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 용역의 수탁 • 민관의 교량 역할로서 정책 토론의 장 제공 • 제1호 내지 제4호의 부대사업 및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704 경제사업

[부록 2]의 계속

기관명	사업내용(주요 기능)	COFOG 분류
소상공인 진흥원	•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 조사·개발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육성 • 소상공인 창업 및 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한 정보·교육 및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운영 • 소상공인 업종별 창업 지침 개발·보급 및 점포 개선 •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지원 및 업종 간의 교류 지원 • 그 밖에 소상공인 육성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행	704 경제사업
신용보증 재단중앙회	• 신용보증·신용조사 기법의 연구·개발, 신용 정보 관리 • 대외 기관과의 업무 협조 • 재단의 공동사업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 재단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연수 • 재단에 대한 업무 지원 • 재단에 대한 재보증에 관한 사항 • 개인에 대한 신용 보증 및 구상권 행사	704 경제사업
영상물등급 위원회	• 영상물 등의 등급 분류, 내용 정보 및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 영상물 등의 등급 분류에 따른 제작·유통 또는 시청 제공의 실태조사 및 등급 분류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 영상물 등의 등급 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국제협력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708 휴양문화종교
예금보험 공사	• 예금보험기금과 예보채상환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예금보험료 및 특별 기여금의 수납과 예금보험금의 지급 • 부보금융회사의 보험사고 예방을 위한 리스크 감시 •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및 지원 자금 회수 • 부실관련자에 대한 부실 책임 조사 등	704 경제사업
재단법인 국악방송	• 국악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 사업 • 국악 공연, 음반 등의 제작, 보급, 홍보 사업 • 국악의 창작, 교육, 연구 및 대중화를 위한 각종 사업 • 전통 예술의 보급과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 국내외 국악 프로그램의 교류 및 지원 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 사업	708 휴양문화종교
재외동포 재단	• 재외동포 교류사업, 재외동포사회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문화·홍보·정보화 사업 및 기타 정부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시행 • 상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및 기타 부대되는 사업 시행	701 일반공공행정

[부록 2]의 계속

기관명	사업내용(주요 기능)	COFOG 분류
전략물자 관리원	- 전략물자 해당 여부의 판정 업무 -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 전략물자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업무 -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의 지원 업무 -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지원 업무 - 전략물자 자율준수 무역거래자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지원 업무 - 전략물자의 판정 및 통보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등	701 일반공공행정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 정보통신산업정책 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 정보통신산업 육성, 발전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조성사업 -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시장 활성화 및 마케팅지원 -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및 활용에 관한 사업 -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 및 해외진출지원 등	704 경제사업
정부 법무공단	- 국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민사/행정소송, 헌법재판 등 중요 소송수행 - 법률자문 입법지원 계약체결 지원 등 각종 법률서비스 제공 - 정부사업의 법률적 가능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종합검토해주는 종합 법률컨설팅업무 수행	703 공공질서 및 안전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의 수요 발굴 및 조사, 분석 -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정보화 기반조성, 정보화 수준 평가 -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 및 평가 - 정보화 경영 표준모델의 개발, 보급, 확산 및 부합화 지원 -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704 경제사업
축산물위해 요소중점 관리기준원	- 축산물 HACCP 적용 작업장 등의 지정 및 연장 심사, 준수여부 조사·평가 - 축산물 HACCP 운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축산물위생 및 HACCP에 관한 교육 및 기술지원 - 친환경 농산물(축산물) 인증사업 - 국가/지역체 또는 기타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부대사업	704 경제사업
태권도 진흥재단	- 태권도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 태권도 보존, 보급, 홍보에 관한 사업 - 태권도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 태권도공원 임대에 관한 사업 - 태권도용품, 콘텐츠개발 등 관련 산업 육성지원	708 휴양· 문화·종교
통일연구원	- 통일에 관련되는 연구 및 정책개발 - 국내외 연구기관·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및 연구용역의 수탁 - 통일 관련 정보·자료의 종합관리 및 지원 - 통일 관련 연구물 및 자료의 출판 - 북한경제 연구를 포함한 통일문제 연구 -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01 일반공공행정

[부록 2]의 계속

기관명	사업내용(주요 기능)	COFOG 분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민간부문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국가기간산업과 신산업분야의 다기능 기술자, 기능장 등 중간기술인력 양성 • 취업을 원하는 학업중단 청소년, 고학력 미취업자,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기능인력(기능사) 양성 •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 개발, 산학협력사업, 지역산업 인력개발 및 취약계층 직업능력개발, 교육 • 기타 훈련정보 및 교재개발·보급, 기업에 대한 훈련상담, 기술 지도, 기타 정부위탁사업 수행 등 다양한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709 교육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출판문화 산업진흥원)	• 도서, 잡지, 만화, 전자출판물 등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 외국 간행물의 수입 추천에 관한 업무 및 유해성 심의 • 출판문화발전을 위한 양서권장 및 조사연구사업 • 국민독서 증진을 위한 사업 • 기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708 휴양· 문화·종교
한국개발 연구원	• 경제사회현상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 •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사업 및 관계기관 공무원 기타 단체 직원에 대한 교육연수 • 재정사업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관련 사업 및 연구	701 일반공공행정
한국건설 교통기술 평가원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수요조사·기획 및 기술예측 • 건설교통분야의 새로운 기술의 심사·관리 등	703 공공질서 및 안전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 국가기반시설 성능 및 안전 고도화기술 연구개발 • 국토재해 대응기술 연구개발 • 친환경 국토조성기술 연구개발 • 국토관리 정보화기술 연구개발 • 고성능 건설자재기술 연구개발 • 건설공사 및 건설기자재의 품질인증, 검사 및 시험 • 기술정책수립의 지원, 기업기술지원, 기술사업화	704 경제사업
한국고용 정보원	• 고용정보·고용전산업무 계획수립 •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및 고용동향 분석 • 직업사전 발간, 직무분석기법 연구 등 직업연구 및 보급 • 직업지도,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에 관한 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 인력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산업의 동향 및 전망 등이 포함되는 인력의 수급동향 및 전망 작성 • 고용정보·고용보험·직업훈련·외국인근로자관리 정보통신망 등의 개발 및 운영·관리 • 고용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 • 위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 그 밖의 부대사업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는 사업	704 경제사업

[부록 2]의 계속

기관명	사업내용(주요 기능)	COFOG 분류
한국고전 번역원	- 고전문헌의 수집·정리 및 연구 - 고전문헌의 편찬·번역 및 보급 - 고전문헌의 정리·번역을 위한 인재양성 - 고전문헌과 관련된 대민업무 - 고전문헌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등	708 휴양·문화· 종교
한국과학 기술기획 평가원	- 국가과학기술 주요정책 및 계획수립·조정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의 배분·조정에 대한 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지원 - 과학기술 발전추세의 예측 -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작성·관리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지원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701 일반공공행정
한국과학 기술연구원	- 원천기술을 창조하는 종합연구기관으로 기초·선도기술분야의 연구·개발 수행 및 그 성과의 보급 - 국책적 중장기 연구·개발사업 및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그 성과의 보급 - 국내외 산·학·연 간의 연구협력 -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 연구 및 개발용역의 수탁 및 위탁 등	701 일반공공행정
한국과학 기술정보 연구원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유통체제 확립 - 국가전략기술정보분석·지원체계 기능강화 - 슈퍼컴퓨팅인프라의 개발·운영체계 확립	701 일반공공행정
한국과학 창의재단	-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 청소년 및 일반국민의 과학기술 이해증진 및 확산사업 - 과학기술문화활동, 창의적 인재육성 사업 및 담당단체의 육성·지원 - 과학기술 홍보, 과학기술문화 확산 및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대중매체사업 운영 및 지원 - 수학·과학교육과정 및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수학·과학교육과정의 연구개발 - 수학·과학국정교과서 개발·지원 - 수학·과학교육과정 발전방안 연구 등 - 과학기술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과 관련된 과학문화·예술 등 융합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709 교육
한국광해 관리공단	- 광해방지 계획의 수립 및 광해방지 대책강구 - 광해의 방지, 훼손지 복구사업 및 해외 광해방지사업 - 석탄산업 지원사업 - 폐광지역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 - 광업(광해,자원)분야 국가기술자격검정	704 경제사업

[부록 2]의 계속

기관명	사업내용(주요 기능)	COFOG 분류
한국교육 개발원	- 한국교육의 미래예측 및 대비, 발전적 비전탐색 및 제시 - 한국교육혁신을 위한 전략적 대안제시 - 학교교육수준의 심층적 진단 분석 - 한국교육의 성과 및 문제점 분석 - 국가위탁 주요 교육발전과제 및 사업의 수행 - 교육기초이론탐색	709 교육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자료의 제작, 조사, 수집 및 관리와 이의 활용을 위한 연구 - 교육정보 제공체제의 구축 및 관리, 운영 - 교육 및 학술정보의 개발, 유통에 필요한 정보의 체계화, 표준화 및 품질인증 -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교육용 정보, 자료의 연구, 개발, 발굴 및 보급 - 각급 학교의 도서관 전산화 및 전자도서관의 구축지원 - 각급 학교의 교육 및 교육행정의 정보화지원 등	709 교육
한국국방 연구원	- 안보환경 및 국방기본정책에 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 - 군사전략, 군사력건설, 무기체계의 선정 및 획득정책에 관한 연구 - 국방인력, 자원관리 및 국방과학기술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 국방정보화정책연구, 국방정보화 관련 사업의 개발지원 및 기술자문 - 국방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 분석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 - 국내외 연구기관, 개인에 대한 연구용역의 위탁 및 정부, 민간 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 기타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수행	702 국방
한국국제 보건의료 재단	- 개발도상국 및 북한 보건의료지원 - 채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지원 - 재난재해지역 긴급보건의료지원 - 이종육기념사업 - 기타 보건의료 관련 국제협력사업	707 보건
한국국제 협력단	- 프로젝트형사업: 물자·자금 및 시설 지원 등 물적 협력수단과 국내 초청연수, 전문인력파견 등 인적 협력수단을 연계한 종합지원사업 - 개발조사사업: 개발도상국의 주요 개발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실시설계, 종합계획을 제공하는 사업 - 국내초청연수사업: 개도국 공무원 등을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전수하고 각 분야별 지식 및 기술을 교육하는 사업 - 전문인력파견사업: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지에서 분야별 훈련자문을 수행하는 사업 - 해외봉사단파견사업: 해외봉사단원을 파견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현지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사업 - NGO 지원사업: NGO 단체들의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을 보조함으로써 민간부문의 국제협력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701 일반공공행정

[부록 2]의 계속

기관명	사업내용(주요 기능)	COFOG 분류
	• 재난복구지원사업: 개도국의 각종 재난 발생시 긴급구호 및 복구 지원사업 • 물자지원사업: 수원국의 공공개발사업 및 인간기본육구(BHN)의 충족에 필요한 물자 또는 천재지변, 질병 등 재난 발생 시 구호금 및 구호품을 지원하는 사업	
한국기계연구원	• 국가 신성장동력 및 주력 기간산업의 원천·기반기술 개발 • 국가 차원의 기계분야 육성 정책 및 기술기획 수립 • 연구개발 활동과 연계한 신기술 및 주력 기간산업의 신뢰성 및 시험평가 • 평가기술과 국가기술 규격 개발·보급 • 보유기술 산업체 이전 및 사업화 지원 • 기계분야 중소·중견기업 기술지원	704 경제사업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국가적 대형공동연구장비의 개발설치 운영을 통한 연구지원 및 공동연구 • 첨단연구장비 이용자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 국가연구시설·장비 총괄 관리전담 • 청소년 과학활동지원을 통한 과학대중화 및 과학문화 확산	701 일반공공행정
한국노동연구원	• 노동관계諸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와 정책대안의 개발 • 노동관계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 발간, 보급 • 노동관계연구용역의 위탁 및 수탁 • 노동관계에 관한 교육·연수 및 홍보	704 경제사업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농림수산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관리 • 국내외 농림수산정보개발·보급·관리 • 농업용 소프트웨어 개발·보급·관리 • 농업생산·경영·유통지원 컨설팅사업 • 농업경영인 등에 대한 농업정보화 교육추진 • 농업정보화 관련 연구·조사등 • 농업정보화 관련 출판·홍보사업 •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농림수산정보화사업 자문 및 지원 • 농림수산물 전자거래 및 코드표준에 관한 사업 등	704 경제사업
한국농어촌공사	• 농업생산기반 조성 정비 • 농어촌용수 및 수리시설물 관리 • 농어업 소득증대 및 경쟁력제고 • 농어촌지역개발 종합 솔루션 제공 • 지역경제활성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704 경제사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중장기 농림경제계획 및 정책수단에 관한 조사연구 • 농림부문의 단기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 농식품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 농어촌민의 복지증진 및 농어촌 사회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 국제농업협력에 관한 연구 • 농업관측을 통한 품목별 수급동향 및 중장기 전망연구 • 농림업정책의 국민이해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대국민 여론조사, 홍보 등	704 경제사업

[부록 2]의 계속

기관명	사업내용(주요 기능)	COFOG 분류
한국문학 번역원	- 한국문학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사업 - 한국문학 및 간행물의 번역가 양성사업 - 한국문학 및 간행물의 세계화 관련 기획·조사업무 - 한국문학 및 간행물의 해외 교류·홍보활동 및 장학연구사업 등	708 휴양·문화· 종교
한국문화 관광연구원	-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 문화·관광산업의 육성 및 예술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 문화복지 및 문화환경조성에 관한 조사·연구 - 전통문화 및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 남북한 문화통합 및 북한문화예술 연구 - 관광자원개발 및 국민여가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 국민관광의 건전한 발전과 관광서비스부문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등	708 휴양·문화· 종교
한국문화 예술교육 진흥원	-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 - 교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지원 -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지원·평가 등	709 교육
한국법제 연구원	- 국내외 법제 및 입법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 국내외 법령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관리 및 보급과 전산망사업 - 법령의 입법취지와 배경 등에 관한 해설자료의 발간·보급 - 입법기술·법령용어정비·고법전 및 한국법제사에 관한 조사·연구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법제 및 입법정책 등에 관한 공동연구와 국내외 인사초청 연구사업 -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개인에게 연구용역 위탁 및 정부나 민간 단체에서의 연구용역 수탁	701 일반공공행정
한국보건 복지인력 개발원	- 보건복지 관련 업무종사자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 보건복지분야 교육강사 양성 및 훈련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및 관리 - 보건복지분야 인력개발에 관한 연구 - 국내외 보건복지 관련 정보·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 - 보건복지분야 인력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 기타 위·수탁 및 부대사업 등	710 사회보호
한국보건 복지정보 개발원	- 보건복지분야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관리 - 사회·보육서비스사업의 통합 관리 - 보건복지분야 정보화지원 - 보건복지정책 개발지원 - 고객지원 및 품질관리	710 사회보호

[부록 2]의 계속

기관명	사업내용(주요 기능)	COFOG 분류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 보건의료 · 사회보장 · 인구 및 사회문제에 관한 제도평가 및 정책개발 • 보건의료 · 사회복지정책분야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보건의료 · 사회복지분야 정책수립을 위한 국가기초통계자료 생산 • 주요 보건의료 · 사회복지정책 관련 정부위원회 지원 및 국민여론 수렴 •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기술정보 교류 및 공동연구실시 등	707 보건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 보건산업 기술의 개발과 그 기술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 보건산업정보의 개발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업 • 보건산업의 경영효율화 등을 위한 기술지원사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 · 육성지원사업 • 식품 · 식품첨가물 ·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시험 · 검사와 생산 · 유통에 관한 기술지원사업 • 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의 조성 · 운영 ·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사업 • 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발과 교육 · 홍보 및 국제 협력사업 •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 등	707 보건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 산업기술기반조성(인력양성, 산학협력, 기술문화조성 등) •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 산업기술 국제협력 •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704 경제사업
한국산업 기술평가 관리원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과제기획 · 평가 · 관리 • 기술개발과제기획을 위한 산업기술의 수요, 수준 및 전망조사 • 기술개발과제의 기술적 · 경제적 타당성 및 재무건전성조사 •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과제의 기획 · 평가 · 관리 • 기술혁신의 전주기 상시 책임관리자제도의 운영 및 지원	704 경제사업
한국산업 단지공단	• 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시설 확충 •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 · 운영 • 입주기업지원 서비스 고도화 • 산학연관협력 네트워크강화	704 경제사업
한국산업 안전보건 공단	•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 · 개발 및 보급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 보건진단 또는 관리 등과 이를 위한 기술지원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 등의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자금지원 •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 · 운영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 · 발간 · 제공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등	704 경제사업

[부록 2]의 계속

기관명	사업내용(주요 기능)	COFOG 분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첨단생명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및 원천기술 개발 보급 • 국내외 생명과학 연구를 위한 공공인프라지원	701 일반공공행정
한국세라믹기술원	• 시험·분석, 평가·인증, 감정, 표준화사업 • 기술지원을 위한 인프라구축, 인력양성, 기술지도사업 • 세라믹 관련 각종조사, 분석, 기획 등 정책지원사업 • 위 사업과 관련한 산학연기술협력 및 국제협력사업 • 세라믹 및 세라믹 관련 연구개발사업 • 그 밖에 기술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04 경제사업
한국 소비자원	•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 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협력 •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방송사업 •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	704 경제사업
한국식품연구원	• 식품기능성 규명, 신소재·신공정 연구개발 • 식품저장·유통·안전성기술 연구개발 • 전통식품의 세계화 연구개발 • 식품분석, 정보, 표준화 및 기반조성 연구개발 • 기타 기술정책수립의 지원, 기술지원, 시험평가인증, 인력양성, 기술사업화 등 정부, 민간, 법인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및 연구원의 임무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04 경제사업
한국언론진흥재단	• 언론산업진흥에 필요한 사업 • 신문의 발행·유통 등의 발전을 위한 사업 • 한국언론매체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지원 • 언론진흥기금의 조성관리·운용 • 언론산업진흥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08 휴양문화종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 이산화탄소포집 등 온실가스처리 연구개발 • 청정석탄, 비재래형연료 등 화석에너지 청정이용 연구개발 • 에너지효율향상 연구개발 • 기타 기술정책수립의 지원, 기술지원, 시험평가인증, 인력양성, 기술사업화 등 정부, 민간, 법인, 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및 연구원 임무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수행	704 경제사업

[부록 2]의 계속

기관명	사업내용(주요 기능)	COFOG 분류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운용·관리 - 에너지기술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 에너지기술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지원 - 녹색인증 평가사업	704 경제사업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 여성과 관련된 제반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여성발전 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 여성에 관한 국제교류 협력 및 여성정보개발, 성인지 통계체계 구축 및 확산 -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710 사회보호
한국연구 재단	-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 학술 및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과 활용의 지원 -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국제협력 촉진 지원 - 학술 및 연구개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조사· 수집·분석·평가·관리·활용과 정책 개발 지원 -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의 연구·운영 지원 - 국내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 간의 교류협력 지원 - 기타 학술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701 일반공공행정
한국영상 자료원	- 영화필름 등의 제출 과 보상 - 국내외 영화필름, 영상자료, 관련 문헌 및 음향자료의 수집·보 존·복원 - 영상발전을 위한 영화필름과 영상자료의 활용 및 전시 - 영상예술의 향상을 위한 학술연구 및 간행물의 발간과 교육사업 - 영상예술의 국내외 교류 및 시네마 테크활동 - 영상정보화 및 콘텐츠활용사업	708 휴양·문화· 종교
한국원자력 문화재단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의 보급 - 각계 각층을 대상으로 한 원자력 교육 및 시설견학 - 차세대 원자력 관련 교육연구지원 - 원자력 관련 사회적, 심리적 영향 등에 관한 학문적 조사연구 - 원전수출을 위한 해외홍보 등 각종지원사업 - 원자력문화의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및 에너지체험관 운영 등	704 경제사업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 핵물질 계량관리에 관한 심사 및 검사 - IAEA 전면안전조치협정 및 추가의정서 이행 - 핵물질 등 국제규제물자 및 관련 기술의 수출입 통제 -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심사 및 검사 - 원자력 통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 원자력 통제 관련 국제협력지원 - 원자력 통제 관련 교육 등	704 경제사업

[부록 2]의 계속

기관명	사업내용(주요 기능)	COFOG 분류
한국인터넷 진흥원	•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불법스팸 대응 •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 •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국외홍보, 국외진출 지원 • 인터넷주소자원 관리 및 인터넷의 효율적 이용 활성화 지원 • 인터넷, 정보보호에 대한 정책 및 기술 개발	704 경제사업
한국자산 관리공사	• 금융회사 부실채권의 인수,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 업무 • 「부실채권정리기금」 관리 운용 업무 • 「구조조정기금」 관리 운용 업무 • 「신용회복기금」 관리 운용 및 개인신용회복지원 업무 • 국·공유재산관리, 개발 업무 • 채납조세 정리 업무 •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관리 운용	701 일반공공행정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조사·연구 •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직업능력평가 등 직업지도 •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취업알선·취업후 적응지도 • 사업주와 관계 기관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 지도·지원 •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알선기관 간 취업알선전산망 구축·관리, 홍보 교육 및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등 관련 사업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공공 및 민간기관 간 업무연계 및 지원	704 경제사업
한국장학 재단	• 학자금지원사업과 효과성 분석 • 학자금지원프로그램 개발 • 학자금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 통계현황 조사, 분석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 부터 위탁받은 학자금지원사업 관리 •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등의 설치, 운영 • 대학생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프로그램 운영지원 •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지원 등에 관련 된 사업	709 교육
한국저작권 위원회	• 저작권 분쟁에 대한 알선·조정 • 저작권 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요율 등에 관한 심의 • 저작물 이용질서확립과 공정한 이용도모	704 경제사업

[부록 2]의 계속

기관명	사업내용(주요 기능)	COFOG 분류
	•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 저작권교육 · 연수, 전문인력 양성 및 대국민홍보 • 저작권제도 연구와 정책수립 지원 •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 관리 정보에 관한 정책수립 지원 • 저작권정보 제공을 위한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한 감정 • 저작물의 등록, 기증 • 불법복제물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방송 · 통신, 미디어분야 연구개발 • SW · 콘텐츠분야 연구개발 • IT 기반용 · 복합분야 연구개발 • IT 부품 · 소재분야 연구개발 • IT 분야 정보보호 및 표준화연구 • IT 분야 기술사업화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 기타 기술정책수립 지원, 시험평가 인증, 인력양성 등 정부, 민간, 법인, 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및 연구원의 임무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수행	704 경제사업
한국정보화진흥원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 국가기관 등의 정보통신망 관리 및 운영의 지원 • 국가기관 등이 보유한 주요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공동이용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 운영 및 표준화의 지원 • 국가기관 등의 정보자원 관리 지원 • 국가기관 등의 정보화사업 추진 및 평가 지원 • 국가기관 등의 정보통신 신기술 활용 촉진과 이에 따른 전문기술의 지원 • 정보문화의 창달 및 인터넷 중독의 실태조사 · 예방 · 해소 지원 •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지원 • 건강한 정보문화 확립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국가정보화,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 분석, 미래예측 및 법 · 제도의 조사 · 연구 등	704 경제사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조세정책 및 조세행정에 관한 연구 • 조세수입의 추계방법에 관한 조사, 연구 •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에 관한 연구 • 공공지출정책에 관한 연구 • 조세 및 공공지출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과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 • 조세제도에 관한 교육/연수/홍보 • 공공기관의 운영 관련 정책의 연구	701 일반공공행정

[부록 2]의 계속

기관명	사업내용(주요 기능)	COFOG 분류
한국지식 재산보호 협회	•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의 제안 • 국내 위조상품 단속활동 지원 등 지재권보호 •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지원 • 국제 특허분쟁에 노출된 기업의 실질적인 지원 • 산업재산권분쟁의 조정지원 • 지식재산권보호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교육·실태조사 및 연구 • 국내·외 지식재산권보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704 경제사업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 평생직업교육훈련정책의 연구·개발 • 평생직업교육훈련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 평생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자격제도(민간자격등)에 관한 정책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사업 수행 •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의 평가 인정 등에 관한 사업 • 상기 사업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부대사업 • 기타 직능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09 교육
한국천문 연구원	• 천문학과 우주과학에 대한 연구 및 사업 • 대형관측시설의 운영 및 기기개발 • 역 및 표준시의 관리 등 국가천문업무의 수행 •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공동연구 수행 • 대국민 천문지식 및 정보보급 사업 •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701 일반공공행정
한국철도기 술연구원	•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경량전철시스템 연구개발 • 초고속열차, 무가선트램 등 신교통시스템 연구개발 • 철도안전, 표준화기술 연구개발 • 철도시스템 시험평가 및 인증 • 교통, 물류시스템 설계 및 정책 연구개발 • 남북철도, 대륙철도연계기술 연구개발 등	704 경제사업
한국청소년 상담원 (현 한국 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	• 청소년상담 관련 정책 연구개발 • 청소년상담기법의 연구 및 상담자료의 제작·보급 • 청소년상담사업의 시범운영 • 청소년상담 인력의 양성 및 연수 • 청소년상담기관 상호간의 연계 및 지원 • 지역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의 지도 및 지원 •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과 부모교육 •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한 지도 및 지원 • 위기 청소년에 대한 위기개입 및 자활지원 등	710 사회보호

[부록 2]의 계속

기관명	사업내용(주요 기능)	COFOG 분류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 청소년에 관한 다양한 시각의 이론적 연구 • 청소년의 통계체계 확립과 과학적 분석에 의한 미래전망 • 청소년의 문화·활동·참여·권리·복지·환경 관련 정책 연구·개발 • 중앙 및 지방정부 청소년정책의 효과분석과 평가·자문 •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의 연구용역·사업수탁 및 청소년 육성기금의 수탁관리·운용 • 정책연구 및 성과의 확산을 위한 제반사업 • 청소년 관련 연구보고서와 학술지 및 교재 등 발간 • 국내·외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	710 사회보호
한국컨테이 너부두공단 (현 여수광양항 만공사)	•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 •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 • 항만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 항만조성 및 관리·운영 관련 국가 또는 지자체 위탁사업 •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복지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 외국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704 경제사업
한국콘텐츠 진흥원	•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 문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지원 및 재교육 지원 • 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술개발기획, 개발기술 관리 및 표준화 •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유통 활성화 • 문화산업의 창업, 경영지원 및 해외진출지원 • 문화원형, 학술자료, 역사자료 등과 같은 콘텐츠 개발지원 •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 • 공공문화콘텐츠의 보존·유통·이용촉진 • 국내외 콘텐츠자료의 수집·보존·활용 • 방송영상물의 방송매체별 다단계 유통·활용·수출지원 등	708 휴양문화종교
한국특허 정보원	• 특허정보검색시스템 운영 • 특허청 특허 및 상표, 디자인,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 국제특허분류(IPC) 부여 • 공보 및 KPA 등 전자데이터보급 • 특허문서 전자화센터, 데이터관리센터 및 특허고객 상담센터, 특허넷시스템 운영 • 대민 특허정보 조사서비스 •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704 경제사업
한국표준 과학연구원	• 국가측정표준 확립 및 유지 향상 • 측정과학기술 연구개발 • 국가측정표준 보급 및 서비스	704 경제사업

[부록 2]의 계속

기관명	사업내용(주요 기능)	COFOG 분류
한국학 중앙연구원	- 한국문화에 관한 인문·사회과학적 연구 - 국내외 한국학 분야 연구자 및 교수요원 양성 - 한국고전자료의 수집·연구·번역 및 편찬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및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보급 - 한국학 연구성과의 발간 및 보급 - 한국학 학술정보의 전산화 및 보급 - 한국학의 연구·보급·확산을 위한 국내외 학계와의 교류·협력 - 한국문화에 대한 국제적 이해증진 및 지원	708 휴양·문화· 종교
한국한의학 연구원	- 한의학과학화 및 원천기술 개발 - 한의학인프라에 기반한 공공지원기능 강화	707 보건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 항공기·인공위성·우주발사체의 종합시스템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 항공우주 안전성 및 품질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항공우주 생산품의 법적 품질인증 및 국가 간 상호인증 - 국내외 연구기관, 교육기관, 전문단체, 산업계와의 공동연구개발, 기술협력 -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 국가 항공우주 개발정책 수립지원, 항공우주 기술정보의 유통 및 보급·확산 - 시험평가시설의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업화 지원	704 경제사업
한국해양 과학기술 진흥원	- 해양과학기술 수요조사, 분석, 평가 -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평가 - 해양과학기술 관련 계획 수립 지원 - 개발된 해양과학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 - 해양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 - 정부 관련부처에서 위임·위탁하는 사업 수행 - 기타 이사회승인 사업 및 진흥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수행	701 일반공공행정
한국해양 연구원	- 해양환경 및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 - 해양자원의 관리·이용·개발에 관한 연구 - 극지환경·자원조사 연구 및 과학기지 운영 - 연안·항만공학 및 해양안전·운송시스템 관련 기술개발 - 해양개발·보전을 위한 제도연구와 해양과학기술정책 관련 연구 - 국내·외, 산·학·연 공동연구·기술제휴 - 과학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704 경제사업
한국행정 연구원	- 국가행정발전의 중추적인 두뇌집단(Think-tank)의 역할 수행 - 정치,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행정체제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개선에 관한 연구 - 다수부처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평가에 관한 연구 - 행정에 관련된 각종 국내외 정보자료수집, 관리, 지원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과 국제적 비교연구 -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 수탁 - 위 관련 연구사업의 부대사업 및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01 일반공공행정

[부록 2]의 계속

기관명	사업내용(주요 기능)	COFOG 분류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 범죄의 동향과 원인 등에 대한 조사·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 형사관계법령 및 형사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형사정책 등에 관한 공동연구 •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에 대한 연구용역의 위탁 •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 범죄문제에 대한 국민제도 및 연구 • 북한의 범죄와 형사관계법령 및 통일대비 형사정책연구 •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	703 공공질서 및 안전
한국화학 연구원	• 화학 및 관련 융·복합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 • 화학산업의 경쟁력강화와 국가신성장산업 창출	701 일반공공행정
한국환경 공단	•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환경 관련 국제협약 대응 • 환경오염방지, 환경개선 및 자원순환 관련 정책연구 개발, 지원 • 폐기물의 발생억제, 순환이용 및 친환경처리사업 • 하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에너지화시설 등 환경복합시설 설치, 운영 • 환경유해화학물질의 검사, 분석, 유해성시험, 평가관리 • 대기, 수질 등 환경측정망 및 관제센터 설치, 운영 • 탄소발생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 도시조성 지원사업	705 환경보호
한국환경 정책평가 연구원	• 환경정책과 녹색성장정책의 연구 개발 • 환경계획의 수립 및 환경정책 운용 성과의 평가 • 환경기술개발과 청정소비체제 확산을 위한 연구 개발 • 자연생태계보전 및 환경안정성확보를 위한 정책 및 기법 개발 • 지구·지역환경문제, 환경 관련 국제협약 및 무역에 관한 연구 •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적 검토 및 평가기법의 개발 보급 • 정책, 프로그램 및 행정계획의 사전환경성 검토 • 환경교육훈련 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705 환경보호
한일산업 기술협력 재단	• 산업인력의 교류협력사업 • 중소기업간 기술 및 투자알선 사업 • 협력사업 발굴·촉진을 위한 조사사업 • 과학 및 환경기술분야 공동연구·교류협력사업 • 이공계 유학생 교류협력사업	701 일반공공행정
항로표지 기술협회	• 항로표지법 제39조에 의한 협회 고유 사업 · 항로표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 항로표지 관련 국제협력과 기술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 항로표지용 장비 및 용품의 연구개발 및 검사 • 항로표지법 제40조에 의한 정부수탁 사업 · 항로표지 관련 박물관 및 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 국가가 설치, 관리하는 부표류, 철타등대 및 등주의 제작, 수리 • 항로표지법 제32조에 의한 정부대행 사업 · 항로표지 장비, 용품의 성능검사	704 경제사업

[부록 2]의 계속

기관명	사업내용(주요 기능)	COFOG 분류
	· 협회 정관에 의한 사업 · 항로표지 설치 및 기능 조사, 연구 · 항로표지의 안전조사, 기능향상 및 새로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 · 항로표지 설계 및 감리에 관한 용역 · 항로표지 관련 국내외 홍보 · 국제항로표지협회와의 협력 지원 · 국제기구의 해상교통시설 관련 최신정보 수집 및 분석 · 국제항로표지협회의 산업회원 등 항로표지 관련 업단체에 관한 기술 정보 제공 및 지도 · 항로표지관리원의 양성 및 지도 ·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개발협력 지원 사업 · 항로표지 설치 관련 기술자문 ·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한국공연 예술센터	· 한국공연예술센터의 운영, 관리사업 · 공연예술진흥 활동 및 보급 · 공연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 공연예술 관련 교육사업 · 공연예술 관련 축제사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목적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	708 휴양·문화· 종교
예술경영 지원센터	· 예술 유통구조의 체계화 및 활성화 지원 · 예술기관 운영 및 경영 관련 컨설팅 · 예술기관 경영인력 양성 및 지원 · 예술분야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 국내외 예술시장정보의 구축·관리·활용 · 서울아트마켓 개최 및 운영 · 기타 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708 휴양문화종교
북한이탈 주민지원 재단	·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 적응 지원 사업 ·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 사업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사업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상담인력의 양성과 전문상담사업 ·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민간단체협력사업 · 북한이탈주민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사업 ·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	710 사회보호
수산자원 사업단 (현 수산 자원관리 공단)	· 인공 어초, 바다숲, 바다목장의 조성 및 건강 증진사업 · 수산자원조성 관련 기술개발, 적지 및 생태조사, 효과분석 등 연구사업 · 총허용어획량(TAC) 조사사업 및 기후온난화 관련 지원사업 · 국가 및 지자체의 위탁, 대행사업 · 수산자원의 브랜드화 및 해양관광, 레저 등 이용사업	704 경제사업

[부록 2]의 계속

기관명	사업내용(주요 기능)	COFOG 분류
창업진흥원	• 유망한 예비창업자의 발굴 및 지원 • 벤처창업대전 슈퍼스타-V개최 등을 통한 창업분위기 확산 • 기업이 정신강화를 위한 창업교육(초·중·고·대학) 및 동아리지원 • 창업보육센터 입주·졸업기업의 역량강화 및 창업성공률 제고 • 지식서비스분야 창업교육 및 사업화지원 • 창업진흥 및 창업역량강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개발	704 경제사업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공예·디자인 정책연구 개발 • 국내외 공예·디자인 진흥사업 • 공예·디자인 전시사업 • 공예·디자인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사업 • 공예·디자인 상품개발 및 유통사업 • 공예·디자인 관련 아카이브 구축 및 콘텐츠 개발 • 공예·디자인 관련 서적발간 및 출판물 판매에 관한 사업 • 공예·디자인 관련 국제교류 및 국내외 협력망 구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기타 공예·디자인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708 휴양·문화·종교
한국교통연구원	• 교통·물류정책 및 기술의 연구 개발 • 교통조사사업과 교통부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투자사업,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정책수립 지원 및 연구 • 도로·철도·항공·물류·광역도시교통첨단교통분야의 계획수립과 운영, 관리에 관한 연구 • 운송물류사업의 발전전략 개발과 경영 개선방안 연구 • 교통부문의 환경정책에 관한 연구 •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 위수탁 • 교통과 관련된 단체의 직원에 대한 수탁훈련 및 교통업무에 관하여 법령으로 수탁 받은 업무 • 제1호 내지 제8호의 부대사업 및 기타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703 공공질서 및 안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노인 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 노인 일자리사업 종사자의 교육 • 노인 일자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노인 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 및 노인 인력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 지역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에 대한 지원 및 평가 • 은퇴 전·후 준비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 • 일자리와 연계된 노인사회 참여활성화에 관한 사항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704 경제사업

[부록 2]의 계속

기관명	사업내용(주요 기능)	COFOG 분류
한국디자인진흥원	• 디자인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전시사업 • 출판 및 홍보사업 • 정보화사업 • 교육연수사업 • 지방의 디자인진흥을 위한 사업 • 국제교류·협력사업 • 정부의 위탁사업 • 조사연구사업 • 디자인의 보호 및 통계조사사업 • 브랜드육성지원사업 • 기타 용역 등 수익사업과 디자인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704 경제사업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 제41조 •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개발 • 지능형 로봇산업 동향조사 및 출판·전시·홍보사업 • 제7조에 따른 지능형 로봇산업의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 지능형 로봇윤리현장의 실행·홍보에 관한 사업 • 지능형 로봇시장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및 보급·확산에 관한 사업 • 지능형 로봇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지능형 로봇제조에 대한 지원사업 •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 • 지능형 로봇제품 표준의 연구개발·보급 및 국제표준화 활동 •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에 따라 신뢰성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능형 로봇기업에 대한 기술자문 •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사업 • 지능형 로봇기업의 창업·성장 등의 지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04 경제사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갱생보호의 실시(숙식제공, 직업훈련, 주거지원, 창업지원, 취업알선, 기타자립지원, 사후지도 등)를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 • 다각적인 범죄예방 활동 전개 • 갱생보호제도의 조사연구 및 보급·홍보 •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수익사업 경영	710 사회보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사회적 기업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성공모델을 발굴·홍보 • 경영컨설팅, 사회적 기업가 교육 등 사회적 기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제공	706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록 2]의 계속

기관명	사업내용(주요 기능)	COFOG 분류
	• 사회적 기업을 위한 자본시장 기반을 조성하고 프로보노 활성화를 지원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증을 지원하고 주기적인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해 사회적 기업 발전 환경 조성 • 청년 등 사회적 기업이 육성사업 등 정부의 사회적 기업 관련 사업 수행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기업·NGO 및 종교계 등과 협력하여 민간의 사회공헌과 사회적 기업의 연계모델을 발굴하는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사회적 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한국산업 인력공단	• 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등 근로자평생학습의 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위한 기능대학설립·운영지원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매체·과정의 개발 및 이러닝(e-learning) 등 원격훈련 지원 사업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 • 근로자직업능력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업 직업방송사업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적자원개발전문가 등의 양성·관리, 공무원·교원 등에 대한 노동교육과 노동행정업무종사자 직무교육을 위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운영 지원 • 자격검정 및 자격취득자의 등록·교부관리 • 국가기술자격의 조사와 연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 해외취업지원 등 고용촉진사업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기술지원 • 숙련기술장려 • 직업능력개발훈련용 교재의 개발 및 보급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사업 • 위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 기타부대사업 • 근로자 평생학습의 지원, 직업능력개발, 자격검정, 기능장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고용보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 기타 공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09 교육
한국우편물 류지원단 (현 우체국 물류지원단)	• 우편물 운송사업 • 우편물 발착사업 • 우편물류 창고업 및 그 부대사업 • 우편물 방문 접수사업 및 집배사업 • 편지쓰기 장려 및 지원	704 경제사업
대한법률 구조공단	• 법률상담, 민사/가사/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대리,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지원 •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 및 법률복지증진	703 공공질서 및 안전

[부록 2]의 계속

기관명	사업내용(주요 기능)	COFOG 분류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 1.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2.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등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운영 4.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국가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의 수탁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주요 수련거리의 시범운영 8. 청소년활동시설이 행하는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9.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10.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거나 활동진흥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정관」 제4조) 1. 청소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활동 활성화 2.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평가 및 시범운영 3.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4. 청소년 관련 제 기관 및 시설과의 상호 연계지원·지도·평가 5.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유지·관리 및 운영 6.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교육 및 교류 진흥 7. 국내외 청소년 교류활동의 진흥 및 지원 8.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및 참여·권리증진활동의 활성화 지원 9.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청소년성취포상 제도의 운영 및 지원 10.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거나 활동진흥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709 교육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 환경기술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 환경산업육성 및 수출지원 • 환경산업·기술전문 인력양성 및 일자리창출 • 신기술인증·기술검증 및 환경마크·탄소성적표지제도 운영 • 친환경상품생산·유통·구매촉진 • 기업녹색·탄소경영활성화 • 환경산업·기술정보의 수집 및 보급	705 환경보호
한국기상 산업진흥원	• 기상산업시장의 조사·분석 및 수집정보의 이용 • 기상산업진흥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 기상산업의 창업 및 경영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 기상관측장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 대민(對民)기상상담시설 운영·관리 • 기상정보의 활용촉진을 위한 사업 • 기상산업진흥을 위한 출판·전시·홍보 • 기상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조사·연구	704 경제사업

[부록 2]의 계속

기관명	사업내용(주요 기능)	COFOG 분류
한국임업 진흥원	-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생산·유통정보지원 - 목재·목제품 등 임산물의 품질인증 - 산양삼 등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 -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및 기술지원 - 임업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이전 지원 - 산림자원 및 입지조사 설계·평가 - 임업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04 경제사업
기초과학 연구원	- 세계최고수준의 기초과학연구로 기존대학이나 출연(연)과 차별화된 대형장기집단연구 수행 - 과학벨트의 핵심연구기관으로서 글로벌 기초과학 네트워크화 - 차세대 기초과학연구 리더 육성	701 일반공공행정
남북교류 협력지원 협회	-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분석 -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정부위탁사업 - 정부에 대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대책 건의 - 남북교류협력 사업자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 기타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701 일반공공행정
농업정책 자금관리단	- 농특회계용자금에 대한 수입, 지출 및 그에 따른 융자사무 -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계정 세입 및 세출 - 임업 진흥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 농어촌 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 농림수산 사업정책자금검사 등 사후관리 - 농특회계 용자금 검사 - 농림수산사업 이차보전자금 검사 - 농림수산 정책자금 대손보전이행 대출금 검사 - 농어업 재해재보험기금 등 기금의위탁관리 및 운용 업무 - 농어업 재해재보험기금 자산 운용, 위험관리 등 여유자금 운용 - 농어업 재해재보험기금의 기금결산 등 회계업무 - 농림수산 식품투자모태조합투자관리 전문기관 업무 - 투자전략수립 및 출자사업자펀드 관리 - 리스크관리 및 투자자산 가치평가 시스템 운영 - 농식품경영체 투자상담 및 컨설팅 사업	704 경제사업
세종학당 재단	-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이나 강좌를 대상으로 세종학당 지정 및 지원 - 온라인으로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누리집(누리 세종학당) 개발·운영 - 세종학당의 한국어 표준교육과정 및 교재보급 -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원양성, 교육 및 파견지원 - 세종학당을 통한 문화교육 및 홍보사업 - 그 밖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위하여	709 교육

[부록 2]의 계속

기관명	사업내용(주요 기능)	COFOG 분류
한국건강 증진재단	- 건강증진정책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사업기획·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사업기술개발 및 기술자문·지도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사업에 필요한 지표개발 및 각종통계 생산·조사분석 및 제공과 이에 관련된 연구사업 - 건강증진·지역보건의료 관련 국내외 전문가관과의 기술정보교류 및 협력에 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지역보건 관련 교육, 연수 및 홍보 -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및 수익사업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707 보건
한국보건 의료연구원	- 과학적 근거 제시를 통한 국가보건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 건강향상에 기여 - 의료기술평가(유효성·안전성·경제성분석 등)를 통한 건강보험급여 등 정책지원 - 보건의료분야 사회적 의제 및 합의도출 모형 개발 - 선진방법론 교육 및 성과확산을 통한 근거중심 보건의료 기반 강화	707 보건
한국보육 진흥원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운영 - 보육 교직원 자격관리 - 보육인력의 전문성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 - 보육서비스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 - 보육인력양성기관 등 지원 - 지역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 이용시설 등 유관기관 지원 - 어린이집 이용 및 미이용 영유아와 가족 관련 사업 지원 - 보육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 영유아 및 보육관련사업 - 아동 및 아동복지증진 관련 사업 - 어린이집의 설치 및 인가 관련 지원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710 사회보호
한국양성 평등교육 진흥원	-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사업 - 공무원 및 일반인 등에 대한 성인지교육 - 여성역량 강화교육 및 사업 등 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교육 - 양성평등 및 성희롱예방교육 강사, 성인지정책 전문강사 등 전문 인력 양성사업 - 공무원 및 공공단체 등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교육과정을 강화 하기 위한 교류협력 지원사업 - 양성평등 의식확산을 위한 원격교육 연수사업 - 상기사업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연구, 관련자료 발간/보급 사업 - 상기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상기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 - 기타 진흥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709 교육

[부록 2]의 계속

기관명	사업내용(주요 기능)	COFOG 분류
한국의료 분쟁조정 중재원	•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국민 및 외국인이 구하는 의료사고와 관련한 기초적 상담부터 고액의 중상해·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까지 포괄적인 의료분쟁해결 전담역할을 수행하며 소송전 단계에서 전체 기능 담당 • 환자측의 단순불만족 해소를 위한 기초상담 제공 • 분쟁해결절차(소송, 조정, 피해구제 등) 및 절차진행방법에 관련된 법률조항의 해석과 정보의 제공 •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판단, 양당사자가 만족할만한 조정 결과의 도출 • 재시술, 진료비 환급 등을 요구하는 경과실·소액사건부터 중상해·사망이 야기된 고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까지 포괄	707 보건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	• 의약품 안전정보의 수집·분석·평가·관리 및 제공 • 의약품 안전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의약품안전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 약화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규명 • 의약품 안전정보의 개발·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707 보건
(재)한국문 화정보센터	1.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정보화 추진 체계 지원 2. 문화정보화 및 문화지식관리시스템 기획 및 중장기방향연구의 지원 3. 문화정보화 및 문화지식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4.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문화정보화사업 발굴/추진 및 지원 5. 문화정보화에 대한 지표의 조사/개발 및 통계자료의 관리지원 및 문화정보화 관련 정보의 출판/보급 지원 6. 문화정보시스템관리 및 운영지원 7. 문화정보시스템 및 지식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8. 문화정보화 사업평가지침 개발, 평가 및 지원 9. 문화정보시스템 연계/통합 및 정보공동 활용을 위한 표준개발 지원 10. 문화정보화기술개발 연구 11.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 및 법령/제도 개선방향 연구 12. 기타 센터의 설립목적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사항 13. 문화관련 동영상콘텐츠(UCC)생산 및 관리, 문화PD양성 및 문화네트워크관리 14. 문화체육관광분야 통계의 조사·분석, 통합관리·보급 등 및 통계정보시스템의 통합적 서비스 및 운영 등 지원 15. 문화정보화 관련 교육 등 인력양성 및 교육시설 운영 등을 통한 연수사업 16.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신탁관리 및 관련사업	708 휴양·문화· 종교

[부록 2]의 계속

기관명	사업내용(주요 기능)	COFOG 분류
서울대학교		709 교육
울산과기대		709 교육
국립생태원	• 생태에 관한 조사·연구·평가, 기후대별 생태계변화 관찰 및 적응 등 연구 •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평가 및 생태계 복원 등 연구 • 생태계 교란생물 및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생태계 위해 관리에 관한 연구 • 동·식물 등 생태관련 전시, 체험 및 홍보시설 조성 및 운영 • 생태관련 교재·교구개발, 보급, 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 국내외 생태관련 연구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및 생태계 정보망 구축 • 생태관광육성 및 그 지역 소득사업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705 환경보호
항공안전 기술센터	• 민간항공기, 공항시설, 항행시설 등에 대한 인증수행 및 인증기술 연구 •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정성·성능시험 수행 및 성능시험에 관한 기술 연구 • 항공기 등의 중요결함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항공기술·정비 및 항공사고예방기술 등에 대한 연구 • 항공·공항분야 안전기술 및 기술 인프라구축 정책 연구 • 항공기·운항·관제통신·공항 등 항공보안·환경기술연구 • 항공기·공항·항행기술분야의 국제표준화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 등	703 공공질서 및 안전
한국건강 가정진흥원	•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반 사업 •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및 통·번역 지원, 각종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홍보 및 서비스 연계, 일자리 알선 등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업 •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지원 •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및 민간기관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 기타 진흥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707 보건
한국여성 인권진흥원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활성화 • 폭력피해여성 지원대책 연구 및 여성인권정책 형성 • 폭력피해여성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네트워크 강화 • 여성인권 인식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710 사회보호

[부록 2]의 계속

기관명	사업내용(주요 기능)	COFOG 분류
한국공정 거래조정원	• 분쟁조정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 및 대규모 유통업거래에 있어 서의 불공정행위 및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분쟁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의의 조정을 통해 해결 • 분쟁조정대상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제1항을 위반한 혐 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 ※ 거래상지위남용, 거래거절, 사업활동방해, 차별적취급 등 가맹 사업거래 관련 당사자간의 분쟁 ※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 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등 하도급 관련 당사자간의 분쟁 ※ 하도급대금미지급, 부당감액, 어음할인료미지급, 부당한 발주 취소·수령거부 등 대규모 유통업 관련 당사자간의 분쟁 ※ 상품대금미지급, 판촉비용의 부담전가,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의 변경 등 약관 관련 당사자간의 분쟁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을 배제·제한하는 약관 등 불공 정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 시장연구 시장·산업의 분석 및 사업자의 거래관행과 행태분석 등 경쟁 당국의 합리적인 경쟁정책 수립 및 효율적인 법집행을 지원 하기 위한 주요 산업별 경쟁 제한성 분석 및 업종별 거래행태에 대한 조사·연구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추진 정보공개서등록, 공정거래지율준수프로그램(CP)등급평가, 모 의공정위경연대회 등 공정위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추진하 여 사회 전반의 경쟁원리 확산, 대·중소기업간 거래질서 개 선을 위한 다양한 업무 수행을 통해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 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	701 일반공공행정
아시아문화 개발원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 콘텐츠 기획·제작 등 기본계획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 아시아문화콘텐츠제작·유통활성화 및 연구개발, 아시아문화콘 텐츠 전략 및 사업계획 수립 등	708 휴양·문화· 종교
워터웨이 플러스	• 경인아라뱃길의 효율적 운영관리(뱃길경관 유지관리, 마리나운 영, 친수 관광, 레저시설 개발 운영, 뱃길 운영시설 점검정비 등) 및 4대강 문화관 운영관리	708 휴양·문화· 종교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알리오시스템(<http://www.alio.go.kr/home.html>); 각 비영리공공기관 홈페이지 등(검색일자: 2015.10.28)에 근거하여 저자 작성

[부록 3] COFOG-K 분류 체계(안)

코드			항 목 명
분야	부문	등급	
7			총지출
701			일반 공공행정
	7011		행정 및 입법기관, 금융 및 재정, 국외 업무
		70111	행정 및 입법 기관(CS)
		70112	금융 및 재정(CS)
		70113	국외 업무(CS)
	7012		해외 경제원조
		70121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에 대한 경제원조(CS)
		70122	국제기구를 통한 경제원조(CS)
	7013		일반 서비스
		70131	일반 인사행정(CS)
		70132	총괄 계획 및 통계행정(CS)
		70133	기타 일반 행정(CS)
	7014		기초연구
		70140	기초연구(CS)
	7015		일반 공공행정 R&D
		70150	일반 공공행정 R&D(CS)
	7016		기타 미분류 일반 공공행정
		70160	기타 미분류 일반 공공행정(CS)
	7017		공공 채무 거래
		70170	공공 채무 거래(CS)
	7018		정부 간 일반 이전
		70180	정부 간 일반 이전(CS)
702			국방
	7021		군사 방어
		70210	군사 방어(CS)
	7022		민방위

[부록 3]의 계속

코드			항 목 명
분야	부문	등급	
		70220	민방위(CS)
	7023		해외 군사원조
		70230	해외 군사원조(CS)
	7024		국방 R&D
		70240	국방 R&D(CS)
	7025		기타 미분류 국방
		70250	기타 미분류 국방(CS)
703			공공질서 및 안전
	7031		경찰서비스
		70310	경찰서비스(CS)
	7032		소방서비스
		70320	소방서비스(CS)
	7033		법원
		70330	법원(CS)
	7034		교도소
		70340	교도소(CS)
	7035		공공질서 및 안전 R&D
		70350	공공질서 및 안전 R&D(CS)
	7036		기타 미분류 공공질서 및 안전
		70360	기타 미분류 공공질서 및 안전(CS)
704			경제활동
	7041		일반 경제, 상업, 노동
		70411	일반 경제 및 상업(CS)
		70412	일반 노동(CS)
	7042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
		70421	농업(CS)
		70422	임업(CS)

[부록 3]의 계속

코드			항 목 명
분야	부문	등급	
		70423	어업 및 수렵(CS)
	7043		연료 및 에너지
		70431	석탄 및 기타 고체 광물 연료(CS)
		70432	석유 및 천연 가스(CS)
		70433	핵연료(CS)
		70434	기타 연료(CS)
		70435	전기(CS)
		70436	비전기 에너지(CS)
	7044		광업, 제조, 건설
		70441	광물 연료 외의 광물 자원의 채굴(CS)
		70442	제조(CS)
		70443	건설(CS)
	7045		운송
		70451	도로 운송(CS)
		70452	수상 운송(CS)
		70453	철도 운송(CS)
		70454	항공 운송(CS)
		70455	수송관 및 기타 운송(CS)
	7046		통신
		70460	통신(CS)
	7047		기타 산업
		70471	유통, 보관, 창고업(CS)
		70472	호텔 및 식당(CS)
		70473	관광(CS)
		70474	다목적 개발 사업(CS)
	7048		경제 R&D
		70481	일반 경제, 상업, 노동 R&D(CS)

[부록 3]의 계속

코드			항 목 명
분야	부문	등급	
		70482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 R&D(CS)
		70483	연료 및 에너지 R&D(CS)
		70484	광업, 제조, 건설 R&D(CS)
		70485	운송 R&D(CS)
		70486	통신 R&D(CS)
		70487	기타 산업 R&D(CS)
	7049		기타 미분류 경제
		70490	기타 미분류 경제(CS)
705			환경보호
	7051		폐기물 관리
		70510	폐기물 관리(CS)
	7052		폐수 관리
		70520	폐수 관리(CS)
	7053		공해 방지
		70530	공해 방지(CS)
	7054		생물 다양성 및 경관 보호
		70540	생물 다양성 및 경관 보호(CS)
	7055		환경보호 R&D
		70550	환경보호 R&D(CS)
	7056		기타 미분류 환경보호
		70560	기타 미분류 환경보호(CS)
706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7061		주거 개발
		70610	주거 개발(CS)
	7062		지역사회 시설 개발
		70620	지역사회 개발(CS)
	7063		수도 공급

[부록 3]의 계속

코드			항 목 명
분야	부문	등급	
		70630	수도 공급(CS)
	7064		가로등
		70640	가로등(CS)
	7065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R&D
		70650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R&D(CS)
	7066		기타 미분류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70660	기타 미분류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CS)
707			보건
	7071		의료 제품, 기기, 장비
		70711	의약품(S)
		70712	기타 의료 제품(S)
		70713	치료 기기와 장비(S)
	7072		외래 환자서비스
		70721	일반 의료서비스(S)
		70722	전문 의료서비스(S)
		70723	치과서비스(S)
		70724	준의료서비스(S)
	7073		병원서비스
		70731	종합병원서비스(S)
		70732	전문병원서비스(S)
		70733	진료소 및 조산소 서비스(S)
		70734	간병소 및 요양소 서비스(S)
	7074		공공 보건서비스
		70740	공공 보건서비스(S)
	7075		보건 R&D
		70750	보건 R&D(CS)
	7076		기타 미분류 보건

[부록 3]의 계속

코드			항 목 명
분야	부문	등급	
		70760	기타 미분류 보건(CS)
708			휴양, 문화, 종교
	7081		휴양 및 스포츠서비스
		70810	휴양 및 스포츠서비스(S)
	7082		문화서비스
		70820	문화서비스(S)
	7083		방송 및 출판서비스
		70830	방송 및 출판서비스(CS)
	7084		종교 및 기타 공동체 서비스
		70840	종교 및 기타 공동체 서비스(CS)
	7085		휴양, 문화, 종교 R&D
		70850	휴양, 문화, 종교 R&D(CS)
	7086		기타 미분류 휴양, 문화, 종교
		70860	기타 미분류 휴양, 문화, 종교(CS)
709			교육
	7091		유아 및 초등교육
		70911	유아교육(S)
		70912	초등교육(S)
	7092		중등교육
		70921	하위 중등교육(S)
		70922	상위 중등교육(S)
	7093		2차 중등교육
		70930	2차 중등교육(S)
	7094		고등교육
		70941	고등교육의 첫 번째 단계(S)
		70942	고등교육의 두 번째 단계(S)
	7095		등급 외 교육

[부록 3]의 계속

코드			항 목 명
분야	부문	등급	
		70950	등급 외 교육(S)
	7096		교육 보조 서비스
		70960	교육 보조 서비스(S)
	7097		교육 R&D
		70970	교육 R&D(CS)
	7098		기타 미분류 교육
		70980	기타 미분류 교육(CS)
710			사회보호
	7101		질병 및 장애
		71011	질병(S)
		71012	장애(S)
	7102		노령
		71020	노령(S)*
	7103		유족
		71030	유족(S)
	7104		가족 및 자녀
		71040	가족 및 자녀(S)
	7105		실업
		71050	실업(S)
	7106		주거
		71060	주거(S)
	7107		기타 미분류 사회적 배제
		71070	기타 미분류 사회적 배제(S)
	7108		사회보호 R&D
		71080	사회보호 R&D(CS)
	7109		기타 미분류 사회보호
		71090	기타 미분류 사회보호(CS)

[부록 3]의 계속

코드			항 목 명
분야	부문	등급	
711			공적연금**
	7111		공적연금
		7111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S)
		71112	군인연금기금(S)
		71113	공무원연금기금(S)
		71114	국민연금 여유자금 운용분(S)

* 노령 부문 중 공적연금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현금 및 현물 사회보호 급여 제공분.

** 노령 부문 중 군인 및 정부 피용자에 대한 연금제도,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연금제도, 국민연금 기금운영비 및 여유자금 운용분 등 포함.

자료: GFS 2014를 토대로 저자 작성

[부록 4] COFOG의 상세 분류(요약)⁴¹⁾

701 일반 공공행정

□ 7011 행정 및 입법 기관, 금융 및 재정, 대외 업무

○ 70111 행정 및 입법 기관(CS)

- 행정부 수반(왕·총통·대통령·수상·지사·시장 등) 및 입법기관(의회·하원·상원·국회·시의회 등)의 관리 운영 등(집무실)
- 행정부 수반 집무실 및 입법기관에 소속된 자문·관리·정치 보좌진, 지원 도서관 및 기타 정보자료실, 체육시설, 상임 또는 특별 위원회(제외) 특정 기능(기능에 따른 분류)과 관련된 장관 집무실 및 범부처 위원회

○ 70112 금융 및 재정(CS)

- 기금 및 공공채무 관리, 조세제도 운영, 재무부 또는 재정부·예산실·국세청·관세청·회계 및 감사, 금융 및 재정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일반정보·기술문서·통계의 생산 및 보급
(제외) 인수 또는 발행 수수료 및 정부 용자에 대한 이자지급(70170)과 금융산업 감독(70411)

○ 70113 대외 업무(CS)

- 외무부 및 재외공관이나 국제기구 사무국 운영, 해외 보급을 위한 정보와 문화서비스의 운영·지원,
- 해외에 위치한 도서관·자료실·정보 서비스의 운영·지원,
- 국제기구의 일반운영비 충당을 위한 정기 불입금과 특별 기여금
(제외)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에 대한 경제원조(70121), 외국정부에 파견된 경제원조단(70121), 국제기구 또는 지역기구가 관리하는 구호 프로그램 기여금(70122), 해외주둔 군대(70210), 외국군 군사원조(70230), 일반 해외 경제 및 상업(70411), 관광 및 서비스(70473)

41) IMF, GFSM 2014, 6장 부록의 '정부기능별 상세 분류' 내용번역요약.

□ 7012 해외 경제원조

○ 70121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에 대한 경제원조 (CS)

-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과의 경제협력 관리
- 외국정부에 파견된 경제원조단 운영
- 기술 지원 프로그램 · 교육 프로그램 · 장학금 제도의 운영 · 지원
- 출연(현금 또는 현물)이나 용자(부과되는 이자와 상관없이) 형태의 경제 원조

(제외) 국제기구 또는 지역기구가 관리하는 경제개발기여금(70122) 및 외국군 군사원조(70230)

○ 70122 국제기구를 통한 경제원조(CS)

- 국제기구를 통한 경제원조
- 국제기구 · 지역기구 · 기타 다국적 기구가 관리하는 경제개발기여금 (현금 또는 현물)

(제외) 국제 평화유지 활동 원조(70230)

□ 7013 일반 행정

: 특정 기능과 연관되지 않는 행정서비스

- 중앙에서 수행하는 특정 기능과 연관된 행정서비스(예, 중앙 통계기관에 의한 산업 · 환경 · 보건 · 교육 통계의 작성)

○ 70131 일반 인사행정(CS)

- 일반적인 인사 정책의 개발
- 선발 · 진급 · 평가 방법 · 직무 기술 · 평가분류를 포함한 절차 및 복무규정 관리 등

(제외) 특정 기능(기능에 따른 분류)과 연관된 인사 관리 및 서비스

○ 70132 총괄 계획 및 통계 행정(CS)

- 전체 경제 및 사회 계획과 프로그램
 - 전체 통계 계획과 프로그램의 수립·조정·점검 포함 행정서비스의 관리 및 운영
- (제외) 특정 기능(기능에 따른 분류)과 연관된 경제 및 사회 계획·통계

○ 70133 기타 일반 행정(CS)

- 중앙 공급 및 구매 서비스
 - 정부기록과 문서의 유지 및 보관
 - 정부소유 또는 점유 건물의 운영, 중앙 차량 관리소, 정부운영 인쇄소
 - 중앙 컴퓨터 및 데이터 처리 서비스 등
- (제외) 특정 기능(기능에 따른 분류)과 연관된 기타 일반 행정서비스

□ 7014 기초연구

: 관찰된 사실의 기본 토대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수행되는 실증적 또는 이론적 업무

○ 70140 기초연구(CS)

- 기초연구에 종사하는 정부 기관의 관리 및 운영
 - 연구기관·대학 등이 수행하는 기초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출연·용자·보조
- (제외) 응용연구와 실험개발(기능별 분류)

□ 7015 일반 공공행정 R&D

: 응용연구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수행되는 창의적인 연구(실용 목표지향)를 말하며, 실험개발은 새로운 제품(장비) 등을 생산, 새로운 공정, 시스템을 설치 또는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제품을 상당히 개선시키기 위해 연구 및 기존 지식에 기초한 체계적 작업을 말함

- 70150 일반 공공행정 R&D(CS)
 - 일반 공공행정과 관련된 응용연구와 실험개발에 종사하는 정부기관의 관리 및 운영
 - 연구기관·대학 등이 수행하는 일반 공공행정과 관련된 응용연구와 실험개발을 위한 출연·용자·보조
- (제외) 기초연구(70140)

- 7016 기타 미분류 일반 공공행정
 - 70160 기타 미분류 일반 공공행정(CS)
 - 투표자 등록, 선거와 투표의 실시, 비자치 및 신탁 지역의 관리 등
 - (7011), (7012), (7013), (7014), (7015)로 지정될 수 없는 일반 공공행정
 - (제외) 공공채무 거래(7017), 정부 간 일반이전(7018)

- 7017 공공채무 거래
 - 70170 공공채무 거래(CS)
 - 정부 용자의 인수 및 발행을 위한 이자지급액 및 비용
 - (제외) 공공채무 관리관련 행정비용(70112)

- 7018 정부 간 일반 이전
 - 70180 정부 간 일반 이전(CS)
 - 일반적 성격(특정 기능으로 할당되지 않는)의 정부 간 이전

702 국방

- 7021 군사 방어
 - 70210 군사 방어
 - 군사 방어 활동
 - 육·해·공군, 우주방위군의 운영
 - 공병·수송·통신·정보·인사·기타 비전투 방위부대의 운영

- 예비 및 보조 부대의 운영 또는 지원
 - 해외 주둔 부관 사무실, 야전 병원.
- (제외) 군사 원조단(70230), 후방 병원(7073), 입학생이 군 인력과 그 가족에 한정되지만 교과 과정이 민간 교육기관과 유사한 군사학교 및 대학(7091, 7092, 7093, 7094), 군인연금제도(7102)

□ 7022 민방위

○ 70220 민방위(CS)

- 민방위 활동
 - 비상 계획 수립, 민간 기관과 민간인이 참여하는 군사 훈련의 편성
 - 민방위 병력의 운영 또는 지원
- (제외) 시민보호 서비스(70320), 재해 대비 비상용 식품·장비·기타 보급품의 구입 및 저장(71090)

□ 7023 해외 군사원조

○ 70230 해외 군사원조(CS)

- 군사원조 관리, 외국 정부파견 또는 국제 군사기구나 동맹국에 소속된 군사지원단 운영
- 출연(현금 또는 현물)·용자(부과되는 이자와 상관없이)·장비 대여 형태의 군사원조
- 인력 제공을 포함한 국제 평화유지군 기여금

□ 7024 국방 R&D

○ 70240 국방 R&D(CS)

- 국방과 관련된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에 종사하는 정부기관의 관리 및 운영
- 연구기관·대학 등이 수행하는 국방 관련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 지원을 위한 출연·용자·보조

(제외) 기초연구(70140)

□ 7025 기타 미분류 국방

○ 70250 기타 미분류 국방(CS)

- 국방관련 정책·계획·프로그램 및 예산의 수립·집행·조정·점검
활동의 관리·운영·지원
- 국방 관련 법안의 작성 및 시행
- 국방에 대한 일반정보·기술문서·통계의 생산 및 보급
- (7021), (7022), (7023), (7024)로 지정될 수 없는 국방활동 및 서비스

(제외) 퇴직 군인관리(7102)

703 공공질서 및 안전

□ 7031 경찰서비스

○ 70310 경찰서비스(CS)

- 외국인 등록과 이민자에 대한 취업 및 여행서류 발급
- 범죄 기록 및 치안 관련 통계의 유지
- 도로 교통 규제 및 통제, 밀수 방지
- 연·근해와 원양 어업 통제 등 경찰 활동 및 서비스
- 정규 및 보조 경찰병력/항만·국경·해안 경비대·당국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타 특수 경찰운영
- 경찰 과학수사연구소 운영
- 경찰 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또는 지원
- 교통 감시관

(제외) 경찰훈련 및 일반 교육을 제공하는 경찰대학(7091, 7092, 7093, 7094)

□ 7032 소방서비스

○ 70320 소방서비스(CS)

- 화재예방 및 소방활동
 - 관련당국의 재정지원을 받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소방대
 - 기타 화재 예방과 소방 서비스 운영
 - 화재 예방 및 소방 훈련 프로그램 운영 또는 지원
 - 산악 구조·해변 감시·홍수 대피 등 시민보호
- (제외) 민방위(70220), 산불 진화 또는 예방을 위한 특수 훈련과 장비를 갖춘 인력(70422)

□ 7033 법원

○ 70330 법원(CS)

- 법원이 부과하는 벌금과 법원 판결의 집행을 포함하는 민·형사 법원
 - 사법 제도의 관리·운영·지원과 가석방과 보호 관찰 제도 운영
 - 행정 심판소, ombudsman 등과 같은 정부대행 또는 정부가 현금이나 서비스로 공급하는 다른 기관을 대행하는 법정 대리자와 자문
- (제외) 교도소 관리(70340)

□ 7034 교도소

○ 70340 교도소(CS)

- 교도소 농장·작업장·감화원·소년원·정신 이상 죄수 보호시설 등과 같은 교도소
- 범죄자의 구금이나 갇생을 위한 기타 시설의 관리·운영·지원

□ 7035 공공질서 및 안전 R&D

○ 70350 공공질서 및 안전 R&D(CS)

- 공공질서 및 안전과 관련된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에 종사하는 정부 기관의 관리 및 운영
- 연구기관·대학 등이 수행하는 공공질서 및 안전관련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 지원을 위한 출연·용자·보조

(제외) 기초연구(70140)

□ 7036 기타 미분류 공공질서 및 안전

○ 70360 기타 미분류 공공질서 및 안전(CS)

- 공공질서 및 안전 관련 정책·계획·프로그램 및 예산의 수립·집행·조정·점검 등 관리·운영·지원
- 공공질서 및 안전의 제공에 대한 법안과 표준의 작성 및 시행
- 공공질서 및 안전에 관한 일반정보·기술문서·통계의 생산 및 보급
- (7031), (7032), (7033), (7034), (7035)로 지정될 수 없는 공공질서 및 안전 활동

704 경제활동

□ 7041 일반 경제, 상업, 노동

○ 70411 일반 경제 및 상업(CS)

- 해외 상업 활동을 포함한 일반적인 경제·상업 활동
- 일반적인 경제·상업 정책의 수립 및 집행
- 정부부처 간 및 정부와 기업 간 교섭
- 전반적인 수출입 거래 같은 일반 경제·상업적 활동
- 상품과 주식시장, 전체 소득 통제
- 일반적인 무역 진흥 활동의 규제나 지원 및 독점기업
- 기타 무역장벽 및 시장진입 제한 등 일반적 규제, 은행 감독
- 특허권·상표권·저작권·회사 등기·일기예보·표준·수자원 조사·측량 등 기관 운영 또는 지원
- 일반적 경제·상업 정책 및 프로그램 진흥을 위한 출연·융자·보조
- 소비자 교육 및 보호.

(제외) 특정 산업의 경제 및 상업 활동((7042)에서 (7047)까지의 적절한 항목으로 분류됨)

○ 70412 일반 노동(CS)

- 일반적 노동활동 및 노동정책의 수립 및 이행
- 근로조건(작업시간·임금·안전 등)의 감독 및 규제
- 정부부처 간 및 정부와 산업·기업·노동단체 간 교섭
- 노동 유연성 제고, 성별·인종·연령·기타 차별 감소, 빈곤지역과 저개발 지역 실업률 감소, 취약 계층과 기타 실업률이 높은 그룹의 고용 증진을 위한 일반 프로그램 또는 제도의 운영 및 지원, 직업소개소 운영, 중재 및 조정 서비스 운영 또는 지원
- 일반 노동활동 및 서비스에 관한 일반정보·기술문서·통계의 생산 및 보급
- 일반 노동정책 및 프로그램을 증진하기 위한 출연·용자·보조(제외) 실업자에 대한 현금 및 현물 급여의 형태로 제공되는 사회보호(71050)

□ 7042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

○ 70421 농업(CS)

- 농업 활동, 경작지의 보존·개간·확장, 농지 개혁 및 토지 정착, 농업 감독 및 규제
- 홍수 통제·관개·배수 체계의 건설 또는 운영 및 관련 출연·용자·보조
- 농산물 가격과 농가 소득 안정 개선 프로그램이나 제도의 운영 또는 지원
- 농부에 대한 영농 기술 및 수의 서비스·방제 서비스·농산물 검사와 등급 서비스의 운영 및 지원
- 농업 활동 및 서비스에 대한 일반정보·기술문서·통계의 생산 및 보급
- 특정 농산물의 생산 제한 또는 장려를 위한 지급 또는 비경작지의 유지 등 농업 활동과 농부에 대한 보상·출연·용자·보조(제외) 다목적 개발 사업(70474)

○ 70422 임업(CS)

- 임업 활동 및 서비스의 관리, 산림 자원의 보존·확장·합리적 이용, 산림 운영 및 벌목 허가권 발급의 감독과 규제
- 산림 운영자에 대한 재 조림 사업·병충해 방제·산불 진화 및 예방 서비스·영농 기술서비스 등의 운영 또는 지원
- 임업 활동 및 서비스에 대한 일반정보·기술문서·통계의 생산 및 보급
- 상업적인 임업 활동 지원을 위한 출연·용자·보조
- 목재 및 임산물

○ 70423 어업 및 수렵(CS)

: 상업적인 어업 및 수렵, 그리고 스포츠용 어업 및 수렵을 모두 포함.
아래에 열거된 어업 및 수렵 활동과 서비스는 국립공원과 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활동을 의미

- 어업 및 수렵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관리, 어류 및 야생 동물의 보호·증식·합리적 이용, 민물 어업·연근해어업·원양어업·양식업·야생동물 수렵·어업 및 수렵 허가권의 발행에 대한 감독 및 규제
- 어류 부화장, 양어 기술 지원, 방류, 선별 작업 등의 운영 또는 지원
- 어업 및 수렵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일반정보, 기술문서, 통계의 생산 및 보급
- 어류 부화장의 건설 또는 운영을 포함한 상업적인 어업 및 수렵 활동 지원을 위한 출연·용자·보조

(제외) 연근해어업 및 원양어업의 통제(70310), 자연공원 및 보호구역의 관리·운영·지원(70540)

□ 7043 연료 및 에너지

○ 70431 석탄 및 기타 고체 광물 연료(CS)

: 추출 또는 선풍, 코크스나 가스 같은 다른 형태로 전환에 사용되는 방법에 상관없이 모든 등급의 석탄, 갈탄, 이탄을 포함

- 고체 광물 연료 관련 활동과 서비스의 관리, 고체 광물 연료 자원의 보존·탐사·개발·합리적 이용, 고체 광물 연료의 채굴·가공·유통·사용에 대한 감독 및 규제
- 고체 광물 연료 관련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일반정보, 기술문서, 통계의 생산 및 보급
- 고체 광물 연료 산업과 코크스, 연탄, 가스 제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용자·보조

(제외) 고체 광물 연료 수송 활동(7045의 적절한 항목으로 분류됨)

○ 70432 석유 및 천연 가스(CS)

- : 천연가스, LPG 및 정제가스, 유전이나 셰일, 사암 같은 기타 자원으로부터의 석유, 그리고 그 구성물에 상관없이 유통되는 도시가스 등 포함
- 석유 및 천연가스 관련 활동과 서비스의 관리,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의 보존·탐사·개발·합리적 이용, 석유 및 천연가스의 채굴·가공·유통·사용에 대한 감독 및 규제
- 석유 및 천연가스 관련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일반정보, 기술문서, 통계의 생산 및 보급
- 석유추출 산업, 원유 및 이와 관련된 액체 및 기체 생산물을 정제하는 산업지원의 출연·용자·보조

(제외) 석유 또는 가스 수송 관련 활동(7045의 적절한 항목으로 분류됨)

○ 70433 핵연료(CS)

- 핵연료 관련 활동 및 서비스에 대한 관리, 핵물질 자원의 보존·탐사·개발·합리적 이용, 핵연료 물질의 추출·처리 및 핵연료 요소의 제조·유통·사용에 대한 감독 및 규제
- 핵연료 관련 활동 및 서비스에 대한 일반정보, 기술문서, 통계의 생산 및 보급.

- 핵물질 광업 및 핵물질 처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용자·보조(제외) 핵연료 수송 관련 활동(7045의 적절한 항목으로 분류됨), 방사능 폐기물의 처리(70510)

○ 70434 기타 연료(CS)

- 알코올, 목재 및 목재 폐기물, 사탕수수 찌꺼기 및 기타 비상업적 연료 등을 포함
- 이러한 연료의 가용성, 생산, 이용에 대한 일반정보, 기술문서, 통계의 생산 및 보급
- 이들 연료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을 증진하기 위한 출연·용자·보조(제외) 산림 관리(70422), 풍력 및 태양열(70435), 지열 자원(70436).

○ 70435 전기(CS)

- : 열 또는 수자원과 같은 전통적 전력원뿐 아니라 풍력 또는 태양열 같은 새로운 전력원을 포함
- 전기 관련 활동 및 서비스, 전기 공급원의 보존·개발·합리적 이용, 발전·송전·배전의 감독 및 규제
- 비사업체형 전기 공급 시스템의 건설 또는 운영
- 전기 관련 활동 및 서비스에 대한 일반정보, 기술문서, 통계의 생산 및 보급
- 주로 전기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댐 건설과 기타 작업들에 대한 비용을 포함한 전기공급 산업 지원을 위한 출연·용자·보조(제외) 풍력 또는 태양열에 의해 생산된 비전기 에너지(70436)

○ 70436 비전기에너지(CS)

- 증기, 고온 수, 고온 공기 형태의 열을 생산, 유통,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비 전기에너지 관련 활동
- 비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는 비사업체형 시스템의 건설 또는 운영

- 비 전기에너지의 가용성, 생산, 이용에 대한 일반정보, 기술문서, 통계의 생산 및 보급
- 비 전기에너지의 사용 촉진을 위한 출연·용자·보조
- 지열자원, 풍력, 또는 태양열에 의해 생산된 비 전기에너지

□ 7044 광업, 제조, 건설

○ 70441 광물 연료 외의 광물 자원의 채굴(CS)

: 금속 광물, 모래, 점토, 암석, 화학 및 비료광물, 소금, 보석, 석면, 석고 등을 포함

- 채굴 및 광물자원 관련 활동과 서비스의 관리, 광물 자원의 보존·탐사·개발·합리적 이용, 시굴·채굴·판매·기타 광물 생산에 대한 감독 및 규제
- 채굴 및 광물 자원 관련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일반정보, 기술문서, 통계의 생산 및 보급
- 상업적인 광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용자·보조
- 허가권 및 임대권의 발급, 생산율 규제, 광산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 감독 등

(제외) 석탄 및 기타 고형연료(70431), 석유 및 천연가스(70432), 핵연료 물질(70433)

○ 70442 제조(CS)

- 제조업 활동과 서비스의 관리, 제조업의 개발·확대·개선, 제조 공장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감독 및 규제, 제조업 협회 및 제조 활동과 서비스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여타 기관과의 연계
- 제조업 활동 및 제조업 생산물에 대한 일반정보, 기술문서, 통계의 생산 및 보급
- 제조업체 지원을 위한 출연·용자·보조
- 안전규정 준수 여부확인을 위한 제조업 현장의 감독, 유해 생산물에

대한 소비자 보호 등
(제외) 석탄가공 산업(70431), 석유정제 산업(70432), 핵연료 산업(70433)
에 관한 활동

○ 70443 건설 (CS)

- 건설업 활동과 서비스의 관리, 건설산업의 감독, 건설기준의 개발 및 규제
- 건설업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일반정보, 기술문서, 통계의 생산 및 보급
- 점유 허가권의 발급, 안전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건설현장 조사 등
(제외) 주거용 및 산업용 건물·도로·공익기업·문화시설물 등의 건설
을 위한 출연·용자·보조(기능별분류), 주거기준의 개발 및 규제
(70610)

□ 7045 운송

○ 70451 도로 운송(CS)

- 도로운송 체계와 시설물(도로, 교량, 터널, 주차장, 버스터미널 등) 운영, 건설, 유지와 관련된 활동
- 도로이용자의 감독 및 규제(차량 및 운전면허, 차량안전검사, 승객 및 화물용 도로 운송수단 크기, 적재중량 표시, 버스, 고속버스, 트럭 운전기사의 근로시간 규제 등), 도로 운송 체계 운영의 감독 및 규제(사업허가, 화물요금, 승객요금과 영업시간, 영업횟수의 승인 등), 도로건설 및 관리 감독 및 규제
- 비사업체형 도로 운송 체계와 시설물의 건설 또는 운영
- 도로 운송 체계 운영 및 도로건설 활동에 대한 일반정보, 기술문서, 통계의 생산 및 보급
- 도로 운송 체계와 시설물의 운영, 건설, 관리,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용자·보조

- 고속도로, 도시 도로, 거리, 자전거 도로 및 보도
- (제외) 도로교통 통제(70310), 도로 차량 제조업자에 대한 출연·용자·보조(70442), 도로청소(70510), 소음 저감 표면으로 도시 고속도로 구간의 재포장을 포함한 소음방지벽과 울타리 및 기타 소음방지 시설물의 건설(70530), 가로등(70640)

○ 70452 수상 운송(CS)

- 내수면, 연근해, 원양 운송체계와 시설물(항만, 도크, 항해 보조물 및 보조 시설물, 운하, 교량, 터널, 해협, 방파제, 부두, 선창, 터미널 등)의 운영, 사용, 건설, 관리에 관한 활동 및 서비스의 관리
- 수상 운송 이용자의 감독 및 규제(선박 및 선원의 등록, 면허, 감독, 승객 안전 및 화물보안 규제 등), 수상 운송 체계 운영의 감독 및 규제(사업 허가, 화물 요금, 승객 요금과 영업시간, 영업횟수의 승인 등), 수상 운송 시설물의 건설 및 관리의 감독 및 규제
- 비사업체형 수상 운송 체계 및 시설물(페리 등)의 건설 또는 운영
- 수상운송 체계 운영과 수상운송 시설물 건설활동에 대한 일반정보, 기술문서, 통계의 생산 및 보급
- 수상 운송 체계와 시설물의 운영, 건설, 유지,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용자·보조
- 무선 및 위성 항법 보조, 긴급 구조 및 예인 활동
- (제외) 조선업자들에 대한 출연·용자·보조(70442)

○ 70453 철도 운송(CS)

- 철도 운송 체계 및 시설물(철도노반, 터미널, 터널, 교량, 제방, 절개지 등)의 운영, 사용, 건설, 관리에 관한 활동 및 서비스의 관리
- 철도 이용자의 감독 및 규제(철도 차량 상태, 노반 안정성, 승객 안전, 화물 보안 등), 철도 운송 체계 운영의 감독 및 규제(사업 허가, 화물 요금, 승객요금과 영업시간, 영업횟수의 승인 등), 철도 건설,

관리의 감독 및 규제

- 비사업체형 철도 운송 체계 및 시설물의 건설 또는 운영
- 철도 운송 체계 운영과 철도 건설 활동에 대한 일반정보, 기술문서, 통계의 생산 및 보급
- 철도 운송 체계와 시설물의 운영, 건설, 관리,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용자·보조
- 장거리 및 도시 간 철도 운송 체계 또는 도시 고속 철도 운송 체계 및 시내 철도 운송 체계, 철도 차량의 취득 및 유지보수
- (제외) 철도 차량 제조업자에 대한 출연·용자·보조(70442), 소음 방지 벽 또는 소음 저감 표면들을 이용한 철로 구간의 재포장을 포함한 울타리와 기타 소음 방지 시설물의 건설(70530)

○ 70454 항공 운송(CS)

- 항공 운송 체계 및 시설물(공항, 활주로, 터미널, 격납고, 항법 보조 및 장비, 관제 시설 등)의 운영, 사용, 건설, 유지보수에 관한 활동 및 서비스의 관리
- 항공 운송 이용자의 감독 및 규제(항공기, 조종사, 승무원, 지상 요원의 등록, 면허, 감독, 승객 안전 규제, 항공 사고 조사 등), 항공 운송 체계 운영의 감독 및 규제(노선 배정, 화물 요금, 승객 요금과 영업 회수와 수준의 승인 등), 항공 운송 시설물 건설, 관리의 감독 및 규제
- 비사업체형 공공 항공 서비스와 시설물의 건설 또는 운영
- 항공 운송 체계 운영과 항공 운송 시설물 건설에 대한 일반정보, 기술문서, 통계의 생산 및 보급
- 항공 운송 체계와 시설물의 운영, 건설, 관리,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용자·보조
- 무선 및 위성 항법 보조, 긴급 구조 활동, 정기 및 비정기 화물 및 승객 서비스, 개인 비행기의 운항 규제 및 통제

(제외) 항공기 제조업자에 대한 출연·용자·보조(70442)

○ 70455 수송관 및 기타 운송(CS)

- 수송관 및 기타 운송 체계(케이블 철도, 케이블카, 리프트 등)의 운영, 사용, 건설, 관리에 관한 활동 및 서비스의 관리
- 수송관 및 기타 운송 체계 이용자의 감독 및 규제(장비, 운전자 숙련도, 훈련에 대한 등록, 면허, 감독, 안전기준 등), 수송관 및 기타 운송 체계 운영의 감독 및 규제(사업허가, 요금 설정, 영업 횟수와 수준 등) 또는 수송관 및 기타 운송체계 건설, 관리의 감독 및 규제
- 비사업체형 수송관 및 기타 운송 체계의 건설 또는 운영
- 수송관 및 기타 운송 체계의 운영, 건설에 대한 일반정보, 기술문서, 통계의 생산 및 보급
- 수송관 및 기타 운송 체계의 운영, 건설, 관리,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용자·보조

□ 7046 통신

○ 70460 통신(CS)

- 통신 체계(우편, 전화, 전신, 무선 및 위성 통신 시스템)의 건설, 확장, 개선, 운영, 유지에 관한 활동과 서비스의 관리
- 통신 체계 운영에 관한 규제(사업 허가, 주파수 할당, 영업 시장들의 규격 및 부과되는 요금 등)
- 통신 관련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일반정보, 기술문서, 통계의 생산 및 보급
- 통신 체계의 건설, 운영, 관리,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용자·보조

(제외) 수상 수송(70452) 및 항공 수송(70454)의 전파 및 위성항법보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체계(70830)

□ 7047 기타 산업

○ 70471 유통, 보관, 창고업(CS)

- 유통, 보관, 창고 산업 관련 활동과 서비스의 관리
- 도매 및 소매 거래의 감독 및 규제(면허, 판매 관행, 가계 소비를 위한 포장 식품과 기타 재화의 상표 부착, 저울 등 무게 측정 기구의 검사 등), 보관 및 창고 산업의 감독 및 규제(정부 보세 창고의 면허 및 통제 포함)
- 관련된 재화의 유형 또는 대상 소비자와 상관없는 소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를 통해 운영되는 가격 통제 및 배급 제도의 관리, 일반 대중에 대한 식품 및 기타 보조금의 관리 및 제공
- 재화의 가격과 가용성 및 유통, 보관, 창고 산업의 기타 측면에 대한 정보의 생산과 업계 및 대중에 정보 보급, 유통·보관·창고 산업에 대한 통계의 작성 및 공표
- 유통, 저장, 창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용자·보조
(제외) 생산자에게 적용되는 가격 및 기타 통제의 관리(기능별 분류),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식품 및 기타 보조금(710)

○ 70472 호텔 및 식당(CS)

- 호텔 및 식당의 건설, 확장, 개선, 운영, 관리에 관한 활동과 서비스의 관리
- 호텔 및 식당 운영에 대한 감독 및 규제(가격, 청결도, 판매 관행을 통제하는 규제, 호텔 및 식당 면허 등).
- 호텔 및 식당 활동과 서비스에 관한 일반정보, 기술문서, 통계의 생산 및 보급
- 호텔 및 식당의 건설, 운영, 관리,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용자·보조

○ 70473 관광(CS)

- 관광 활동과 서비스의 관리, 관광 산업의 증진 및 발전, 운송·호텔·식당업 및 관광업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기타 산업들과의 연계
- 국내 및 해외 관광 사무소의 운영 등, 홍보물 등의 생산 및 보급을 포함한 광고 캠페인의 편성
- 관광 산업에 대한 통계의 작성 및 공표

○ 70474 다목적 개발 사업(CS)

- : 통상 전력, 홍수 통제, 관개, 선박 운항, 휴양을 위한 다목적 통합 시설물들로 구성
- 다목적 사업의 건설, 확장, 개선, 운영, 관리에 관한 활동과 서비스의 관리
- 다목적 개발 사업의 활동과 서비스에 관한 일반정보, 기술문서, 통계의 생산 및 보급
- 다목적 개발 사업의 건설, 운영, 유지,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용자·보조

(제외) 하나의 주요 기능과 다른 부차적 기능을 가진 사업(주요 기능별 분류)

□ 7048 경제 R&D

○ 70481 일반 경제, 상업, 노동 R&D(CS)

- 일반 경제, 상업, 노동과 관련된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에 종사하는 정부기관의 관리 및 운영
- 연구기관, 대학 등이 수행하는 일반적인 경제, 상업, 노동과 관련된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지원을 위한 출연·용자·보조

(제외) 기초연구(70140)

○ 70482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 R&D(CS)

- 농업, 임업, 어업, 수렵과 관련된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에 종사하는 정부기관의 관리 및 운영

- 연구기관, 대학 같은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농업, 임업, 어업, 수렵과 관련된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지원을 위한 출연·용자·보조
(제외) 기초연구(70140)

○ 70483 연료 및 에너지 R&D(CS)

- 연료 및 에너지와 관련된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에 종사하는 정부기관의 관리 및 운영
- 연구기관, 대학 같은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연료 및 에너지에 관련된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지원을 위한 출연·용자·보조
(제외) 기초연구(70140)

○ 70484 광업, 제조, 건설 R&D(CS)

- 광업, 제조, 건설과 관련된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에 종사하는 정부기관의 관리 및 운영
- 연구기관, 대학 같은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광업, 제조, 건설에 관련된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지원을 위한 출연·용자·보조
(제외) 기초연구(70140)

○ 70485 운송 R&D(CS)

- 운송에 관련된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에 종사하는 정부기관의 관리 및 운영
- 연구기관, 대학 같은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운송에 관련된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을 지원을 위한 출연·용자·보조
(제외) 기초연구(70140)

○ 70486 통신 R&D(CS)

- 통신에 관련된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에 종사하는 정부기관의 관리 및 운영

- 연구기관, 대학 등이 수행하는 통신 관련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지원을 위한 출연·용자·보조
- (제외) 기초연구(70140)

○ 70487 기타 산업 R&D(CS)

- 기타 부문과 관련된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에 종사하는 정부기관의 관리 및 운영
- 연구기관, 대학 같은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기타 부문과 관련된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지원을 위한 출연·용자·보조
- 유통·저장·창고업, 호텔 및 음식점, 관광 및 다목적 개발 사업
- (제외) 기초연구(70140)

□ 7049 기타 미분류 경제

○ 70490 기타 미분류 경제(CS)

- (7041), (7042), (7043), (7044), (7045), (7046), (7047), (7048)로 지정될 수 없는 일반적 및 부문별 경제와 관련된 관리, 운영, 지원 활동

705 환경보호

: 환경보호 분류는 EU 통계청(Eurostat)의 유럽 환경정보 수집체계(SERIEE)에 제시된 환경보호 활동 분류(CEPA)에 기초함

□ 7051 폐기물 관리

- : 폐기물의 수거, 처리, 처분 포함
- : 폐기물 수거에는 도로·광장·길·시장·공공 정원·공원 등의 청소, 분리수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폐기물 수거 및 처리장소나 배출장소로의 수송 포함
- : 폐기물 처리는 중화, 유해요소 제거, 수송 안전성 제고, 회수 및 저장 가능성 확보, 부피 축소 등의 목적을 위한 폐기물의 물리, 화학, 생물

적 속성 또는 구성물을 변화시키는 모든 방법과 절차를 포함. 폐기물 처분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폐기물을 매립, 포장, 지하 폐기, 해양 투기, 또는 기타 적절한 처분방법에 의해 최종 처분하는 것을 포함

○ 70510 폐기물 관리(CS)

- 폐기물 수거, 처리, 처분 체계의 관리, 감독, 조사, 운영, 지원
- 이러한 체계의 운영, 건설, 유지, 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용자·보조
- 핵폐기물의 수거, 처리, 처분

□ 7052 폐수 관리

- : 하수체계 운영 및 폐수 처리를 포함
- : 하수체계 운영에는 폐수(빗물, 국내 및 기타 사용 가능한 폐수)를 발생장소에서 하수처리 공장이나 폐수가 표면수로 배출되는 장소로 흘러보내기 위한 수거장치, 하수관, 도랑, 펌프의 관리와 건설 포함
- : 폐수처리는 폐수를 환경 기준 또는 기타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만드는 기계적, 생물학적, 또는 침단 변환 과정 포함

○ 70520 폐수 관리(CS)

- 하수 체계와 폐수 처리의 관리, 감독, 조사, 운영, 지원
- 이러한 체계의 운영, 건설, 유지, 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용자·보조

□ 7053 공해 방지

- : 대기 및 기후 보호, 토양 및 지하수 보호, 소음 및 진동 축소, 방사능 방지와 관련된 활동을 포함
- : 이러한 활동에는 공해 측정 시설과 측정소(기상관측소 제외)의 건설·운영·유지, 소음 방지 벽과 소음감소 표면 재료를 이용한 도시

고속도로와 철로 일부 구간의 재포장을 포함한 울타리 및 기타 소음 방지 시설물의 건설, 수질 오염 정화 조치, 공기의 질을 악화시키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방출을 통제 및 방지하기 위한 조치, 오염토양의 정화와 공해물질 저장을 위한 시설의 건설·유지·운영, 오염물질의 수송 등 포함

○ 70530 공해 방지(CS)

- 공해 방지 및 통제와 관련된 활동의 관리, 감독, 조사, 운영, 지원
- 공해 방지 및 통제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용자·보조

□ 7054 생물(중) 다양성 및 경관 보호

: 동·식물종 보호(멸종된 종의 재생 및 멸종 위기 종의 번식 포함), 동·식물 서식처 보호(자연공원 및 보호구역 관리 포함), 미학적 가치가 있는 경관 보호(미학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손상된 경관 재생 및 폐광과 채석장 복원 포함) 등과 관련된 활동 포함

○ 70540 생물종 다양성 및 경관 보호(CS)

- 생물종 다양성 및 경관 보호 관련 활동의 관리, 감독, 조사, 운영, 지원
- 생물종 다양성 및 경관 보호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용자·보조

□ 7055 환경보호 R&D

○ 70550 환경보호 R&D(CS)

- 환경보호와 관련된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에 종사하는 정부기관의 관리 및 운영
- 연구기관, 대학 등이 수행하는 환경보호 관련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 지원을 위한 출연·용자·보조

(제외) 기초연구(70140)

□ 7056 기타 미분류 환경보호

○ 70560 기타 미분류 환경보호(CS)

- 환경보호 홍보를 위한 전반적인 정책·계획·예산의 수립·집행·조정·점검 같은 활동의 행정·관리·규제·감독·운영·지원, 환경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안과 기준의 수립 및 집행, 환경보호에 관한 일반정보·기술문서·통계 등의 생산 및 보급
- (7051), (7052), (7053), (7054), (7055)로 지정될 수 없는 환경보호 활동과 서비스

706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 7061 주거 개발

○ 70610 주거 개발(CS)

- 주거개발 활동, 당국의 후원 여부와 관계없는 주거 개발의 홍보·점검·평가 등 활동, 주거 기준의 개발 및 규제
- 주거제공 관련 빈민가 정리, 주택 건설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 일반 대중 또는 특정 요구를 가진 주민을 위한 주택의 건설·구입·리모델링
- 주거개발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일반정보, 기술문서, 통계의 생산 및 보급
- 주택물량의 확대, 개선,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출연·융자·보조(제외) 건설기준의 개발 및 규제(70443), 가구 주거비용 지원(현금 및 현물 급여)(71060)

□ 7062 지역사회 개발

○ 70620 지역사회 개발(CS)

- 지역사회 개발 활동과 서비스의 관리, 토지 이용 제한법 및 토지 사용과 건물 규정의 관리
- 신축 및 재개발 공동시설의 계획, 지역사회의 주거, 산업, 공익사업,

보건, 교육, 문화, 휴양 등과 같은 시설의 개량 및 개발 계획, 계획된 개발의 재원 조달을 위한 제도 준비

- 지역사회 개발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일반정보, 기술문서, 통계의 생산 및 보급

(제외) 주거용 및 산업용 건물·도로·공익사업·문화시설 등(기능에 따른 분류)의 실제 건설 같은 계획의 실행, 농지개혁 및 토지정착(70421), 건설 기준(70443) 및 주거기준(70610) 관리

□ 7063 수도 공급

○ 70630 수도 공급(CS)

- 수도 공급 활동의 관리, 미래 수요의 평가 및 이러한 평가에 기초한 가용성 판단, 수질 순도, 가격, 수량 통제를 포함한 수도 공급의 모든 측면에 대한 감독 및 규제
- 비사업체형 수도 공급 체계의 건설 또는 운영
- 수도 공급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일반정보, 기술문서, 통계의 생산 및 보급
- 수도 공급 체계의 운영, 건설, 유지, 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융자·보조

(제외) 관개 시스템(70421), 다목적 사업(70474), 폐수의 수집 및 처리(70520)

□ 7064 가로등

○ 70640 가로등(CS)

- 가로등 관련 활동의 관리, 가로등 기준의 개발 및 규제
- 가로등의 설치, 운영, 유지, 개선

(제외) 고속도로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가로등 관련 활동과 서비스(70451)

- 7065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R&D
 - 70650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R&D(CS)
 -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관련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에 종사하는 정부 기관의 관리 및 운영
 - 연구기관, 대학 등이 수행한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관련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지원을 위한 출연·용자·보조
- (제외) 기초연구(70140), 건설공법 또는 자재에 대한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70484)

- 7066 기타 미분류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 70660 기타 미분류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CS)
 -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계획·사업·예산의 수립·집행·조정·점검 같은 활동의 관리·운영·지원,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과 관련된 법률 및 기준의 제정 및 실행,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과 관련된 일반정보, 기술문서, 통계의 생산 및 보급
 - (7061), (7062), (7063), (7064), (7065)로 지정될 수 없는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과 관련된 관리, 운영, 지원 활동

707 보건

- : 개인적 서비스 (7071)에서 (7074)까지이며, 집단서비스 지출은 (7075)에서 (7076)까지임
- : 집단적 보건서비스는 정부 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 연관(의료·준의료 인력 및 종합병원·진료소·의원 등에 대한 기준 설정 및 이행, 보건 서비스 제공자의 규제 및 면허 발급, 의료 및 보건 관련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
- : 개인적 서비스는 일부 종합병원·진료소·의원 등의 관리나 운영과 관련된 간접비 지출

□ 7071 의료 제품, 기기, 장비

- : 약제사, 약사, 의료장비 판매자로부터 획득하는 약제, 보철, 의료용구 및 장비, 기타 의료용품(의료시설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기도 함)
- : 의사, 치과 의사, 준 의료 인력이 외래환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병원 등에서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물품은 외래환자서비스(7072) 또는 병원서비스(7073)에 포함된다.

○ 70711 의약품(IS)

- 조제, 약품, 특허약품, 혈청과 백신, 비타민과 미네랄, 대구와 넘치의 간유, 경구용 피임제 같은 의약품의 제공
- 의약품 제공에 대한 관리, 운영, 지원

○ 70712 기타 의료 제품(IS)

- 의료용 체온계, 반창고 및 붕대, 피하 주사기, 응급용품, 보온병 및 얼음주머니, 신축성 스타킹과 무릎 보호대 같은 의료용 양말, 임신 진단시약, 콘돔 및 기타 물리적 피임기구 등 의료품 제공
- 처방된 기타 의료 제품 제공에 대한 관리, 운영, 지원

○ 70713 치료 기기와 장비(IS)

-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보청기, 유리안구, 의수족과 기타 보철장치, 정형외과용 부목 및 보조물, 정형외과용 구두, 외과용 벨트, 탈장대 및 보조물, 목 지지대, 의료용 마사지 장치 및 의료용 램프, 동력 및 비동력 휠체어와 환자용 운반구, 특수침대, 목발, 혈압 측정용 전자 및 기타 장비 등과 같은 치료 기기 및 장비의 제공
- 처방된 치료 기기 및 장비의 제공에 대한 관리, 운영, 지원
- 장착 비용을 제외한 의치, 치료 기기 및 장비의 수리

(제외) 치료 장비 임대(70724)

□ 7072 외래 환자서비스

- : 의사, 치과 의사, 준 의료 인력, 보조 인력이 외래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 치과 진료, 준 의료서비스를 대상으로 함
- : 가정·개인적 또는 집단적인 상담시설·병원 등의 약제소나 외래진료소에서 제공될 수 있음
- : 의사, 치과 의사, 준 의료 인력, 보조 인력이 외래환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약제, 보철, 의료기구 및 장비, 기타 의료용품
- : 병원 등이 입원환자에 제공하는 의료, 치과 진료, 준 의료서비스는 병원서비스(7073)에 포함

○ 70721 일반 의료서비스(IS)

- : 종합병원과 일반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종합병원은 외래환자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그 서비스가 특정 전문분야에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자격을 갖춘 의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 일반 개업의는 특정 의료 과목에 전문화되어 있지 않음
- 일반 의료서비스의 제공
- 종합병원과 일반 개업의가 제공하는 일반 의료서비스의 관리, 감독, 운영, 지원

(제외) 의료 분석 실험실 및 X-ray 센터의 서비스(70724)

○ 70722 전문 의료서비스(IS)

- : 전문병원과 전문 개업의의 서비스로 특정 조건, 질병, 시술, 환자의 진료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종합병원 및 일반의와 다름
- 전문 의료서비스의 제공
- 전문병원과 전문의가 제공하는 전문 의료서비스의 관리, 감독, 운영, 지원
- 치과 교정 전문의의 서비스

(제외) 치과 진료소 및 치과 의사(70723), 의료 분석 실험실 및 X-ray 센터의 서비스(70724)

○ 70723 치과서비스(IS)

: 일반 또는 전문 치과 진료소 및 치과 의사, 치 위생사, 기타 치과 보조원의 서비스 포함

: 치과 진료소는 외래 환자서비스를 제공, 치과 의사 없이 치위생사 또는 치과보조원만으로 구성되고, 이들의 감독하에 운영되는 진료소도 치과 진료소로 분류됨

- 외래 환자에 대한 치과서비스의 제공
- 일반 또는 전문 치과 진료소, 치과 의사, 치 위생사, 기타 치과 보조원이 제공하는 치과서비스의 관리, 감독, 운영, 지원
- 의치 장착 비용

(제외) 의치(70713), 치과 교정 전문의 서비스(70722), 의료 분석 실험실 및 X-ray 센터의 서비스(70724)

○ 70724 준 의료서비스(IS)

- 외래환자에 대한 준 의료서비스의 제공
- 간호사, 조산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기타 준 의료 인력이 감독하는 진료소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그리고 간호사, 조산원, 준 의료 인력이 상담실 밖이나 환자의 집 또는 기타 비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관리, 감독, 운영, 지원
- 침구사·발 치료 전문의·척추 지압요법사·점안사·민간요법사 등, 의료 분석 실험실 및 X-ray 센터, 치료장비 임대, 의학적으로 처방된 체육교정치료, 외래환자 온천욕 또는 해수요법, 병원 이외에서 운영하는 환자 운송서비스

(제외) 공공보건 서비스 실험실(70740), 질병 원인 분석 실험실(70750)

□ 7073 병원서비스

: 병원서비스는 환자가 치료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되어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병원의 입원 진료, 통원 치료, 호스피스(hospice)도 포함)

- : 종합 및 전문 병원의 서비스, 주로 입원 환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료소, 조산소, 간병소, 요양소의 서비스, 군 병원의 서비스, 의료검진을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노인 전용기관의 서비스, 주 목적이 장기 요양이 아닌 환자 치료인 경우 입원진료 및 갱생치료를 제공하는 재활원의 서비스 포함
- : 병원은 자격증 있는 의사의 직접 감독하에 입원환자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정의
- : 진료소, 조산소, 간병소, 요양소 역시 입원환자를 관리하지만 이들의 서비스는 대개 의사보다 전문성이 낮은 인력에 의해 감독 제공
 - 병원환자에게 제공되는 약제, 보철, 의료용구 및 장비, 기타 보건관련 물품
 - 행정, 비 의료 요원, 음식물, 숙박시설(직원용 포함) 등에 대한 비 의료용 병원지출
- (제외) 야전병원(7021), 외래환자만을 돌보는 의원, 진료소, 약제소(7072), 장애인 전용기관과 주로 장기보호를 제공하는 재활원(71012), 노인을 위한 양로원(71020) 등 시설물 병원입원에 따른 환자의 소득 손실분에 대한 보상금

○ 70731 종합병원서비스(IS)

- 종합병원서비스의 제공
- 서비스가 특정한 전문 분야로 제한되지 않은 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 운영, 지원
- (제외) 자격증 있는 의사의 직접 감독하에 있지 않은 진료소(70733)

○ 70732 전문병원서비스(IS)

- : 전문병원은 흉부질환 및 결핵, 나병, 암, 이비인후과, 정신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과 같이 서비스가 특정 조건, 질병, 환자의 치료에 제한된다는 점에서 종합병원과 다름

- 전문병원서비스의 제공
- 서비스가 특정한 전문 분야로 제한된 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 운영, 지원

(제외) 자격증 있는 의사의 직접 감독하에 있지 않은 조산소(70733)

○ 70733 진료소 및 조산소 서비스(IS)

- 진료소 및 조산소 서비스의 제공
- 진료소 및 조산소 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 운영, 지원

○ 70734 간병소 및 요양소 서비스(IS)

- : 간병소 및 요양소는 수술이나 쇠약 질환으로 인한 상시 검진과 조제 처방이 필요한 환자, 기능 상실을 보완하기 위한 물리 치료와 훈련이 필요한 환자, 또는 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입원서비스를 제공
- 간병소 및 요양소 서비스의 제공
- 간병소 및 요양소 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 운영, 지원
- 의료 검진을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노인 전용기관, 그 목적이 장기간 지원 제공보다 환자 치료인 입원 진료 및 갱생 치료를 제공하는 재활원

□ 7074 공공 보건서비스

○ 70740 공공 보건서비스(IS)

- 공공 보건서비스의 제공
- 혈액은행 운영(수집, 가공, 저장, 수송), 질병 감지(암, 결핵, 성병), 예방(면역·접종), 건강 검진(유아 영양, 어린이 건강), 역학 자료 수집, 가족계획 등 공공 보건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 운영, 지원
- 공공 보건 사항에 대한 정보의 작성 및 보급
- 작업장·학교 등 비 의료 장소에서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로 구성된 고객집단을 대상으로 특별 팀이 제공하는 공공 보건서비스, 병원·

진료소·의료 인력 등과 연관되지 않은 공공 보건서비스, 자격증이 있는 의사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 공공 보건서비스, 공공 보건서비스 실험실

(제외) 의료분석 실험실(70724), 질병 원인 분석 실험실(70750)

□ 7075 보건 R&D

○ 70750 보건 R&D(CS)

- 보건 관련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에 종사하는 정부기관의 관리 및 운영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정부기관이 수행한 보건관련 응용연구 및 실험 개발지원 출연·용자·보조
- 질병 원인 분석 실험실

(제외) 기초연구(70140)

□ 7076 기타 미분류 보건

○ 70760 기타 미분류 보건(CS)

- 보건 정책·계획·프로그램·예산 전반의 기획·이행·조정·점검 같은 활동의 관리·운영·지원, 의료시설·의료인력·준의료인력에 대한 면허발급을 포함한 보건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법률 및 기준의 수립 및 집행, 보건에 관한 일반정보, 기술문서, 통계의 생산 및 보급
- (7071), (7072), (7073), (7074), (7075)로 지정될 수 없는 보건 활동 및 서비스

708 휴양, 문화, 종교

- : 휴양·문화·종교에 대한 정부지출에는 개인 및 가계에 제공되는 개인적 서비스와 집단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구성됨
- : 개인적 지출은 (7081)에서 (7082)까지이고, 집단적 지출은 (7083)에서 (7086)까지임
- : 정부 정책의 수립 및 집행, 휴양·문화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률 및

기준의 수립 및 집행, 휴양·문화·종교 활동 및 서비스에 대한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

□ 7081 휴양 및 스포츠서비스

○ 70810 휴양 및 스포츠서비스(IS)

- 스포츠 및 휴양서비스의 제공, 스포츠 및 휴양 활동의 관리, 스포츠 시설물의 감독 및 규제
- 능동적(active) 스포츠 활동이나 행사를 위한 시설물(운동장·테니스장·스쿼시 코트·육상 트랙·골프 코스·복싱 링·스케이트 링크·체육관 등)의 운영 또는 지원,
- 수동적(passive) 스포츠 활동이나 행사를 위한 시설물(주로 카드·보드게임 등의 장비가 설치된 장소)의 운영 또는 지원
- 휴양 목적의 시설물(공원, 해변, 캠핑장, 비 상업적 숙박업소, 수영장, 공공 세면장 등) 운영·지원
- 선수단 또는 개인 선수를 지원하기 위한 출연·용자·보조
- 관람 시설, 국가·지역·지방 대표 선수단의 스포츠 대회 참여 (제외) 동물원·식물원·수족관·수목원·기타 유사 기관(70820), 교육기관과 연계된 스포츠 및 휴양 시설물(709)

□ 7082 문화서비스

○ 70820 문화서비스(IS)

- 문화서비스의 제공, 문화 활동의 관리, 문화시설의 감독 및 규제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극장, 전시관, 기념관, 유적관 및 유적지, 동물원과 식물원, 수족관, 수목원 등)의 운영 또는 지원, 문화행사(음악회, 연극 및 영화, 예술 공연 등)의 개최·운영·지원
- 미술가, 작가, 디자이너, 작곡가, 기타 예술가 지원을 위한 출연·용자·보조 또는 문화 활동 장려 기관에 대한 출연·용자·보조
- 주로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국가, 지역, 지방의 축제

(제외) 외국대표도 참여하는 문화행사(70113), 관광객 유치가 주요 목적
인 국가·지역·지방의 축제(70473), 방송용 문화상품 생산(70830)

□ 7083 방송 및 출판서비스

○ 70830 방송 및 출판서비스(CS)

- 방송 및 출판 활동의 관리, 방송 및 출판서비스의 감독 및 규제
- 방송 및 출판서비스의 운영 또는 지원
-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용 시설의 건설이나 취득, 신문·잡지·서적 출판용 공장·장비·설비의 건설이나 취득,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 뉴스 및 기타 정보의 수집, 출판물의 유통 등 지원을 위한 출연·용자·보조

(제외) 정부 인쇄소 및 공장(70133),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을 통한 교육 제공(709)

□ 7084 종교 및 기타 공동체 서비스

○ 70840 종교 및 기타 공동체 서비스(CS)

- 종교 및 기타 공동체 관련 활동의 관리
- 시설물의 운영, 유지, 보수를 위한 지원을 포함한 종교 및 기타 공동체 서비스 시설물의 제공
- 종교기관의 성직자 또는 기타 인원에 대한 지급금, 종교 집회의 개최 지원, 친목단체·시민·청소년 및 사회단체·노동조합 및 정당 등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용자·보조

□ 7085 휴양, 문화, 종교 R&D

○ 70850 휴양, 문화, 종교 R&D(CS)

- 휴양, 문화, 종교 관련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에 종사하는 정부기관의 관리 및 운영
- 연구기관, 대학 같은 비정부기관이 수행하는 휴양, 문화, 종교와 관

련된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지원을 위한 출연·용자·보조
(제외) 기초연구(70140)

□ 7086 기타 미분류 휴양, 문화, 종교

○ 70860 기타 미분류 휴양, 문화, 종교(CS)

- 스포츠·휴양·문화·종교에 대한 정책·계획·프로그램·예산의 수립·집행·조정·점검의 전반적인 활동의 관리·운영·지원, 휴양 및 문화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 및 기준의 수립과 집행, 휴양·문화·종교에 관한 일반정보, 기술문서, 통계의 생산 및 보급
- (7081), (7082), (7083), (7084), (7085)로 지정될 수 없는 휴양, 문화, 종교 관련 활동 및 서비스

709 교육

- : 학생에게 제공되는 개인적 서비스 지출과 집단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지출로 구성됨
- : 개인적 서비스는 (7091)부터 (7096)까지이며, 집단적 서비스는 (7097)부터 (7098)까지이다.
- : 집단적 교육 서비스는 정부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기준의 설정 및 이행, 교육 시설의 규제·허가·감독, 교육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 등과 같은 사항과 연관됨
- : 개인적 서비스 지출은 일부 학교나 대학 등의 관리 또는 기능수행과 관련된 간접비는 간주되며, (7091)부터 (7096)로 분류됨
- : 교육에 대한 세분화는 UNESCO '1997 교육의 국제적 분류 기준 (ISCED-97)'의 분류에 기초함
- : 교과 과정이 민간 기관과 유사한 군사 학교 및 대학, 경찰 훈련뿐 아니라 일반 교육도 제공하는 경찰대학, 라디오나 텔레비전 교육방송으로 제공되는 것 등으로 (7091)부터 (7095)로 분류함.

□ 7091 유아 및 초등 교육

○ 70911 유아교육(IS)

- ISCED-97의 0등급에 해당하는 유아교육의 제공
- ISCED-97의 0등급에 해당하는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및 기타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운영, 지원
(제외) 교육에 대한 보조서비스(70960).

○ 70912 초등교육(IS)

- ISCED-97의 1등급에 해당하는 초등교육의 제공
- ISCED-97의 1등급에 해당하는 초등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및 기타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운영, 지원
- 초등학교 연령을 초과하는 학생들에 대한 문자 교육
(제외) 교육에 대한 보조 서비스(70960)

□ 7092 중등교육

○ 70921 하위 중등교육(IS)

- ISCED-97의 2등급에 해당하는 하위 중등교육의 제공
- ISCED-97의 2등급에 해당하는 하위 중등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및 기타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운영, 지원
- ISCED-97의 2등급에 해당하는 하위 중등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지원금, 용자금, 수당
- 하위 중등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어린 및 청소년을 위한 하위 중등교육
(제외) 교육에 대한 보조 서비스(70960)

○ 70922 상위 중등교육(IS)

- SCED-97의 3등급에 해당하는 상위 중등교육의 제공
- ISCED-97의 3등급에 해당하는 상위 중등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및 기타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운영, 지원

- ISCED-97의 3등급에 해당하는 상위 중등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지원금, 융자금, 수당
- 상위 중등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어른 및 청소년을 위한 상위 중등교육(제외) 교육에 대한 보조 서비스(70960)

□ 7093 2차 중등교육

○ 70930 2차 중등교육(IS)

- ISCED-97의 4등급에 해당하는 2차 중등교육의 제공
- ISCED-97의 4등급에 해당하는 2차 중등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운영, 지원
- ISCED-97의 4등급에 해당하는 2차 중등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지원금, 융자금, 수당
- 2차 중등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어른 및 청소년을 위한 2차 중등교육(제외) 교육에 대한 보조 서비스(70960)

□ 7094 고등교육

○ 70941 고등교육의 첫 번째 단계(IS)

- ISCED-97의 5등급에 해당하는 고등교육의 제공
- ISCED-97의 5등급에 해당하는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운영, 지원
- ISCED-97의 5등급에 해당하는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지원금, 융자금, 수당
- (제외) 교육에 대한 보조 서비스(70960)

○ 70942 고등교육의 두 번째 단계(IS)

- ISCED-97의 6등급에 해당하는 고등교육의 제공
- ISCED-97의 6등급에 해당하는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운영, 지원

- ISCED-97의 6등급에 해당하는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지원금, 용자금, 수당
(제외) 교육에 대한 보조 서비스(70960)

□ 7095 등급 외 교육

○ 70950 등급 외 교육(IS)

- 등급 외 교육(즉, 직업훈련 및 문화개발 같은 어떠한 사전 학습 요건도 요구하지 않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 등급 외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운영, 지원
- 등급 외 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지원금, 용자금, 수당

□ 7096 교육 보조 서비스

○ 70960 교육 보조 서비스(IS)

- 교육 보조 서비스의 제공
- 등급과 관계없이 주로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통, 음식, 기숙, 의료, 치료 진료, 기타 보조 서비스의 관리, 감독, 운영, 지원
(제외) 학교 건강검진 및 예방서비스(70740), 각 보조서비스(7091, 7092, 7093, 7094, 7095) 비용 지불을 위해 현금의 장학금·지원금·용자금·수당

□ 7097 교육 R&D

○ 70970 교육 R&D(CS)

- 교육 관련 응용연구 및 실험 개발에 종사하는 정부기관의 관리 및 운영
- 연구기관, 대학 같은 비정부기관이 수행하는 교육 관련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지원을 위한 출연·용자·보조
(제외) 기초연구(70140)

□ 7098 기타 미분류 교육

○ 70980 기타 미분류 교육(CS)

- 전반적인 교육 정책 · 계획 · 프로그램 · 예산의 수립 · 집행 · 조정 · 점검 같은 활동의 관리 · 운영 · 지원, 교육기관의 허가를 포함한 교육 제공에 대한 법률 및 기준의 수립과 집행, 교육에 관한 일반정보 · 기술문서 · 통계의 생산 및 보급
- (7091), (7092), (7093), (7094), (7095), (7096), (7097)로 지정될 수 없는 교육 활동 및 서비스

710 사회보호

- : 개인과 가계에 제공되는 개인적 서비스 및 이전지출과 집단에 제공되는 서비스 지출로 구분
- : 개인적 서비스 및 이전지출은 (7101)부터 (7107)이며, 집단적 서비스 지출은 (7108)부터 (7109)이다.
- : 집단적 사회보호 서비스는 정부정책 수립 및 집행, 사회보호 제공 관련 법률 및 기준의 수립 및 집행, 사회보호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 등이 포함
- : 사회보호 기능과 정의는 EU 통계청(Eurostat)의 '1996 유럽 사회보호 통합통계체계(ESSPROS)'에 기초
- : ESSPROS에서는 사회보호가 보건 관리를 포함하지만, 이 분야에서는 보건 관리를 포함하지 않음
- : 보건 관리는 707 분야에 포함되기 때문에 (7101)에서 (7107)까지 명시된 현금 및 현물 급여를 수령하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의료 재화와 서비스는 (7071), (7072), (7073)으로 분류됨

□ 7101 질병 및 장애

○ 71011 질병(IS)

- 질병 또는 상해로 근로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기간 동안 수입 손

실분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현금 또는 현물 사회보호 급여

- 사회보호 제도의 관리, 운영, 지원
- 질병 또는 상해로 근로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정액형 또는 소득비례형 병가 지급금(sick-leave payments) 및 기타 지급금 등 현금 급여
- 질병 또는 상해로 근로 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부조 등 현물 급여(가사 지원, 교통 시설 등)

○ 71012 장애(IS)

- 영구적 또는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육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경제 활동 또는 정상적 생활을 전혀 또는 일부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현금 또는 현물 사회보호 급여
- 사회보호 제도의 관리, 운영, 지원
- 장애로 인해 작업 능력이 손상된 정년퇴직 연령 미만의 사람에게 제공되는 장애 연금, 작업 능력의 손상으로 정년퇴직 연령 이전에 퇴직한 노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조기 퇴직 급여, 간호 수당, 장애인용 작업장에서 근로하고 있거나 직업 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 기타 사회보호 측면에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정기 또는 일시 지급금 등 현금 급여
- 취업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숙박 및 하숙,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지원(가사 지원, 교통시설 등),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들에 지급되는 수당, 장애인의 근로 재활과 사회 재활을 증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직업 훈련 및 기타 훈련, 장애인의 휴양 및 문화 활동이나 여행 또는 지역 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와 재화 등 현물 급여

(제외)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현금 및 현물급여
(71020)

□ 7102 노령

○ 71020 노령(IS)

- 노령에 따른 위험(소득 상실, 불충분한 소득,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자립성 결여, 사회생활 및 지역생활 참여 저하 등)에 대비하기 위한 현금 및 현물 사회보호 급여
- 사회보호 제도의 관리, 운영, 지원
-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노령 연금, 정년퇴직 연령 이전에 퇴직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조기 노령 연금, 정년퇴직 연령 이전 또는 이후에 근로시간이 줄어들긴 하였으나 여전히 근로 활동을 하는 노령 근로자에 지급되는 부분 노령 연금, 간호 수당, 퇴직 또는 노령 때문에 지급되는 기타 정기 또는 일시 지급금 등과 같은 현금 급여
- 전문 시설에 거주하거나 적정 시설물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숙박 및 하숙, 노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지원(가사 지원, 교통시설 등), 노인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노인의 휴양 및 문화 활동이나 여행 또는 지역 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와 재화 등과 같은 현물 급여
- 군인 및 정부 피용자에 대한 연금제도
- 장애(71012) 또는 실업(71050)으로 정년퇴직 연령 이전에 퇴직한 노령 근로자의 조기 퇴직급여

□ 7103 유족

○ 71030 유족(IS)

- 고인의 유족(고인의 배우자, 전 배우자, 자녀, 손자, 부모, 기타 친척 등)에 대한 현금 및 현물 사회보호 급여
- 사회보호 제도의 관리, 운영, 지원
- 유족 연금, 사망 위로금, 기타 유가족에 대한 정기 또는 일시 지급금

등 현금 급여

- 장례비 및 유족들의 지역생활 참여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와 재화 등 현물 급여

□ 7104 가족 및 자녀

○ 71040 가족 및 자녀(IS)

- 피부양 자녀가 있는 가계에 대한 현금 및 현물 사회보호 급여의 제공
- 사회보호 제도의 관리, 운영, 지원
- 산모 수당, 출산 지원금, 육아 휴직 급여, 가족 또는 자녀 수당, 기타 가정 지원 및 특정 비용 충당을 위한 정기 및 일시 지급금(결혼 부모 가정 또는 장애 자녀 가정에 대한 급여 등) 등 현금급여
- 취학 전 자녀에게 제공되는 주간 보호 및 하숙시설, 주간 보모 비용 충당을 위한 재정지원, 영구적으로 어린이와 가족에게 제공되는 보호 및 하숙시설(고아원, 입양가족 등), 자녀나 보호자 가정에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 가족·청소년·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여러 서비스와 재화(휴가 및 여가센터 등) 등 현물 급여

(제외) 가족계획 서비스(70740)

□ 7105 실업

○ 71050 실업(IS)

- 근로능력과 근로의사가 있지만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한 현금 및 현물 사회보호 급여의 제공
- 사회보호 제도의 관리, 운영, 지원.
- 전액 및 부분 실업급여, 실업으로 인해 또는 경제적 이유에 따른 감원조치로 인해 정년퇴직 연령 이전에 퇴직한 노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조기 퇴직급여, 특정 집단 근로자들의 고용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직업훈련 참가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수당, 정리해고 보상금, 그 외에 실업자 특히 장기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정기 또는 일시 지급금

등 현금 급여

- 이사 및 정착지원금,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또는 실업위기에 처한 근로자에 대한 재훈련, 실업자와 그 가족에게 제공되는 숙박·식품·의류 등 현물 급여

(제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실업률 감소 또는 소외계층과 기타 고실업계층의 고용 증진을 위한 일반적 프로그램 또는 제도(70412), 정상퇴직 연령에 도달한 실업자에 대한 현금 및 현물급여(71020)

□ 7106 주거

○ 71060 주거(IS)

- 가계의 주거비용 충당을 위한 현물 사회보호 급여(급여의 수령자는 자산조사 받음)
- 사회보호 제도의 관리, 운영, 지원
- 임대료 지원을 위한 단기 또는 장기 지급금, 자가 주택 보유자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지급금(즉, 주택용자 원리금 상환을 도와주기 위한 지급금), 저가주택 또는 공공주택의 제공

□ 7107 기타 미분류 사회적 배제

○ 71070 기타 미분류 사회적 배제(IS)

-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소외 위험에 처한 사람들(빈곤층, 저소득층, 이민자, 원주민, 피난민, 알코올 및 약물 중독자,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현금 및 현물 사회보호 급여
- 사회보호 제도의 관리, 운영, 지원
- 빈곤경감 또는 난관극복을 위해 빈곤층 및 취약 계층에 제공되는 소득보조 및 기타 현금 지급금 등과 같은 현금 급여
- 빈곤층 및 취약 계층에 제공되는 장단기 보호 및 숙박시설, 알코올 및 약물 중독자의 재활,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한 상담, 주간 보호, 일상생활 지원, 식품, 의류, 연료, 기타 서비스 및 재화 등 현물 급여

□ 7108 사회보호 R&D

○ 71080 사회보호 R&D(CS)

- 사회보호와 관련된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에 종사하는 정부기관의 관리 및 운영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정부기관이 수행한 사회보호 관련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 지원을 위한 출연·용자·보조

(제외) 기초연구(70140)

□ 7109 기타 미분류 사회보호

○ 71090 기타 미분류 사회보호(CS)

- 전반적인 사회보호 정책·계획·프로그램·예산의 수립·집행·조정·점검 같은 활동의 관리·운영·지원, 사회보호 제공에 관한 법률과 기준의 수립 및 집행, 사회보호에 관한 일반정보, 기술문서, 통계의 생산 및 보급
- 화재·홍수·지진·기타 평시 재해에 따른 희생자에 대한 현금 및 현물급여 형태의 사회보호 제공, 평시 재해에 대비한 긴급용도의 식품·장비·기타 보급품의 구입 및 저장, (7101)·(7102)·(7103)·(7104)·(7105)·(7106)·(7107)·(7108)로 지정될 수 없는 기타 사회보호 활동 및 서비스

[부록 5]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별 분류 비교

구 분 Classification	GFS (UN COFOG)	BRM: Business Reference Model (예산분배체계)		비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1.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일반 · 지방행정	일반공공행정	
3. 외교 · 통일		외교 · 통일	n/a*	
2. 공공질서 및 안전	공공질서 및 안전	공공질서 및 안전	공공질서 및 안전	
4. 국방	국방	국방	n/a*	
5.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과부전출금 총액
6. 문화 및 관광	휴양 · 문화 · 종교	문화 및 관광	문화 및 관광	
7. 환경	환경보호	환경	환경보호	
8. 사회복지	사회보호	사회복지	사회복지	
9. 보건	보건	보건	보건	
10. 농림수산	경제사업	농림수산	농림해양수산	
11.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 · 중소기업	
12. 교통 및 물류		교통 및 물류	수송 및 교통	
13. 통신		통신	n/a*	
15. 과학기술		과학기술	과학기술	
14. 국토 및 지역개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국토 및 지역개발	국토 및 지역개발	
16.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인력운영비**	중앙정부는 기능별 분류에 인력운영비 등이 포함됨
			기본경비 등**	

주: * n/a는 중앙정부에서만 집계하고 있음.

** 2013년까지 인력운영비(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직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국민건강보험금)와 기본경비 등을 합하여 '기타'로 분류하였으나, 2014년부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으로 세분화함.

자료: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체계를 근거로 저자 작성

정부기능분류(COFOG)의 체계적 고찰

정성호 · 김완희

글로벌 재정위기를 경험한 이후 국가의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개별국가의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중 하나이며,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바로 정부재정통계(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이다. 정부재정통계(GFS)는 현금주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GFS 86기준에서 발생주의 기준을 적용한 2001기준으로 개정되었고 최근에 2014로 재개정되었다.

정부재정통계는 개별국가의 유동성 관리는 물론 재정건전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다양한 거시재정통계체계(SNA, PSDS, ESA, BPM6)가 정부재정통계(GFS) 체계로 조화를 모색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마디로 정부재정통계(GFS)가 매뉴얼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룰 주제는 정부재정통계 중 정부기능분류(Classification of Function of Government: COFOG)체계이다. 정부기능분류는 개별국가의 기능별 지출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지표체계라 할 수 있다.

정부기능분류는 일반정부 단위, 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합하여

기능별 지출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기능별분류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발생주의 기준의 결산자료에 기초하여 작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정부기능별분류(COFOG) 지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결과라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발생주의 기준의 결산규모와 현금주의 방식의 지출규모의 차이와 연관된다. 각 기능별 지출규모를 활용하여 지속한 재정운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기능별분류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기능별분류지표의 공식적 작성을 전제로 합리적 대안을 탐색함과 동시에 그 활용대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부기능별분류체계를 비교 분석한 후 정부기능별분류 재원 산출대안과 그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추가적으로 활용측면에서 한국정부기능별분류(COFOG-K) 운영(안)을 제안한다. 다시 말해 정부기능별분류 지표의 공식적 작성과 활용 가능성 측면을 검토할 것이다.

정합성이 보장된 정부기능별분류(COFOG) 지표의 산출과 활용은 의미를 부여하기에 충분하다. 결과적으로 정부기능별분류 지표의 산출은 기능별 재정지출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국제비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정부기능별분류(COFOG) 지표를 산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기능별분류(COFOG) 지표는 사전적으로 재정전략수립 및 전략검토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후적으로 기능별 지출의 효과를 분석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재정통계(GFS)의 정부기능별분류(COFOG)에 근거하여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지표를 산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한계가 치유될 필요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정부 3.0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된다.

Comprehensive Study of Classification of Function of Government

Seong-Ho Jeong & Wan-Hee Kim

After the experienc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state's sustainable financial management have emerged as a very important issue. Monitoring individual state's financial management condition is one of the more important task, and it could be done by using the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GFS). The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was first revised from a cash basis system of GFSM 1986 to an accrual basis system of GFSM 2001, and was recently updated to a GFSM 2014 version.

The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is a useful indicator of monitoring financial soundness as well as liquidity management. Lately, there has been a tendency towards various macro-financial statistics systems(SNA, PSDS, ESA, BPM6) seeking to harmonize with the Government Finance System.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Finance System has become a best practice guideline for financial statistics.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he Classification of Function of Government (COFOG), one of the key tools of the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The Classification of Function of Government (COFOG) stipulates that the general government sector, the central government plus the local government's

data of functional classification be aggregated and reported. The Classification of Function of Government (COFOG) should be compiled according to the accrual basis of settlement data of both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The Republic of Korea currently does not use the Classification of Function of Government (COFOG) as an official indicator. This is the result of various factors, the principal reason being the difference of the size of settlement account according to the accrual basis and the size of expenditure account according to the cash basis. I personally believe this is the right time of systematical research on Classification of Function of Government (COFOG) as a tool to monitor sustainable financial management by using functional classification of expenditure size.

Therefore, this study explore the rational alternatives on the premise of officially using the Classification of Function of Government (COFOG) and at the same time discuss how to utilize it's alternatives. In order to do so, the study compare and analyze the functional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and consider the calculation method of resource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Function of Government and the ways to utilize this. In addition, the study suggests the idea of using the operation of the Classification of Function of Korean Government(COFOG-K). Namely, the study will review the official compilation of the Classification of Function of Korean Government and it's applicability aspects.

To ensure the compatibility of the calculation and applicability of the Classification of Function of Government index is in itself a significant contribution. As a result, the calculation of the Classification of Function of Government could help in understanding the size of government expenditure of functional classification accurately and enhance international

comparability. The Classification of Function of Government is very important that it an ex ante can be used to establish financial strategy and a tool to review it, and it an ex post can be used to correctly analyze the functional classification expenditure.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Function of Government from the Government Finance System, the government has to produce a more compatible indicator to overcome various limitations. This will ultimately meet the needs of times, which is the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3.0” project.

■ 저자약력

정성호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완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자료 수집 및 정리

이계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보고서 15-22

정부기능분류(COFOG)의 체계적 고찰

발행	행	2015년 12월 31일
저자	자	정성호 · 김완희
발행인	인	박형수
발행처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소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전화	화	(044)414-2114(代)
홈페이지	지	www.kipf.re.kr
등록	록	1993. 7. 15. 제2014-24호
정가	가	10,000원
조판 및 인쇄	일지사	(02)503-6971
I S B N		978-89-8191-808-8 93320